

KIEP 세계경제

7

제7권 제7호 통권70호

2004

Global
Economic
Review

권두칼럼

왜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가

세계경제 Focus

FTA 규범적 측면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동향

지역문제 Close-up

北·日 관계정상화 논의와 北·日
경제협력 확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90년 1월 발족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정책연구 및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북경사 무소 및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여러가지 형태로 수시로 정부에 제출되고 있으며, 각종 연구보고서 및 월간 『KIEP세계경제』, 半年刊 저널 『對外經濟研究』 등의 정기간행물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월간『KIEP세계경제』

월간 『KIEP세계경제』는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지역별 주요 이슈를 정리, 심층분석하는 전문지입니다. 본지는 세계시장동향과 국제경제규범의 변화를 파악하고 주요 지역 및 국가들의 경제제도·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외경제정책 개발과 경영전략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지에 수록되는 내용은 본 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권위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편집위원장 金元鎬
- 편집위원 姜文盛, 權 栗, 金尙謙, 金興鍾, 朴淳讚, 安炯徒, 楊斗鏞, 李鴻培, 全鍾奎, 洪翼杓, 趙顯垓
- 편집간사 裴仙姬

KIEP

세계경제

**Global
Economic
Review**

7

2004

제7권 제7호 통권70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IEP 세계경제

2004년 7월호

권두칼럼

왜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가 / 金世源 4

세계경제 Focus

FTA 규범적 측면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동향 / 宋泳官 6

DDA 협상의 본격적인 재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 姜文盛 16

EU의 공동지역정책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 李炯根 24

지역문제 Close-up

北·日 관계정상화 논의와 北·日 경제협력 확대 전망 / 李鍾雲 34

경기진정정책 발표 이후 중국의 정책운용 방향 / 金恩菊 46

일본 “지적재산권 전략”의 최근 동향 / 鄭成春 57

제13차 EU·러시아 정상회의의 결과와 향후 과제 / 朴映坤 69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전망 / 金眞梧 76

KIEP 신간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朴淳讚 外 89

KIEP 세미나 브리핑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방안 모색 / 李炯根	91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金惠子	101

Digital 정보세계

ChinaInfobank(中國資訊行) / 鄭다송	105
----------------------------	-----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110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111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112
한국의 국가별 · 지역별 수출입 추이	121
한국의 외국인투자 · 해외투자 추이	123

왜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가



金世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칠레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한 대외경제전략의 일환으로 FTA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미국과도 FTA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영미(英美)계통의 실리주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FTA는 무엇보다도 관련 회원국들의 주권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한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FTA의 핵심은 역내무역의 자유화에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제외한다면 회원국들은 그 이외의 경제정책에서는 하등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회원국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신축적으

로 운영할 수도 있다.

반면 FTA는 많은 단점도 갖고 있다. 예로 한국·싱가포르 협상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잡한 원산지규정의 관리문제가 등장한다. 무역우회(trade deflection)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국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또 농산물무역을 비롯해서 많은 예외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무역자유화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많은 FTA가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NAFTA 및 EEA(유럽경제지역) 등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탈락했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관련

회원국들이 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운영 초기에는 자유화의 덕택으로 서로 실리를 얻을 수 있으나 무역장벽이 제거될수록 민감한 비관세조치의 철폐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가 진전할수록 회원국간 무역 관련 법·제도의 접근이 불가피하게 된다. 다시 말해 회원국간 이해조정 어려움이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FTA는 GATT XXIV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특혜무역지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이유는 많은 경우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FTA정책이 과연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대(大)시장의 확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할 필요는 있다. 이 정책은 WTO가 안고 있는 ‘수(數)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병행하여 ‘안정적인 대시장’의 형성을 취지로 하는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동북아 시장통합에서도 FTA(자유무역지역)는 기본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EU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하나

의 시장’을 설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동시장이나 경제동맹과 같이 발전된 경제통합의 추진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은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리적 인접, 역사적 관계 및 문화적 공동요소 등이 동시에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중에서 문화적인 조건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like-minded nations)’의 모임을 뒷받침해 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한, 중, 일 3개국간도 구체적으로는 상당한 문화적 격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예로 유교적 가치관을 비롯해서—다른 대륙이나 국가들에 비할 때—상대적인 의미에서는 3개국이 많은 부문에서 비슷한 문화를 누리고 있다.

또 미국 및 EU와 함께 국제적으로 3대 경제축(軸)을 형성하고 강한 협상력을 배경으로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은 동북아시아 밖에 없다는 사실은 큰 유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은 대시장의 형성에 따르는 정·동태적인 경제적 이득의 실현과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정치·군사적 취지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해 3개국간 과연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달렸다. 이보다 먼저 국내에서 이러한 국가적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FTA 규범적 측면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 동향

宋泳官 KIEP 무역투자정책실 FTA 연구팀 부연구위원
ysong@kiep.go.kr

최근 국제무역질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FTA 등으로 일컫는 지역무역협정의 급격한 증가이다. 이런 세계적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무역협정을 무역자유화의 또 다른 대안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을 관장하는 WTO 법규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관한 논의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이런 지역무역협정 규범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1. 서론

최근 국제무역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 FTA) 등으로 일컫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속한 증가이다. 2004년 5월 1일 현재 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208개에 달하고 그 중 2000년부터 2004년 5월 1일 현재까지 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82개에 달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자유무역협정, 보다 광범위하게 지역무역협정의 규범적 측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 조류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무역자유화의 또 다른 대안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지역무역협정이 WTO 법규와 배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 WTO에 통고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무역협정의 규범과 관련된 논의를 이해하고 이런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무역

질서에 우리의 이해가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법규

지역무역협정은 근본적으로 무역장벽 철폐를 이루는 데 있어 지역무역협정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차별함으로써 GATT/WTO의 가장 근본적 원칙인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원칙에 어긋나는 협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에 있어 다자간 체계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무역협정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법규는 지역무역협정을 크게 상품분야와 서비스분야로 구별하고 있다. 또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개발도상국간의 협정은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관련 WTO 법규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제24조이고 이 중 개발도상국간의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권능조항(the Enabling Clause)¹⁾이라 일컫는 법규가 관장을 한다. 서비스분야의 지

역무역협정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별하지 않고 관련 WTO 법규는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GATS) 제5조이다. 이 법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원칙은 지역무역협정이 협약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으면서 협약 당사국들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 GATT 제24조

GATT 제24조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상품분야 지역무역지대, 즉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자유무역지역(free-trade area)에 대해 최혜국대우 원칙에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²⁾ GATT 제24조 8항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대처럼 회원국 상호간 역내 상품무역장벽의 철폐된 체계지만 이와 동시에 역외국가에 대하여 지역무역지대 회원국간에 동일한 대외관세를 유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2004년 5월 1일 현재 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 중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은 총 155건에 이르고 있

1) 1979 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2) GATT 제24조 5항 (c)에서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설립 전 단계로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을 정의하고 있다. 잠정협정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을 담고 있는 협정을 의미한다.

는데 이 중 관세동맹협정이 14건, 자유무역지대협정이 141건에 달한다.

상품분야 지역무역지대가 GATT 제24조에 의해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이 상품분야 지역무역지대 회원국이 아닌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전반적 무역장벽을 기존 수준 이상으로 높여서는 안 된다(GATT 제24조 5항 a, b).³⁾ 둘째,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 인한 역내 상품무역 자유화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을 포괄해야 한다(GATT 제24조 8항). 셋째, 회원국간의 관세와 상품교역을 제한하는 규제 중 GATT/WTO에서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GATT 제24조 8항).⁴⁾

나. 권능조항(the Enabling Clause)

권능조항은 1979년에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무역으로 인해 받는 혜택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권능조항 제1항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서 GATT 제1조에 담겨 있는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2항 (a)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시장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간의 상품분야 지역무역지대 형성에 관한 규정은 이 조항 제2항 (c)에 담겨 있다. 권능조항에 의거한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으로는 1976년 방콕협정, 1991년부터 시행한 MERCOSUR, 1992년 AFTA, 그리고 최근에는 2001년 시행한 인도와 스리랑카간의 FTA 등으로 2004년 5월 1일 현재 19개가 WTO에 통고되어 있다.

개발도상국간의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이 권능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항 제3항 (a)와 (b)에 명시된 두 가지 주요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무역협정은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을 원활히 하고 또 증진시켜야 하며

3) 비회원국에 대한 상품무역장벽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GATT 1994,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2항 참고.

4) GATT 제24조 5항 (c)에 명시된 또 하나의 원칙으로는 잠정협정이 적당한 기간내에(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계획과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를 들면 모든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회원국들이 언제부터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적당한 기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GATT 1994,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3항에 의해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 새로운 조항은 “적당한 기간”이란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라고 명시했다. 만약 잠정협정이 10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잠정협정 회원국들은 새로운 조항에 의하여 WTO 상품무역이사회(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에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시에 이 협정 회원국이 아닌 다른 WTO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 역외 무역장벽을 높이거나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최혜국대우 원칙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관세와 다른 무역장벽 감소·제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조건은 모두 개발도상국간의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이 기존의 GATT/WTO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조건들이다.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이 권능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GATT 제24조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들과 비교해 보면, 개발도상국간의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WTO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보다 크게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권능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재 WTO체제내에서는 권능조항에 의거해 회원국간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전면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개발도상국간의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 또는 일부 품목을 무역자유화에서 제외하는 개발도상국간의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을 인정하고 있다.⁵⁾

다. GATS 제5조

GATS는 1995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의,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한 다자규범이다. 상품분야 지역무역지대 형성의 경우 관련 WTO 법규가 GATT 제24조와 권능조항, 두 종류인 반면 서비스분야 지역무역지대 형성의 경우 관련 WTO 법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GATS 제5조 하나이다. 2004년 5월 1일 현재 GATS 제5조에 의거하여 WTO에 통고된 서비스분야 지역무역협정은 총 34건에 달하고 있다.

GATS 제2조는 GATT 제1조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예외로 GATS 제5조는 서비스분야 지역무역협정을 인정하고 있다.⁶⁾ GATS 제5조는 GATT 제24조를 기반으로 하여 제정되었지만 상품무역에서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서비스무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GATT 제24조와 같이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를 구별하는 조항은 없다.

서비스분야 지역무역협정이 GATS 제5조의 적용을 받아 최혜국대우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GATT 제24조의 경우와 비슷하게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

5) WTO(2003)

6) GATS에서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두 가지를 인정하는 데 하나는 GATS 제5조에서 인정하는 서비스분야 지역무역협정이고 다른 하나는 최혜국대우 면제목록(MFN exemption list)에 명시된 서비스분야이다.

다. 첫째, 지역무역협정이 이 협정 회원국이 아닌 다른 WTO 회원국들에 대한 전반적 서비스무역장벽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GATS 제5조 4항). 둘째,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범위가 전반적 서비스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GATS 제5조 1항 a). 셋째, GATT 제24조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무역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 중 WTO에서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새로운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다(GATS 제5조 1항 b).

3. 통고절차

WTO가 설립되기 전 GATT체제하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을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없었다. 대신 지역무역협정이 GATT에 통고될 때마다 임시기구를 만들어 여기서 통고된 지역무역협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1996년 2월 WTO의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는 지역협정위원회(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 CRTA)를 설립하여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지역협정위원회의 설립은 WTO에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가능한 장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역협정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임무가 있는데, 첫째는 개별 지역무역협정의 조사이고, 둘째는 지역무역협정

들이 WTO의 다자간 체제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무역협정 점검을 전담할 지역협정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실제로 현재 WTO에 통고된 모든 지역무역협정이 지역협정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다.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은 우선 상품무역이사회(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CTG)에 통고하게 되어 있고, 상품무역이사회는 이를 반드시 지역협정위원회에 이관하여 지역협정위원회의 점검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권능조항에 의거한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과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분야 지역무역협정은 반드시 지역협정위원회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서비스분야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GATS 제5조 7항 (a)에 의해 서비스무역이사회(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CTS)에 통고되어야 하고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이것을 지역협정위원회로 이관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이사회는 통고된 지역무역협정을 지역협정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할 의무가 없다.

권능조항에 의거한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권능조항 제4항 (a)에 명시되어 있는 통고와 자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능조항에 의거한 지역무역협정이 WTO 어느 기구에 통

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권능조항에 의거한 개발도상국 간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대부분 그 내용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첨부하여 무역개발위원회(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에 통고함으로써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치게 되고 지역협정위원회의 점검을 받지 않는다.⁷⁾

지역협정위원회에서는 이관된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사실조사(factual examination)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끝나면 WTO 사무국(Secretariat)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협정위원회가 이 보고서에 동의를 하면 이 조사보고서는 상품무역이사회 등 관련된 상위 기구에 제출이 된다. 그러나 현재 지역협정위원회에서 지역무역협정에 관하여 완성된 조사보고서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이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4. 규범분야 논의동향⁸⁾

가. 통고시점에 관한 논의

지역무역협정은 반드시 WTO 해당기구에 통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법규인 GATT 제24조, 권능조항, 그리고 GATS 제5조 모두 통고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⁹⁾ 이로 인하여 심지어는 지역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간 이후 WTO에 통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¹⁰⁾ 지역무역협정은 WTO 법규에 의해 제약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고시점에 관해서는 GATT 제24조 7항 (a)의 “shall promptly notify”를 “적어도 지역무역협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반면에 지역무역협정 통고의 경우 정치적 또는 법률적 요소

7) MERCOSUR의 경우는 권능조항에 의거해 GATT에 통보되었지만 지역협정위원회에 이관되어 점검을 받고 있다. 현재 권능조항에 의거한 지역무역협정이 지역협정위원회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8) 이 장에서는 주로 WTO(2000, 2002), KIEP(2002)에 나와 있는 논의들을 요약하였다.

9) “Any contracting party deciding to enter into a customs union or free-trade area, or an interim agreement ... shall promptly notify ...” [GATT 제24조 7항 (a)], “[a]ny contracting party taking action to introduce an arrangement ... shall: (a) notify ...” [Enabling Clause 제4항 (a)], “[m]embers which are parties to any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promptly notify ...” [GATS 제5조 7항 (a)].

10) 한·칠레 FTA의 경우도 2004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지만 WTO에는 2004년 4월 19일부로 통고되었다. 칠레와 엘살바도르 FTA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2002년 6월 1일이었지만 WTO 통고일은 그로부터 무려 1년 반이 넘는 2004년 3월 16일(상품협정)과 17일(서비스협정)이었다.

등으로 인한 여러 다각적인 문제가 혼재해 있으므로 지역무역협정 통고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안별로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편 GATS 제5조 5항에서는 서비스분야 지역무역협정을 변경할 경우 최소한 90일 전에 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90일 전 통고”를 모든 지역무역협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¹⁾

나. 관세동맹 형성 시 역외무역장벽에 관한 논의

GATT 제24조 4항에서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으로 이 지역무역지대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²⁾ GATT 제24조 5항도 이와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경우 GATT 제24조 5항 (b)에는 모든 상품 각각에 대한 역외 무역장벽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반면 관세동맹 형성의 경우 GATT 제24조 5항 (a)에

전반적 무역장벽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만 나와 있다.¹³⁾

관세동맹 형성의 경우 “전반적 무역장벽”의 해석을 두고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해서 관세동맹의 경우는 일부 개별상품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더라도 평균적인 의미의 전체적 무역장벽이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GATT 제2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GATT 제24조 5항 (b)의 의미에 비추어 보아 관세동맹의 경우에도 자유무역지대와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 각각에 관한 역외 무역장벽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¹⁴⁾

다. GATT 제24조에서 “실질적 모든 무역”의 의미에 관한 논의

현재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가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GATT 제24조 8항에 담겨 있는 “실질적 모든 무역

11) 통고시점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내용은 WTO(2002) 참고.

12) “They also recognize that the purpose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should be ... not to raise barriers to the trade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with such territories”(GATT 제24조 4항, 두 번째 문장).

13) 이 부분과 관련된 GATS 제5조 4항에서는 서비스분야 지역무역협정이 서비스분야 각각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14) GATT 1994,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2항은 GATT 제24조 5항 (a)의 “the general incidence of 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에 대한 해석을 더 명확하게 하였지만 위의 논의를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내용은 WTO(2000) 참고.

(substantially all the trade)”의 의미에 관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이다.¹⁵⁾ 이 의미를 해석하는 데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에 있는데 하나는 양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 방식이다.¹⁶⁾

양적 방식은 교역량을 기준으로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접근방식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이 담고 있는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역자유화가 모든 상품무역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 반면 질적 방식은 “실질적 모든 무역”이란 말 그대로 모든 상품무역을 일컫는 것으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로 인한 무역자유화에서 배제되는 상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모든 무역”의 기준과 관련하여 농업분야가 배제된 협정들이 과연 GATT 제24조에 부합되는가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FTA정책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는 양적 방식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방식이 무역자유화에서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라. 지역무역협정의 “경제발전적 측면”에 관한 논의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간의 상품분야 지역무역협정은 권능조항의 적용을 받아 무역자유화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 서비스분야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GATS 제5조 3항에서 개발도상국간의 협정인 경우 무역자유화 정도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지역무역협정의 경우는 권능조항이나 GATS 제5조 3항을 적용받기 어렵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지역무역협정이 개발도상국간의 협정처럼 무역자유화의 유연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발전단계가 낮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한 급격한 무역자유화의 충격이 선진국에 비해 클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음에 따라 DDA 지역무역협정분야 논의에서도 이 부문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EC는 개발도상국이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속도에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15) WTO(2000), 54번째 문단 참고.

16) *ibid.*

17) KIEP(2002), PP.150~151 참고.

는 입장을 지지하며 GATT 제24조와 권능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의 WTO 규범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보장하는 무역자유화 유연성의 정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⁸⁾ 한편 개발도상국은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에 관한 논의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¹⁹⁾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현재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WTO 규범의 논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지면관계상 일일이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이외의 다른 주요 논의로는 첫째, GATS 제5조 1항 (a)의 “전반적 서비스무역”의 의미에 대하여 GATT 제24조에서 “실질적 모든 무역”의 의미에 관한 논의와 비슷한 논의, 둘째, GATS 제5조 3항 (a)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연성(flexibility)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셋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와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가 GATT 제24조 8항 (a)에 나와 있는 “다른 상품규제조치(other restrictive

regulations)”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넷째,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여러 논의, 다섯째, 관세동맹이나 지역무역지대 형성에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고 대신 MFN 관세보다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2001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현재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협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규범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히 이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우리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변화의 조류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과 또 국제질서의 새로운 형성에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자세일 것이다.

18) WTO(2002a) 참고

19) WTO(2002c, 2004) 참고

참고문헌

- 강문성 · 노재봉 · 이종화. 2002.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정책연구 0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TO. 2000. "Synopsis of 'Systemic' Issues Related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WT/REG/W/37. (March 2)
- _____. 2002a. "Submission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by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TN/RL/W/14. (July 9)
- _____. 2002b. "Compendium of Issues Related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TN/RL/W/8/Rev.1. (August 1)
- _____. 2002c. "Submission on Regional Trade Agreements-Paper by Turkey." TN/RL/W/32. (November 25)
- _____. 2003. "Legal Not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under the Enabling Clause." WT/COMTD/W/114. (May 13)
- _____. 2004. "Submission on Regional Trade Agreements-Paper by the ACP Group of States." TN/R.

DDA협상의 본격적인 재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姜文盛 KIEP 무역투자정책실 DDA 연구팀장
mkang@kiep.go.kr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중대한 위기를 맞았던 DDA협상은 오는 7월 말 이 협상시한인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 대한 기본골격 협상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DDA협상 재개에 대한 WTO 회원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상기 두 분야의 기본골격에 대한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가능성이 커 올 하반기부터 DDA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협상목표와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협상과정에서 대두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서론

지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¹⁾ 중대한 위기를 맞았던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협상은 2004년 상반기 동안 서비스, 규범 등 일부 분

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DDA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시키기 위한 WTO 회원국들의 노력이 정치적인 모멘텀(political momentum)을 얻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졸릭(Zoellick) 미국

1)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표면적인 원인인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 이외에도, 농업보조금 감축을 둘러싸고 개도국그룹인 G-20이 미국·EU에 강하게 대립한 것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USTR 대표의 주재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소규모 회의가 개최되었고, 5월에는 EU가 농업 및 싱가포르 이슈에서 신축성을 보이는 입장을 발표하여 OECD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진전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데 일조하였다.

그동안 핵심 협상분야로 여겨졌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개발, 싱가포르 이슈 중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분야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2004년 7월을 시한으로 진행 중인 상기 두 분야의 기본골격(framework)협상에 따라 DDA협상의 본격적인 재개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의 배경에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7월 말까지 기본골격이 수립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동안 협상의 진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WTO 회원국간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더불어 DDA협상에 있어 또 다른 리더인 EU도 라미(Lamy) 통상담당집행위원을 포함한 쉐 집행위원(commissioners)의

임기 종료가 오는 10월 말이어서, 라미 위원 역시 자신의 임기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싱가포르 이슈 등 주요 DDA협상분야별 최근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협상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협상분야별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

가. 농업

우루과이라운드의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로 2000년부터 진행된 WTO 농업협상은 DDA 출범과 함께 DDA협상의 일부로 편입되어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이 확정,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9월 농업보조금 감축을 둘러싸고 개도국그룹인 G-20²⁾과 미국, EU 등 선진국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제5차 각료회의가 결렬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농업

〈표 1〉 DDA협상분야

구 분		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 타		환경, 지적재산권
비 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자료: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어젠다 웹사이트(<http://www.wtodda.net/>)

부문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었다. 그 후 농업협상은 소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2003년 10월 WTO 일반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주요 국가와 협의를 거쳐 제네바에서의 협상과정 재개를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브라질·중국·인도 등의 수출개도국그룹 G-20, 한국·일본·스위스 등의 수입국그룹 G-10, 미국과 EU의 선진국 그룹 등 3개 그룹이 협상을 주도하는 협상구도를 보이고 있다.³⁾ 이러한 협상구도 아래 농업협상은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세부 원칙(modalities)을 완성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WTO 2004).

WTO(200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세, 국내보조, 수출보조금의 감축문제이다. 관세감축폭 및 방식과 관련된 쟁점은 관세, 관세할당, 특별 긴급수입제한(Special Safeguards: SSG), 수입 국가무역기업 등이다. 이 중 농산물 시장접근과 관련된 관세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이다. 관세인하방식과 관련하여 스위스 공식⁴⁾과 우루과이라운드 공식⁵⁾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농업수출국은 고율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스위스 공식을 선호하며, 동 공식을 도입하여 국가간·품목간 관세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업수입국은 대폭적이고 급격한 관세감축에 반대하며,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감축이 가능한 우루과이라운드 공식을 선호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기 두 가지 공식을 혼합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나, <표 2>에 나타난 하빈슨 수정안이 그나마 많은 지지를 받았다(WTO 2004). 기본적으로 선진국에는 관세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5년 동안 40~60% 감축하도록 한 반면, 개도국의 경우 4단계로 구분하여 10년 동안 25~40% 감축하는 것이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G-20 및 케언즈그룹 등은 혼합방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선진국의 고율관세를 해결하지 못하는 반면 개도국에는 더 큰 부담을 주므로 도하 각료선언문에 규정된 위임사항(mandate)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무역왜곡적(trade-distorting) 보조의 상당 수준 감축, 무역왜곡

2) 농업시장개방에 적극적인 개도국으로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이 중심이다.

3) 그 외 특별품목(SP)그룹, 아프리카 개도국 중심의 G-90 등이 있다.

4) 스위스 공식은 $T=t \times a / (t+a)$ 이며, 여기서 T: 공식 적용 후 세율, t: 공식 적용 전 세율, a: 관세를 상한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도하라운드에서 스위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나, 스위스 정부는 현재 이 공식을 지지하지 않고 우루과이라운드 공식을 선호한다.

5) 우루과이라운드 공식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적용시점의 관세율과는 상관없이 일정비율을 감축하는 선형(linear)방식이다. 참고로 우루과이는 본 공식을 지지하지 않고 스위스 공식을 선호한다.

의 정도에 따른 감축 차별화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품목별 농업보조 총액(AMS) 상한 설정 및 감축, 무역왜곡보조 총액 상한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인데, 지난 5월 EU는 라미와 피시러(Fishler) EU 집행위원 공동명의로 서한을 배포하고 품목별 AMS 상한 설정과 감축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여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외교통상부 2004; EC 2004).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모든 수출지원조치의 철폐(phasing-out)”라는 기본 목표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수출보조, 수출신용 등 각각의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할지에 대한 입장차이가 최대 쟁점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EU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함으로써(EC 2004),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협상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2004년 7월 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기본골격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는 7월 말 시한을 목표로 하는 세부원칙 기본골격 수립작업의 초기 단계로서 분야별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분야를 찾아내는 작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서 큰 진전은 없었으나 이전 회의에 비해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전망의 근거이다. 그러나 기본골격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관세감축,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에 대한 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국 등 G-10 그룹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하빈슨 수정안 내용: 관세감축

구 분	선진국				개도국			
	관세율	감축률		이행기간	관세율	감축률		이행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수정안 요지	90% 초과	60%	45%	5년	120% 초과	40%	30%	10년
	15~90%	50%	35%		60~120%	35%	25%	
	15% 이하	40%	25%		20~60%	30%	20%	
					20% 이하	25%	15%	
UR협상 결과		36%	15%	6년	특별품목(SP) [...]개	10%	5%	
						24%	10%	10년

주: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개도국의 식량안보나 농촌개발 등을 위해 중요한 일부 품목
 자료: TN/AG/W/1/Rev.1(WTO)에서 정리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2004년 들어 두 차례 개최된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협상은 기본골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Derbez 초안(JOB(03)/150/Rev.2)⁶⁾을 논의의 기초로 하여 관세인하공식, 분야별 접근방식, 비관세장벽, 개도국 우대 등을 핵심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Derbez 초안을 기초로 최소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단 개도국은 개도국 우대의 추가 또는 표현의 명확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개도국 우대에 대한 Derbez 초안의 문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보고 이를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업분야의 협상에 비해 NAMA의 기본골격협상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농업분야의 협상결과가 NAMA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외교통상부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개최되었던 제2차 NAMA협상은 기본골격보다는 비관세장벽(NTBs)에 초점을 모았는데, 이는 지금까지 부진하였던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회의에서 큰 진전은 없었다.

따라서 NAMA협상은 앞으로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 이후 관세인하방식, 분야별 무세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 비관세장벽 등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 서비스

농업협상과 함께 기설정의제인 서비스협상 역시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DDA협상 전체의 진전과 연계되어 협상의 모멘텀을 다소 상실하였다. 그러나 DDA가 출범하기 전인 2000년부터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에서 각국은 분야별 협상제안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서비스협상 자체에 큰 위기는 없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협상은 협상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양허협상, 규범제정협상, 자발적 자유화·최빈개도국 우대방식 등의 기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최낙균 외 2003). 양허협상은 상품분야의 시장개방협상과 다른 점인데, 상품분야에서는 관세인하율을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정하는

6) Derbez는 멕시코 외교통상부 장관인데, Derbez 초안은 칸쿤 각료회의를 위해 작성된 Castillo 초안을 수정하여 작성한 각료선언문 초안을 지칭한다.

공식적용방식(formula approach)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분야에서는 양자협상방식(request/offer approach)을 택하고 있다. 즉 이러한 방식은 각국이 개방할 서비스 업종 및 개방 폭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고 교역상 대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아직 1차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가 42개국(EC를 한 국가로 계산할 경우)에 불과하여 양허안 제출실적이 부진한 편이나 DDA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양허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가 다수이다.

서비스분야에 수평적으로 적용될 규범분야에 대한 협상이 또 다른 협상 축인데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등에 대한 규범제정 작업이 규범작업반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긴급세이프가드에 대해 소극적이며, 보조금분야에서는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협정의 서비스분야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규범작업반과는 별도로 국내 규제작업반 역시 운영되고 있는데, 비자절차, 국내규제사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비스협상 역시 본격적인 재개 여부는 농업분야의 기본골격협상에 좌우될 전망이다. 협상이 재개된다면, 개별 국가의 양허안에 대한 양자협상이 재개될 것이며 국내규범작업반 및 규범작업반 등을 통해 서비스무역에 대

한 포괄적인 규범제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이 논의되는 싱가포르 이슈 분야는 사실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 접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상기 네 가지 이슈를 2003년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제5차 각료회의(칸쿤)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기초하여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표면적인 이유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싱가포르 이슈는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칸쿤 각료회의 동안 라미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개도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투자와 경쟁정책을 제외하고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만 논의할 것을 제안⁷⁾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EU는 2003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무역위원회에서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상기 제안을 철회하고, 네 가지 싱가포르 이슈를 모두 협상의제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칸쿤 각료회의 이전의 입장으

7) 이를 “2-더하기-2 접근방식(two plus two approach)”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EU의 입장 선회에 대해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등 상당수 OECD 회원국과 브라질, 칠레 등은 Derbez 초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이슈 중 투자와 경쟁정책은 개도국들의 반대입장에 비추어 협상의제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 등 APEC 회원국들은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에서 Derbez 초안을 협상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한 협상 역시 투명성 논의에서 더 나아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개도국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네 가지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원활화만을 협상의제로 남고 나머지 이슈는 WTO내에서 협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2004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도 논의되어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3. 협상의 본격적인 재개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지금까지의 논의동향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2004년 7월 말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 접근에 대한 기본골격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든지 합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된 기본골격 아래 올 하반기부터 DDA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협상목표와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협상과정에서 대두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동 협상의 주된 목표가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관세와 국내 및 수출보조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데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각종 보조금을 더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농업 관련 보조금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체제를 재편하여야 한다. 또한 협상대응방안으로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원칙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을 협상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최낙균 외(2003)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경우 농업이나 서비스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정치적 제약요인이 적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 평가된다. 그러나 관세인하방식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더라도 교착상

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경제개발을 경험한 국가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역할(bridging role)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협상은 이미연(200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양자협상 중심의 복잡한 협상 진행방식, 양허기재방식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적 사안 등이 존재해 복잡하고 까다롭다. 또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어 이 문제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협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협상이 농업이나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비해 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법률, 교육, 시청각, 의료서비스 등 주요 서비

스업은 국내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대외개방이 미진하였다. 그 결과 유효한 경쟁이 작용하지 못하였고, 기존 국내업계의 지대추구(rent-seeking)행위에 따라 서비스 질의 개선이나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에서 한국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시급한 전환이 요구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서비스분야의 개혁 및 발전을 대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DDA 서비스협상이라는 대외적 요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2004. 각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동향』.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어젠다 [Online]. 2004. (July 7) <http://www.wtodda.net/>
 이미연. 2004. 『WTO 서비스협상 동향』. 『나라경제』, 6월호, pp. 84~87.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최낙균 외. 2003. 『DDA 중간점검 - 2003』. 경제사회

연구회 소관기관 WTO 협동연구시리즈 2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C. 2004. "WTO-DDA: EU Ready To Go the Extra Mile in Three Key Areas of the Talks." IP/04/622. The European Commission.
 WTO. 2004.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 Geneva: WTO.

EU의 공동지역정책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李炯根 KIEP 국제거시금융실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EU는 국가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로마조약의 취지에 따라 발족 당시부터 지역개발정책을 주요 공동정책 대상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이는 구조기금, 결속기금 및 유럽투자은행 등의 공동체기구를 통해 지원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의 경제협력 강화에 있어서는 인프라 개발과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의 공동지역정책과 같은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개발에 따른 막대한 자원조달 수요를 충족시켜 줄 역내 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낙후지역의 구조적인 성장애로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공동대응의 일환으로서도 동북아개발은행(NEADB) 및 다양한 형태의 기금 설립은 매우 필요하다.

1. 머리말

현재 전 세계에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추세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지역주의의 흐름이 심화·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흐름은 유럽,

미주 등 각 경제권역에서는 EU로의 경제통합, NAFTA 등으로 발현되었다.

하지만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동북아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북아 경제협력, 특히 금융통화협력 및

FTA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즉 1999년 11월 마닐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 표시,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의 CMI 합의, 2001년 브루나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3국간 경제장관회의 신설 등 합의,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주룽지 총리의 한·중·일 FTA 검토 공식제안 등으로 동북아 3국의 제도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¹⁾

한편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은 장기적 안목에서 EU와 같이 경제통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때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간 및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통합에 따른 이득이 특정국에 편중되어 오히려 역내 소득격차가 커진다면 경제통합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역내 국가간 및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극복을 위해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지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및 결속기금(Cohesion Fund)과 같은 각종 기금과 유럽 투자은행(EIB)을 통해 역내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해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금융통화협력(CMI, 환율조정, 아시아채

권시장 논의 등)과 FTA가 추진되면서 관련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기적인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함께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분야가 각국 또는 역내 각 지역의 인프라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력 격차의 축소 문제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경제통합을 이룩한 EU가 어떻게 지역간 또는 국가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고자 했는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지난 10여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논의에 접목시켜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제2절에서는 EU에서의 경제력 격차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 제3절에서는 최근 EU의 공동지역정책의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논의에서 역내 공동 대응을 위한 금융수단의 일환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2. EU의 경제력 격차 현황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역내 회원국들간의 발

1)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도모하는 논의는 2003년 출범한 우리나라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격차는 공동체 전체의 후생증대요인과는 관계없이 역내 후진국 혹은 통합체 결성이익의 배분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로부터 불만을 유발하게 되어 공동체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에서는 가맹국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고 통합이익의 배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주요한 공동정책의 분야로 제기되고 있다.

2003년 현재 EU 역내 인구의 25%는 평균 소득 75% 이하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EU의 77개 지역(NUTS 1)²⁾ 가운데 상위 10개 지역의 1인당 평균소득은 하위 10개 지역보다 3.5배나 높다. EU 주변부 10개 지역의 평균실업률은 중심부 10개 지역보다 무려 4배나 높다(Puga 2001).

또한 지역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단위인 지역불균형계수(regional disparity coefficient)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지역간 분배는 공평하고, 1에 가까울수록 지역간 격차는 크게 된다. 이 계수가 0.3을 상회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하나의 국민경제로 보기가 어렵다. Armstrong(2002)에 따르면, EU의 지역불균형계수는 지난 20여년간 0.30~0.35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0.10~0.16으로 나타나고 있다.

EU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대한 그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자에 따라 경제력 격차의 축소와 확대가 혼재되고 있어 EU의 경제통합에 따르는 경제력 격차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EU 역내 국가간에서는 경제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지역간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Puga 2001).

따라서 현 단계에서 EU는 단일 국민경제가 아닌 국가연합의 초보적 통합국가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직은 개별 회원국에 주권의 중심이 머물고 있으므로 EU 차원의 정치적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EU가 장차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를 지향한다면 지역격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최근 EU 공동지역정책의 운영과 평가

EU가 공동지역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이 있다. 이 기금의 조직은 물론 지원대상 우선목표의 설정을 비롯한 운영은 각료이사회(gov)의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Voting)³⁾에 의해

2)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란 유럽의 지역통계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역에 관한 분류방식으로, NUTS 0(15개 회원국 각각을 하나의 지역으로 파악), NUTS 1(EU를 모두 77개 지역으로 구분), NUTS 2(EU를 210개 지역으로 구분), NUTS 3(EU를 1,082개 지역으로 구분)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3) 가중다수결이란 개별 회원국의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의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독일, 프랑스 등은 각 10표이나 룩셈부르크는 2표만을 투표권으로 갖는다.

결정된다.

가. 공동지역정책의 수단: 구조기금과 결속기금

공동지역정책을 위한 재원(구조기금⁴⁾ 및 결속기금⁵⁾이 공동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5% 수준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조기금 예산은 1989년 80억 유로에 불과했으나, 2000~06년간 매년 280억 유로로 확대됨으로써 7년 동안 총 1,95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결속기금은 전체 18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총체적으로 EU가 공동지역정책의 집행을 위해 2000~06년간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130억 유로이다.

먼저 4대 구조기금은 각각 설립될 당시의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부문이 서로 다르다(표 1 참고). 이 가운데 ERDF는 순수한 지역개발 전문기금으로서 EU내 전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지역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으로 결속기금의 지원대상은 회원국 평균 GDP의 90% 이하 소득을 가진 국가들(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⁶⁾이다. 이 기금의 취지는 환경보호 및 수송부문 사회간접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ERDF가 지역간 불균형을 축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결속기금은 국가간 불균형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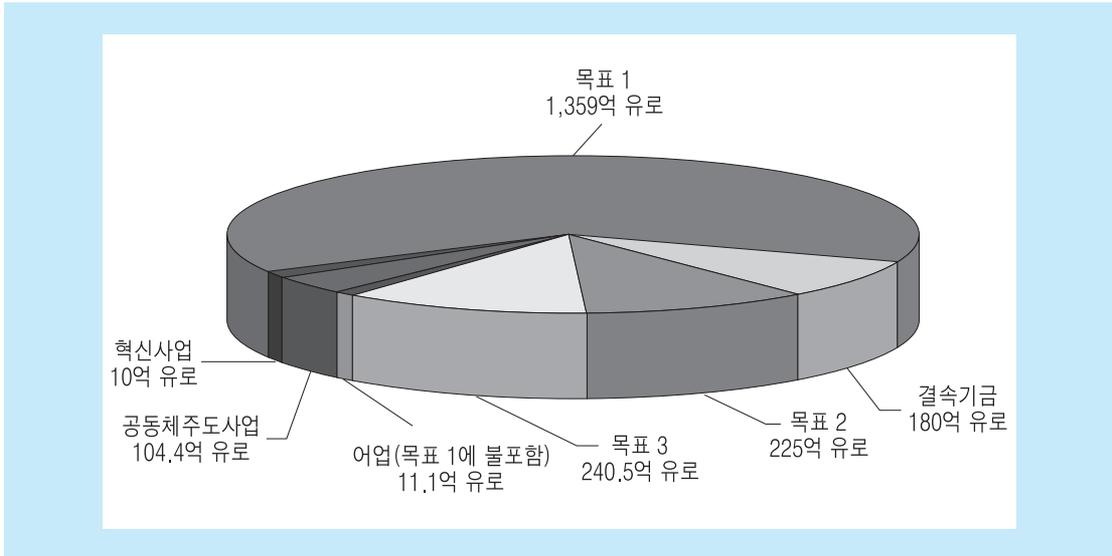
〈표 1〉 4대 구조기금의 주요 지원대상

기금명	주요 지원대상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 인프라, 일자리 창출 투자, 지방발전프로젝트, 소기업
유럽사회기금(ESF)	- 직업훈련, 채용지원시스템에 대한 자금지원 등 실업·소외계층
어업지도재정수단(FIFG)	- 어업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E-Guidance)	- 낙후지역의 농촌 및 농민

자료: European Commission, Working for the regions(<http://europa.eu.int>).

- 4)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이란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및 어업지도재정수단(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을 포함하는 4개 기금을 의미한다.
- 5) 결속기금(Cohesion Fund)은 유럽내 4대 낙후국(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의 압력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환경보호와 유럽수송망(trans-European networks)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6) 2000~06년간 4개국에 책정된 결속기금의 비중은 그리스 16~18%(30.6억 유로), 스페인 61~63.5%(111.6억 유로), 아일랜드 2~6%(7.2억 유로), 포르투갈 16~18%(33억 유로)이다.

〈그림 1〉 2006-06년간 구조기금 및 결속기금의 예산 배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 Working for the regions(<http://europa.eu.int>).

한 ERDF가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다면 결속기금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참고로 EU가 개발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갖고 있는 재정수단은 공동체예산 이외에도 유럽개발기금과 유럽투자은행(EIB)에 의한 지원이 있다. EC조약 제267조⁷⁾는 EIB와 구조기금들과의 업무협력,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EIB는 EU의 통합, 균형된 개발 및 경제사회적 결속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IU의 용자는 수송 및 에너지부문의 유럽수송망

(trans-European networks)의 개선, 기업활동 강화, 환경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지식과 혁신 확산 등에 대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현재 지역개발과 소득격차 감소를 위한 EIB의 지원은 170억 유로에 달하였다.

나. 구조기금의 운영

EU 공동지역정책 예산규모의 91.5%에 달하는 구조기금에 의한 지원방법은 크게 우선

7) ... In carrying out its task, the Bank shall facilitate the financing of investment programmes in conjunction with assistance from the Structural Funds and other Community Financial Instruments. (http://europa.eu.int/eur-lex/en/treaties/dat/EC_consol.pdf)

지역 지원과 독자적인 주도사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쳐 해당 회원국의 지역개발사업을 부분적으로 재정지원하는 방법이 구조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후자의 경우는 EU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인데, 그 규모는 제한되어 있다.

먼저 EU는 지역개발의 체계적인 수행,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지원대상사업의 파급효과 제고 등을 목적으로 '목표'라는 명칭 아래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는 특정 우선지역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1994~99년 기간 중 이 목표 수는 7개 지역이었는데, 2000~06년 기간에는 3개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① 목표 1 지역(Objective 1): 수혜대상은 EU 평균 GDP 75% 이하에 속하는 역내에서 개발이 가장 뒤쳐진 지역으로서, 지원의 취지

는 개발 및 구조조정의 촉진에 있다. 구조기금 예산의 69.7%가 이 지역의 지원에 사용된다. EU 인구의 20% 내외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이 지역내 부족한 인프라 건설 및 상업적 경제활동의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다.

② 목표 2 지역(Objective 2): 수혜대상은 '목표 1'의 대상이 아니면서 경제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예컨대 경제적 전환 중에 있는 지역, 사양화하고 있는 농촌지역, 침체기에 있는 어업이나 도시지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EU 인구의 18%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구조기금 예산의 11.5%에 해당한다.

③ 목표 3 지역(Objective 3): 유럽고용전략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및 고용증진과 같은 인적자원 개발을 취지로 하고 있다. EU 전 지역

〈표 2〉 2000~06년 구조지원 규모

(단위: 억 유로)

	규 모	비 중
2000~2006 구조지원 전체	2,130	100.00
구조기금	1,950	91.50
중점 목표	1,824.5	(85.7)
목표 1	1,359	63.8
목표 2	225	10.6
목표 3	240.5	11.3
공동체주도사업	104.4	4.90
어업	11.1	0.50
혁신사업	10	0.40
결속기금	180	8.50

자료: European Commission, Working for the regions(<http://europa.eu.int>).

〈표 3〉 목표별 관련 기금

	목표 1	목표 2	목표 3
관련 기금	ERDF	ERDF	ESF
	ESF	ESF	
	EAGGF-Guidance		
	FIFG		

자료: European Commission, Working for the regions(<http://europa.eu.int>).

이 대상이며, '목표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여기에는 구조기금 예산의 12.3%가 사용된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EU는 독자적으로 지역개발사업(공동체주도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조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이다. EU 자체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주도사업은 1994~99년 기간 중에는 13개였으나, 2000~06년 기간에는 4대 사업(Four Community Initiatives)으로 크게 집중되었다.⁸⁾ 이 밖에도 어업지도재정수단을 통한 어업구조조정과 혁신사업이 각각 구조기금 예산의 0.6% 및 0.5%를 차지하고 있다.

다. 평가

EU의 공동지역정책은 1980년대 중반 경제

통합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또 현실적인 장벽들이 드러나면서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공동지역정책의 경우 「단일유럽법」(SEA)에 이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결속기금 및 지역위원회가 창설됨으로써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공동지역정책은 '공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회원국 관련정책을 보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즉 역내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체 차원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특정지역에 대해 EU가 회원국과 함께 구조기금을 통해 재정지원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공동지역정책은 기금의 사용이 대상 지역별로 다년간 집중지원되고 있으며,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역시 체계적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구조기금 및 결속기금은 지역불균형 축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1987~97년

8) 4대 사업으로는 ① 국경간, 국가간,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 ② 소도시, 도시 및 교외지역의 재활력을 위한 프로그램, ③ 지역적 선도를 통해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④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기간에 EU 지역간 및 회원국간 평균 1인당 소득격차의 축소가 현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U 인구의 10%가 거주하는 최빈지역의 1인당 GDP는 1988년 공동체 평균의 55.1%에서 1998년 61.0%로 증가하였다. 국별로는 EU내 낙후국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및 스페인에서의 수렴이 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 국가들의 1인당 GDP는 1988년 공동체 평균의 67.6%에서 1998년 78.8%로 증가하였다. 또한, 1989~99년간 EU 구조기금의 지원을 받은 국가에서는 220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창출되었다.

이처럼 증기의 관점에서 보면 EU 저개발국의 경제적 진전이 현저하지만, 역내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상당 기간 격차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가장 큰 우려요인이다. 최악의 지역에서 실업률은 1987년 20%에서 1997년 24%로 상승했다(25개 우수 지역의 실업률은 4% 수준). 25개 최악의 지역에서는 실업자의 60%가 장기실업자이고, 청년실업은 47%이며, 경제활동 가능 여성의 30%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 또한 기본 인프라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연구기술개발, 숙련기술·정보사회·교육기회와의 접근, 직무교육, 환경의 질과 같은 여타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공동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확실한 조치(공동체주도사업), 유관기관간의 파트너십, 환경 및 동등기회에의 관심, 협력, 네트워킹, 경험 교환, 개발 관련 새로운 접근에 대한 실험(혁신사업) 등은 역내 지역의 발전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맺음말

경제통합에 따르는 이득이 특정 회원국에 편중됨으로써 역내 소득격차가 더욱 커진다면 불이익을 받는 다른 회원국은 경제통합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통합의 추진시 공동지역정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시장통합이 경제적 격차가 있는 지역의 개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 및 부정적인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경제통합의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저개발지역의 구조적인 성장애로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전제로 한 경제력 격차의 해소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일천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력 격차는 더디게 수렴하고 있다(Kim *et al.* 2004). 더구나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에서 경제력 격차의 문제는 오히려 유럽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비록 현재로서는 동북아 경제통합이 더욱 요원해 보이기 는 하지만 적어도 동북아 경제협력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수록 공동대응책의 수립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국가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로마조약의 취지에 따라 발족 당시부터 지역개발정책을 주요 공동정책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이는 구조기금, 결속기금 및 유럽투자은행 등의 공동체기구를 통해 지원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 긴밀화를 위해서는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의 공동지역정책과 같은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자원조달 수요를 충족시켜 줄 역내 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낙후지역의 구조적인 성장애로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공동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도 동북아개발은행(NEADB) 및 다양한 형태의 기금 설립은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듯이 지난

10여년 전부터 동북아에서는 역내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정책으로 구체화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개발은행 등 역내 개발자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주로 학계 및 연구계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제는 정부차원에서의 관심 제고가 요구된다. 아울러 동북아의 인프라 및 자원 개발을 통한 역내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이들 개발자원 수단이 성공적으로 설립·운영되기 위해서는 역내 유일한 선진경제인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동북아의 경제협력 긴밀화를 위한 공동대응 차원에서의 이러한 금융수단 설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역내 각국의 법률·제도적 체계 개선과 NEADB의 수익성 창출, 자금의 배분 및 운용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원. 2003. 「東北亞 經濟統合의 비전과 課題」. 창립 50주년 기념호. 한국경제학회.

_____. 2004. 『EU경제학』. 박영사.

이갑수 외. 2003. 「EU 경제통합과 중심부-주변부 지역

- 간 갈등구조』. 『유럽연구』, 통권 제18호. 한국유럽학회.
- 이종원. 1995. 「EU와 동북아: 경제통합과 경제협력」. 『유럽연구』, 통권 제2권 1호. 한국유럽학회.
- 이형근. 2003.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3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홍열. 2001. 「유럽연합(EU) 地域政策의 발전과 전망」. 『유럽연구』, 통권 제13호. 한국유럽학회.
- Armstrong, H. W. 2002. "European Union Regional Policy: Reconciling the Convergence and Evaluation." In Roura, J. R. and Parellada, M. eds. *Regional Convergence in the European Union*. Berlin: Springer.
- Puga, Diego. 2001. "European regional policies in light of recent location theories." Discussion Paper Series No. 2767.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April)
- European Commission. "Working for the regions." (<http://europa.eu.int>)
- Kim, Heungchong, Woosik Kim and Deok Ryong Yoon. 2004.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 Europe and East Asia." Discussion Paper No. 04-01.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pril)

北 · 日 관계정상화 논의와 北 · 日 경제협력 확대 전망

李鍾雲 KIEP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jwlee@kiep.go.kr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004년 5월 22일 평양을 방문하여 제2차 북 · 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비록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양국 정상은 2002년 「평양선언」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수교교섭 재개를 합의하였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추가 피랍의혹자 진상조사, 북한 핵문제와 같은 관계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본고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을 중심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고, 북 · 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관계정상화와 동반되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일본의 유 · 무상 경제협력자금을 중심으로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일본의 향후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서론

2002년 9월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문제와 피랍일본인 처리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 · 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5월 22일 평양을 전격적으로 재방문하였다. 비록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으나, 양국 정상은 2002년 「평양선언」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 재개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북한이 납치피해자의 잔류가족 5명의 일본 귀환을 허락하고 일본은 2002년 이후 중단되었던 인도적 구호지원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

치」를 단행함으로써 물가·임금·환율 등의 가격 현실화와 함께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국가계획의 분권화와 기업부문의 경영자율성 확대 등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03년 4월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생활용품과 공산품의 거래를 허용하였다. 이밖에 협동농장의 식량 자체처분권이 확대되고 공장·기업소 등의 구조조정과 기업평가가 달라지는 등 북한경제 운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비록 최근의 경제정책 변화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들은 199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나름의 개혁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경제관리 개선”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복과 산업정상화에는 대규모의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경제난으로 인해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현시점에서 모색할 수 있는 외부 투자재원은 남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수교자금” 집행과 민간기업의 교역·투자 활성화로 논의가 모아진다. 특히 수교교섭 타결에 동반되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양허적 성격이므로 북한의 경제회복에서 일본의 향후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중심으로 관계정상화를 위한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수교자금” 집행을 중심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통한 일본의 향후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과 관계개선을 위한 北·日 협상의 추이

북한과 일본은 1991년 1월 관계정상화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회담을 개최한 이래 10년간 실무급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회담 결렬과 주기적인 대화 중단으로 관계개선에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정부간 협상에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문제, 일본인 피랍의혹,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문제, 요도호사건 범인의 신변인도문제와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별다른 진전 없이 종결되었다. 더욱이 대량 살상무기의 투명성 확보문제를 놓고 북·미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2000년 10월 12차 교섭을 마지막으로 북·일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¹⁾

그러나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최초의 정상 회담을 갖고 ▲10월 중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 사과 및 국교정상화와 동반한 유·무상 경제협력자금의 지원, ▲북한의 피랍 일본인 문제 사과와 재발 방지 다짐, ▲북한의 미사일 실험유예를 2003년 이후에도 유지하는 4개 항의 「평양 선언」을 전격적으로 채택하였다.²⁾

북한과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을 통해 관계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거 청산, 일본인 납치의혹과 같은 현안들에 대한 이견차이를 좁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일 관계가 국제정치적 변수, 일본 내 여론의 향방, 북한의 수교협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과거의 선례와 같이 2002년 정상회담을 통해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던 양국관계는 대내외적인 장애물의 등장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대외적인 변수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고수와 북한 핵개발 의혹 증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교착상태 장기

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한 달 뒤인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서 표면화된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주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북·일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일본인 피랍문제에 대한 여론의 향방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주요 변수로 등장하였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3명의 피랍 일본인 중 8명의 사망을 확인하자 일본내 대북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언론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개발문제 등과 관련하여 전례 없는 대규모 보도를 하였으며, 일반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졌다. 또한 피랍 일본인의 사망경위 조사, 2002년 10월 일본에 일시 귀국한 납치피해자 5명의 영주 결정과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 납치피해자의 북한잔류가족 8인의 조기귀국문제가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였다.³⁾

양국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해결의 실마

1) 1991~2000년 사이에 개최된 북·일 수교교섭의 주요 쟁점과 협상의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영춘(2000) 참고.

2)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인용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하였다. 또한 비록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교정상화 이후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무상원조와 저금리 장기차관을 제공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지원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과거 일본인에 대한 납치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향후 유감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1998년 대포동 미사일 실험 이후 수교협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왔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문제와 관련하여 미사일 발사실험을 2003년 이후에도 동결한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3) 신정화(2004), pp. 13~15.

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교교섭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004년 5월 22일 평양을 전격적으로 다시 방문해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다.⁴⁾ 비록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북한은 납치피해자의 잔류자녀 5명의 일본 귀환을 허락하였으며 일본은 인도적 구호지원 명목으로 25만 톤의 식량과 1천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2002년 9월에 합의한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에 대해 북한의 재확인 있었으며, 일본은 「평양선언」의 원칙이 준수될 경우 「특정선박입항금지 특별조치법」과 「개정 외환관리법」과 같은 북한을 겨냥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을 통해 수교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는 국교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우선적으로 추가 피랍의혹자 10명의 진상규명을 위한 “백지상태”에서의 재조사는 조사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조사결과에 따라

일본내 여론이 악화될 경우 일본정부의 대북 협상이 소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이 관계개선과 경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 핵의 완전 폐기와 국제적 검증에 대한 요구는 6자회담의 진전과 미국, 남한,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일간 교섭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국이 추가 피랍의혹자 진상조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북·일간 수교교섭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일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6월 하순에 개최된 3차 6자회담 의장성명에서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북한은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들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줄이기 위해서 신축적인 협상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수교교섭에서 북한의 제안이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직된 대북자세를 지양하

4) 평양 재방문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본 언론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가 지지도 회복을 위해 정치적으로 단행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7월 11일의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파문을 무마하기 위해 평양을 재방문하였으며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한다는 비난이 높다(*The Japan Times* 5월 24일자).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방북 직후 “경제지원과 잔류가족의 귀환을 맞바꾸었다”는 비난에 대해 “북한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재방문이 없었다면 해결을 위한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또한 7월 2일 니혼 TV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1년내에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성사시키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중앙일보』 5월 23일자; 『한겨레』 7월 3일자 참고).

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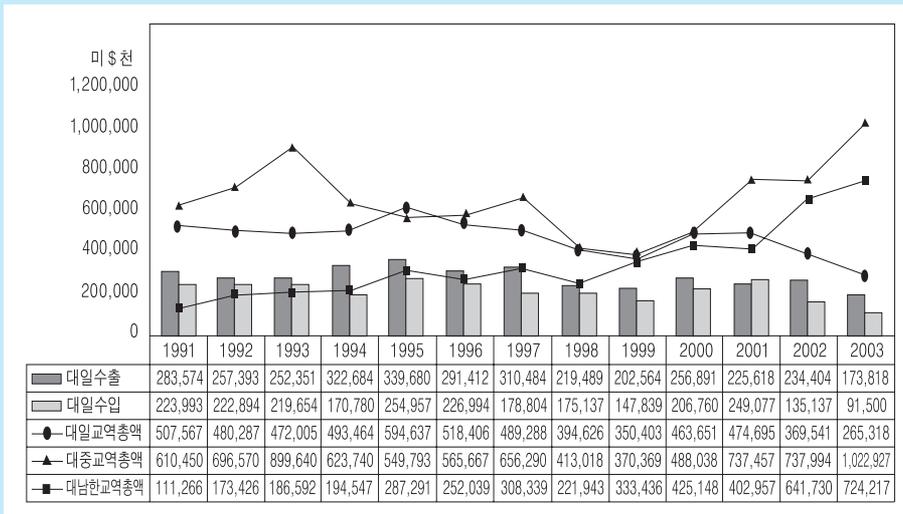
3. 北·日 경제관계의 현황

북·일간의 경제관계는 주로 무역에 의한 것이며 일본의 대북한 투자는 극소수의 조종련계 기업 위주로 매우 제한적이다. 1990년까지 북한 무역의 70% 정도를 차지하던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북한의 두 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1990년대 북한 전체 교역량의 25% 내외를 매년 유지하였다. 또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중국, EU 등의

주요 교역국과는 달리 북한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2001년을 제외하고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과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함으로써 1990년대 북·일간 무역규모는 4억~5억 달러 수준에서 침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더욱이 2001년 이후에는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문제와 같이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발생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는 2001년 4억 7,469만 달러를 기록하였던 북·일간의 교역총액이 2002년 3억 6,954만 달러, 2003년 2억 6,531만 달러로 대폭 감소한 통계에서 잘 알 수 있

〈그림 1〉 북한의 대일본 무역 추이와 주요 교역국과의 비교



자료: KOTRA 통계자료 활용

다(그림 1 참고). 특히 2003년의 경우에는 대일본 수출이 전년에 비해 25.8% 감소한 1억 7,382만 달러, 수입이 32.8% 감소한 9,150만 달러에 머물렀다.⁵⁾ 2억 달러 수준의 교역량은 1970년대 초반 이후 북·일간 무역에서 발생한 최저치로서 최근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교역침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 증대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으로 북한선박의 입항검사와 대북 수출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었고, 더욱이 북한산 제품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감이 확산됨으로써 주요 교역품목의 거래가 위축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⁶⁾ 북한은 일본의 무역제재가 강화됨으로써 감소하는 대일 수출입 물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과 남한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10억 2,293만 달러로 전년보다 38.6% 증가하였으며 남한과의 교역에서도 7억 2,422만 달러로 전년대비 12.9% 증가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어패류는 2003년 대일 수출이 전년에 비해 31.1% 급감하였으나, 중국으로의 수출은 2002년 198%, 2003년 45%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북한의 주요 대일 수입품목인 운송용 차량, 가정용 전자제품, 기계류 등의 일부분이 중국과 유럽국가로 수입대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여년 동안의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상품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해가고 있으며 양국간의 교역침체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북한의 대일 수출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던 것은 수산물뿐이며 대부분의 공산품과 광물성 생산품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어패류의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은 2001년 45.5%, 2002년 48%, 2003년 44.9%를 차지하였는데, 어획량에 따라 수출물량의 변동이 심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낮은 어패류가 대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북한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보이고 있다.⁷⁾ 이밖에 수출규모가 그나마 유지되는 품목으로는 채소류(주로 송이버섯), 무연탄, 마그네시아와 같은 광물성 원자재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북한의 대일본 최대 수출품목이던 섬유제품은 1997년을 기점으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위탁가공방식으로 섬유제품 교역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5) KOTRA(2004), pp. 53~54.

6) KOTRA(2003), p. 45; KOTRA(2004), p. 53.

7) KOTRA(2003), p. 46; KOTRA(2004), p.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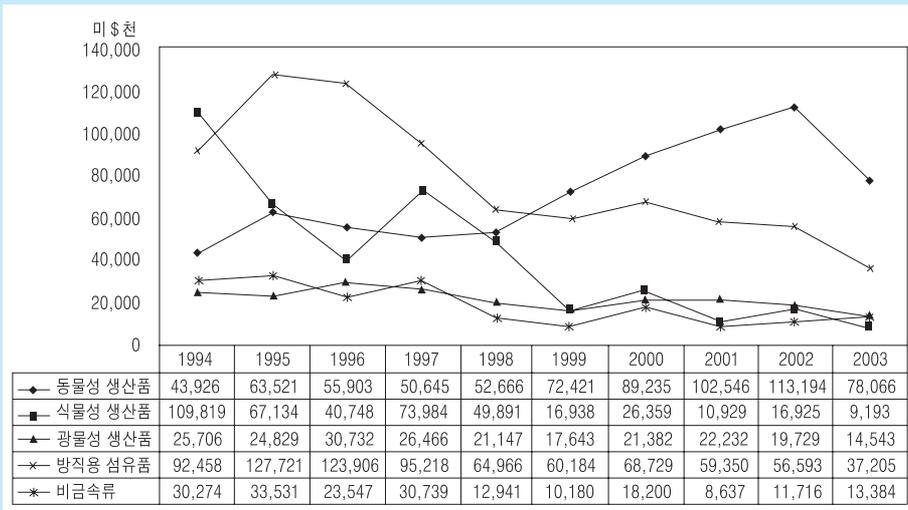
조총련계 기업의 활동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80년대까지 전체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선철, 아연 등 금속류와 가공품은 수출이 감소하였다. 1995년 1,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던 철강제품(HS 72, 73류)의 경우 1999년 570만 달러, 2001년 310만 달러, 2002년 470만 달러로 수출비중이 매우 미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북·일 교역은 장기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 어패류, 채소류(송이버섯), 광물성 원료와 같은 1차산품에서 북한은 다소간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공업의

생산기반이 1990년대 붕괴된 이후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일본시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침체상태에 빠져 있는 북·일간 경제교류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교정상화라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만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며 “수교자금”의 제공으로 북한의 산업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일본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양국간 국교정상화 이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협정만 살펴보다라도 정상적인 경제관계의 형성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공

〈그림 2〉북한의 대일본 수출 상위 5대 품목의 변화(1994~2003년)



자료: KOTRA 통계자료 활용

정적 파급효과를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일본과의 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으로부터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가장 불리한 '국정세율'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일 수출품은 고율의 관세가 부여되고 있는데 품목에 따라서는 여타 국가의 2배에 가까운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⁸⁾ 높은 관세와 무역보험의 미적용과 같은 현재 대일 수출의 장애요인을 고려할 때, 국교정상화 이후 관세협정,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제도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제품은 일본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업성 있는 공산품의 발굴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대일 교역은 확대될 것이다.

4. 국교정상화를 통한 北·日 경제협력 확대방안

일본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하였던 1995년 유상 35만 톤, 무상 15만 톤의 쌀을 지원

함으로써 대북 인도적 원조를 시작하였다. 이후 세계식량기구(WFP)와 같은 UN 구호기구를 통해 식량과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⁹⁾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비용을 상당 부분 분담하였다. 그러나 북·일간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함으로써 인도적 차원의 구호원조를 넘어서는 경제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자금 및 기술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교정상화에 동반되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은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생산부문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대규모 산업인프라 확충사업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북한경제 회복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¹⁰⁾ 일본이 과거 한국과 동남아 국가에 제공한 국교수교 직후의 경제협력자금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므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과거 선례를 볼 때 북한에 대한 일본의 개발자금 지원은 무상공여와 장기·저리 차관 위주로 이

8) 신지호(2000), p. 40.

9) 일본은 UN기구간 공동지원호소(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K)을 통해 2000년과 2001년에 9,566만 달러와 1억 489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였으며, 2001년에 실시된 대북 지원에는 쌀 50만 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 북한 핵개발과 일본인 피랍문제로 양국관계가 경색된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과 KEDO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다.

10) 국교정상화에 도달할 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 수교자금의 규모는 현재까지 북·일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965년 한·일 수교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80억~100억 달러의 수교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130억 달러 수준의 경제협력자금의 제공을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일본의 대북 유·무상 경제협력자금의 규모와 내용은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입장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수교자금 집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정식(2000); 신지호(2000); Mark E. Manyin (2001)을 참고.

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유·무상 경제협력자금은 식량지원 및 농수산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 산업생산 정상화를 위한

발전시설 복구, 원자재 지원, 수출산업 개발 및 위탁가공시설 지원, IT분야와 같은 첨단 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¹¹⁾ 또한 철도, 도로, 항만을 포함한 운송·물류분야

〈표 1〉 일본의 경제협력자금 활용방안

분 야		지 원 내 용	
식량지원/ 농·수산 분야 기술지원	농업분야	식량지원, 종자개량 기술, 비료지원, 비료공장 현대화, 수해방지 대책, 농업용수 개발, 농업의 기계화	
	축산분야	사육기술, 사료공장 확충	
	수산분야	어선 복구 및 현대화, 수산장비 개량,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	
산업생산 정상화	전력생산지원	발전 정상화	송배전 시설의 개선·확충, 발전소의 개축·보수, 발전용 중유지원
		발전소 확충	소형발전소 건설
	자본재 공여	광업	광물자원 채굴장비 현대화, 수송시설 보수·확충
		금속·기계 화학	공작기계, 산업기계, 철강설비 및 기술 지원 석유화학설비 보수 및 현대화
섬유·금속·건설분야의 원자재 공여	건설자재, 석유화학 공업원료 지원, 플라스틱, 철강, 제지, 기계부품 공급		
수출산업 지원		수출 및 위탁가공산업 활성화, 위탁가공업 설비 지원, 원자재 및 부품제공, 상업화를 위한 기술지원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		전산장비, IT분야 장비·기술 지원, 광케이블화 지원, 무선통신 및 국제통신 지원	
인프라 복구 및 확충	교통·운송 ·통신	철도	철도시설 현대화, 철도역 정비, 철도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도로	도로 포장 및 복구
		항만	항만 정비, 하역설비 현대화
		통신	유선통신 확충, 무선통신의 초기화 작업 지원
수력		수력댐 보수, 다목적댐의 신규 건설 지원	
공업단지		신민주 경제특구, 개성공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용수, 전력, 통신, 교통) 및 제도 정비	
인력 양성/노동의 질 향상	기술교육	IT분야 기술교육, 공업기술 전문학교 설립, 각급학교의 기술·과학 실험설비 지원	
	문화·경제연구활동	경제연구소 신설,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용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의료시설 확충		상·하수도 정비, 의료시설 정비, 환경보호 프로그램 지원	

자료: 李燦雨(2002), 『日朝經濟協力の方案』, p. 77.

11) 李燦雨(2002), p. 77.

및 통신시설 등의 인프라 복구에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기술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의료시설 확충, 환경보호사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경제협력자금의 제공과 함께, 일본은 과거 식민지 배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해당국의 대일 채무를 일괄 청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북·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개발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약 1,2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미결제 채무를 청산 또는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다.¹²⁾ 북한은 1985년 이후 일본에 대한 채무상환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문제는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대일본 채무문제가 양국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괄 청산이나 채무이행 장기연장방식으로 해결된다면 일본기업의 대북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기업의 대북 투자 확대는, 우선적으로 국교정상화와 함께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조기진출을 통한 시장선점

효과가 높은 통신, 에너지와 같은 산업부문과 운송, 금융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에 대한 투자위험도가 낮아지면 공장 설립 등을 통한 제조업 분야와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일본기업의 대북 투자는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자본, 생산설비, 선진기술, 수출시장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남한기업의 위탁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 섬유, 의류, 봉제, 가정용 전기전자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광물성제품은 시설 현대화와 선진기술이 도입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일본시장에서 크게 제고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북한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와 우호적 조치가 취해지면 높은 인건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가는 남한 및 일본기업의 대북 위탁가공이나 직접생산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산 제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시장개방을 확대하여 북한의 대일본 교역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일간의 관계개선은 남북한 사이의 철

12) 일본은 과거 식민지국가와의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국의 채무를 청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5년의 한국과의 수교시에 일본은 한국이 일본이 지고 있던 총 4,573만 달러의 채무를 10년 동안 분할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이 약속된 무상자금에서 대일 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와 일부 동남아국가의 경우에는 일본이 수교와 동시에 해당국의 채권을 포기하는 청산방법을 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신지호(2000), p. 58; 김정식(2000), pp. 43~51을 참고.

도 및 도로 연결사업과 맞물려서 동북아시아의 물류환경 개선과 지역경제협력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은 지리적 유리성과 높은 경제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북한의 폐쇄와 정치·군사적 대립으로 최근까지 러시아-중국-북한-남한-일본으로 이어지는 상호 협력의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관계정상화에 따른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양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공동참여에 의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시작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일본의 소극적 참여가 지적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협력방식에 의한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일본의 기술력 및 자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북한지역의 개방을 전제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철도연결사업과 에너지협력사업은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북·일 관계는 한반도와 동

북아 안보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대립적이던 양국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에 유지되고 있는 냉전적 국제질서의 완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일본이 미국, 남한과 협력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허용 또는 지원할 경우,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정상화에 따른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은 투자가 필요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국제협력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재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살펴볼 때, 북한당국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저해하는 여러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안정과 동북아경제협력의 실천을 위해서 북한경제의 회복과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정세 변화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영춘. 2000.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요인: 북·일 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김정식. 2000. 『대일 청구권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_____. 2003. 『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_____. 2004.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백학순·진창수. 1999.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서울: 세종연구소.
- 신정화. 2004. 「고이즈미 수상의 2차 방북」. 『정세와 정책』, 6월호, pp. 13-16.
- 신지호. 2000. 『일·북 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찬우. 2003. 「북일 경제관계 확대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발전에서 필요한 역할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요녕사회과학원 공동주최 세미나(2003년 9월, 중국 심양) 발표 논문.
- 李燦雨. 2002. 『日朝經濟協力の方案』. 環日本海經濟研究所.
- Manyin, Mark E. 2001. *North Korea-Japan Relations: The Normalization Talks and the Compensation/Reparations Issue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경기진정책 발표 이후 중국의 정책운용 방향

金恩菊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ejkim@kiep.go.kr

중국정부의 경기진정책 이후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진정책 이후 거시지표 추세를 볼 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화 공급량과 대출 증가율 그리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물론 물가상승과 제한적 통화정책 등으로 경착륙의 우려가 상존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위기관리 경험과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고려할 때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서론

지난 4월 28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주요 금융시장은 많은 동요를 보였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경제의 과열과 이에 따른 연착륙 또는 경착

륙의 효과는 세계경제의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기진정책은 대중국 교역과 투자가 많은 한국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등장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경제의 과열은 일단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은 11.4%로 추정되나 이는 SARS의 영향으로 작년 2/4분기 성장이 저조했던 것에 기인한다. 그동안 경기과열

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대출과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진정책 발표 이후 중국경제의 경착륙 위험성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유연성 결여,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정책이행 정도를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경기진정책의 효과를 속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특히 중국경제의 대내수요와 대외수요간 심각한 불균형은 경기진정책의 현실적 운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즉 대내수요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대출 축소 및 고정자산투자 둔화가 민간소비 진작에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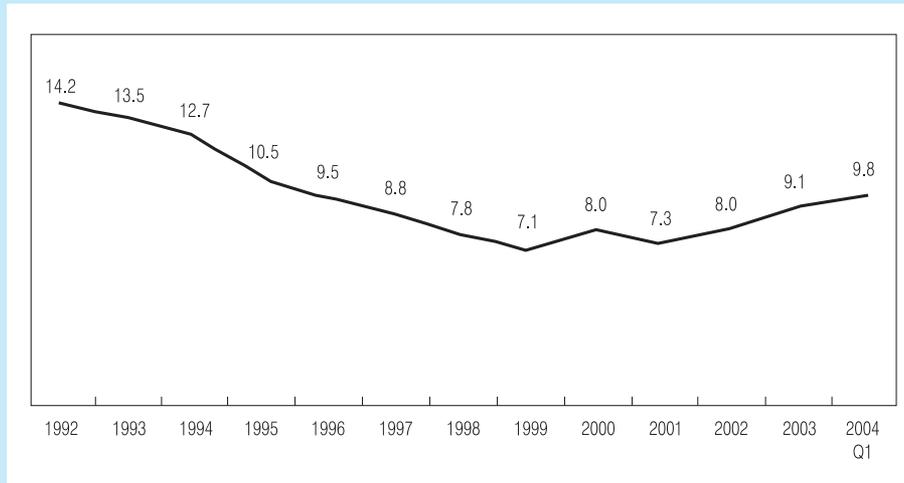
본고에서는 중국경제의 거시지표 현황을 중심으로 경기진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진정책의 정책적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2. 최근 거시경제 현황과 경기과열

중국경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연평균 9%를 넘는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 2003년에는 SARS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9.1%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금년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며, 1/4분기와 2/4분기 각각 9.8%, 11.4%(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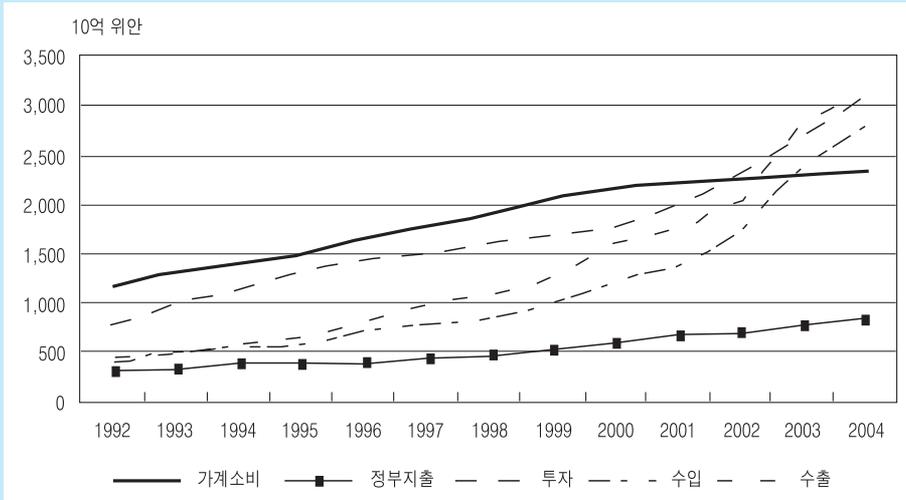
〈그림 1〉 최근 중국의 GDP 성장률

(단위 : %)



자료: 중국 상무부, Global Insight.

〈그림 2〉 개혁·개방 이후 중국 거시경제 현황



자료: Global Insight, 필자 정리, 2004년은 추정치.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수출과 투자 호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수출의 경우 중국의 제조업 발전과 WTO 가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입과 중국정부의 고정자산투자가 전반적인 투자증가를 견인했다.

그러나 투자의 고도성장은 중국경제의 과열을 초래했다. 특히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2002년 17.4%, 2003년 26.7% 증가한 후 2004년 1/4분기에는 1994년(30.4%)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43.0%)을 기록했다. 고정자산투자증가는 총통화(M2) 증가를 유도한바, 2003년

총통화 증가율은 19.6%로 전년대비 2.8% 포인트 높았다(표 1, 그림 3 참고).

고정자산투자와 총통화의 빠른 증가는 SARS의 영향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SARS로 인해 급속도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투자과잉은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이 여파로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까지 경제에 반영되게 되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 업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표 1〉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GDP 성장률	8.0	9.1	9.9	6.7	9.6	9.9	9.8
공업생산	12.9	17.0	17	15.2	16.6	17.7	17.7
소매판매	8.8	9.1	10.7	6.7	9.9	10.5	9.2
고정자산투자	17.4	26.7	31.6	32.8	31.4	26.7	43.0
수 출	22.1	34.6	33.5	34.3	29.7	33.5	34.1
수 입	21.2	39.9	52.2	38.2	34.3	39.8	42.3
소비자물가	-0.8	1.2	0.5	0.7	0.8	2.7	2.8
총통화(M2)*	16.8	19.6	18.5	20.8	20.7	19.6	19.2

주: *2003년 분기별 증가율은 누계값으로 정리된 것임.
 자료: 중국 상무부, Global Insight.

3. 경기진정책 내용과 영향

가. 경기진정책 내용과 주요 요인

지난 4월 28일 원자바오 총리가 밝힌 통화량 및 대출규모 억제, 토지관리 강화, 건설 프로젝트 정리, 원자재 사용 감축, 지급준비

율 인상 등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는 경기진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수차례 공표된 바 있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물경제에 반영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투자로 은행의 대출규모가 중앙정부 시책에도 불구하고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변 조치는 기

〈표 2〉 중국의 주요 경기진정책

기 관	일 시	내 용
인민은행	2003. 8. 23	은행지급준비율 6%에서 7%로 인상
	2004. 3. 24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실적에 따른 차별적 지급준비율 제도 도입, 리파이낸싱 및 재할인율 인상
	2004. 4. 12	모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7%에서 7.5%로 인상, 자본이 불충분한 은행들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7.5%에서 8%로 인상
국무원	2004. 4. 27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부문 투자시 자기자본 조달비율 인상
	2004. 4. 28	5월 1~7일 노동절 연휴 때 은행대출 중단 지시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2004. 5. 9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전월대비 1%를 상회하거나 3개월 연속 전년대비 4%를 상회할 경우에 지방 당국이 3개월 동안 가격인상조치를 보류하도록 지시

자료: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존의 정책을 보다 확실하게 실물경제에 반영하기 위한 창구지도(窓口指導)의 성격이 강하다.

일련의 경기진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 억제는 중국경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경기과열을 조장하는 투자(고정자산 투자 포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 측면에서 거시경제 운용의 핵심요인으로 평가된다.¹⁾

첫째,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억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과열이 지속될 것이다. 이 경우 투자증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심리로 인해 총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효과적인 긴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긴축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경기위축이 염려된다. 투자가 대폭 하락하게 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총수요 감소를 유발하여 전반적인 경기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고정자산 투자정책이 적절하게 진행될 경우, 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투자과잉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면서 총소비

를 자극하지 않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구축하게 된다. 이 결과 총수요 확대 추세가 적절하게 조정되어 경제의 연착륙²⁾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금번 경기진정책의 정책방향은 총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정부도 급격한 경기과열 방지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금번 경기진정조치들은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심화로 견실한 경제성장 기반을 저해하는 일부 분야에 대한 조치로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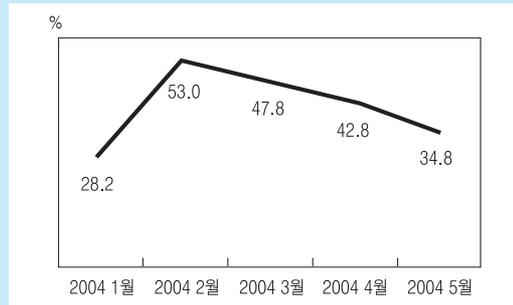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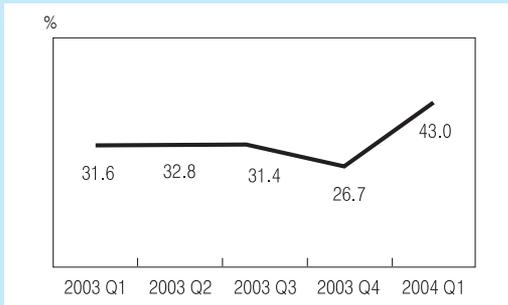
나. 경기진정책 발표 이후 경기변동 현황

먼저 고정자산투자, 공업생산, 수출은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진정책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됐던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5월 증가율은 34.8%로 전월대비 8% 포인트 하락했다. 이 결과 원자재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철강제품의 경우 경기

1) 『當前宏觀經濟調控的基本取向』(2004. 6. 2)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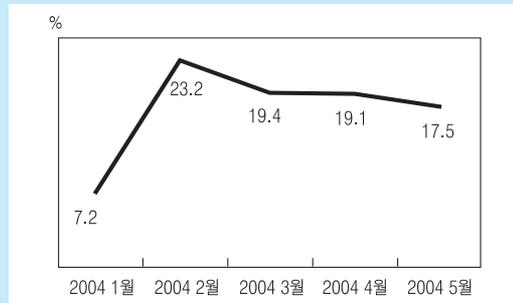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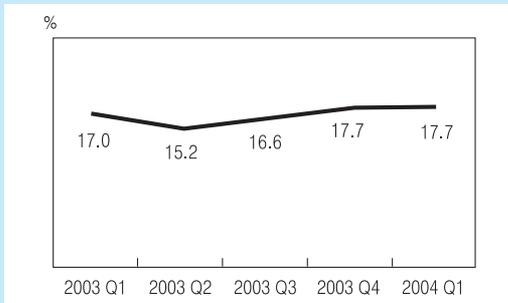
2) 선진국의 경우 0 이하로 성장할 때를 경착륙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이상 연평균 9% 이상 성장해 온 중국의 경우, 지방의 잉여 노동력과 국유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경제성장수준이 7%임을 감안할 때 7~8%대로 떨어지면 연착륙, 7% 밑으로 떨어지면 경착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고정투자는 1993~2003년에 연평균 15.5%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중 1993년과 2003년에 투자과열이 있었으므로 투자증가율이 10% 정도로 하락할 경우에 연착륙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림 3〉 경기진정책 전후 고정자산투자



자료: Global Insight, 필자 정리.

〈그림 4〉 경기진정책 전후 공업생산



자료: Global Insight, 필자 정리.

진정책 직후 가격하락현상이 나타났다.³⁾ 철강 가격은 경기과열로 인해 가격상승폭이 가장 컸던 품목으로 철강가격 변화는 중국경기 변동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5월의 공업생산 증가율은 17.5%로 전월대비 2% 포인트 가량 하락했으며, 2월에 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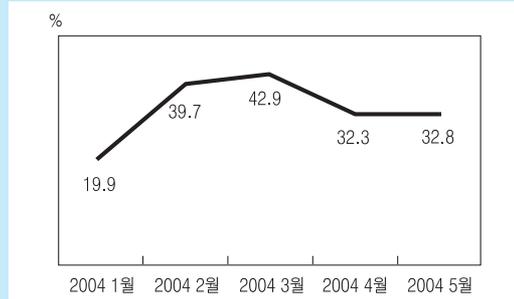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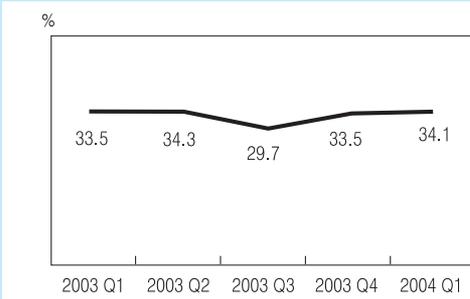
는 4.7% 포인트 하락했다.

수출 둔화세도 확연한바, 금년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3월(42.9%)에 비해 5월의 수출증가율은 32.8%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통화공급은 공급증가세 둔화를 반영하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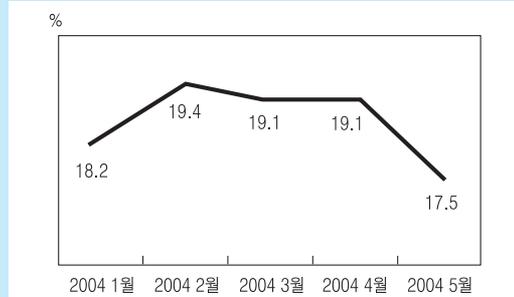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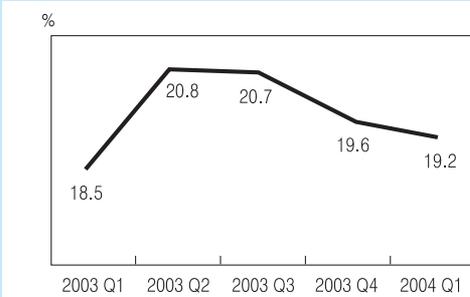
3) 일반중형철재, 보통소형철재, 철선 그리고 박(薄)강판 가격이 4월 하순 각각 7.3%, 11.1%, 11.3% 그리고 1.4% 하락했다.

〈그림 5〉 경기진정책 전후 수출



자료: Global Insight, 필자 정리.

〈그림 6〉 경기진정책 전후 통화공급(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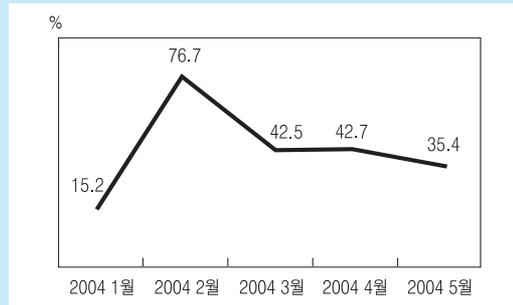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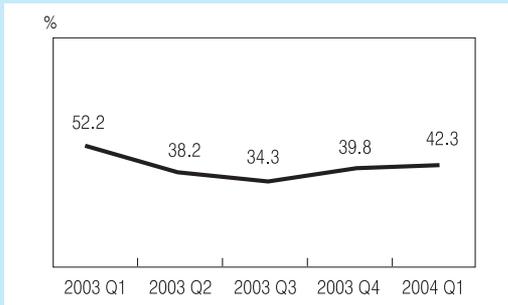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필자 정리.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M2와 M1 증가율은 각각 17.5%, 18.6%로 전월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따라서 경기진정책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민간소비, 수입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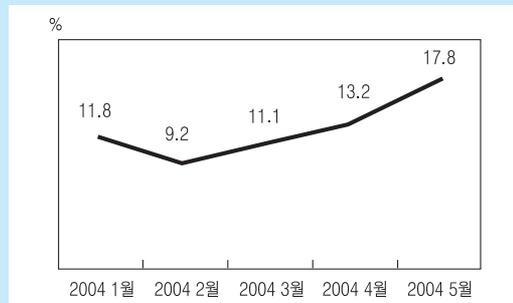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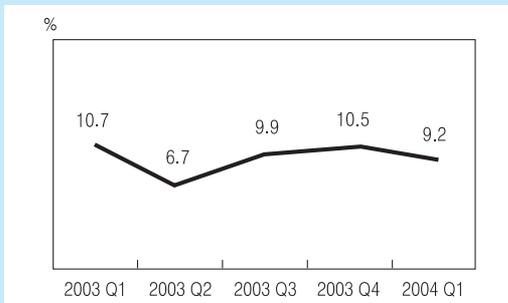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수입의 경우 5월의 수입증가율은 35.4%로 2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입추세는 국내 투자상황에 달려 있다고 볼 때 투자과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진행되면서 수입증가속도가 점차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호황과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그림 7〉 경기진정책 전후 수입



자료: Global Insight, 필자 정리.

〈그림 8〉 경기진정책 전후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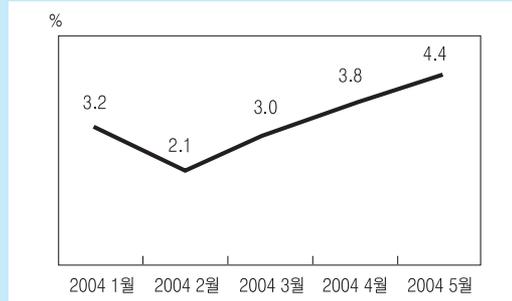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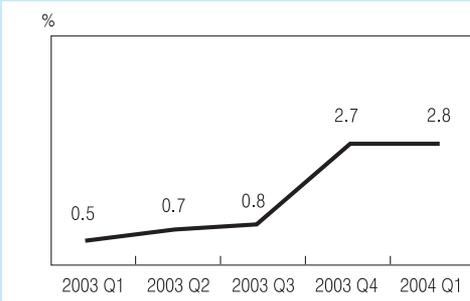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필자 정리.

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던 원자재 수입이 이번 투자억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민간소비의 경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를 보여 주는 소매판매는 5월 한달 동안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를 기록했다.

소매판매가 급증하면서 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품목은 식품으로 5월 한달 동안 11.8% 상승했다. 반면에 비식품 가격상승률은 0.6%를 기록한바, 물가상승이 식품과 비식품으로 양극화되어 나타

〈그림 9〉 경기진정책 전후 소비자물가



자료: Global Insight, 필자 정리.

나고 있다.

4. 결론

투자는 중국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 중복 및 과잉투자가 발생하면서 경기과열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지난 4월 경기진정책이 발표된 이후 5월의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본 결과 투자억제가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투자와 총수요는 비례관계에 있다. 따라서 경기진정책으로 인해 투자억제가 시행되어 총수요 감소를 가져올 경우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투자억제에도 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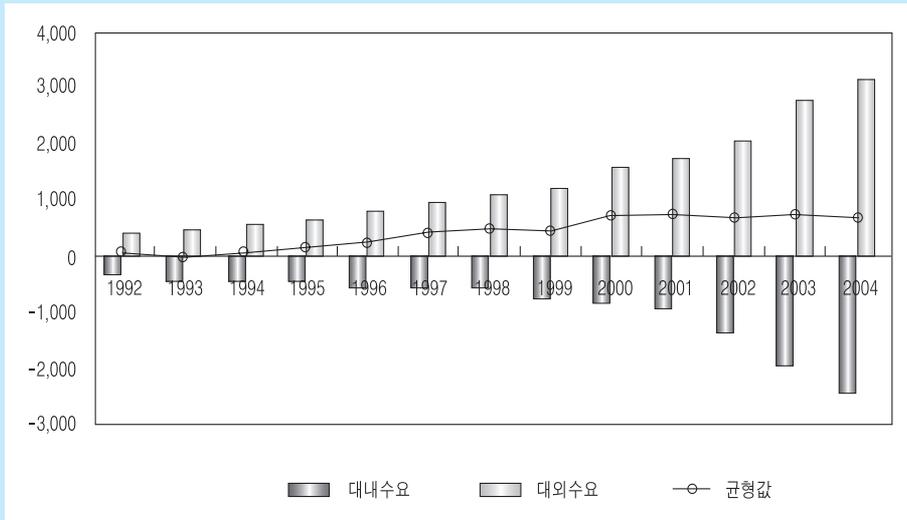
하고 총수요가 안정성장을 유지할 경우 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투자억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수요의 안정적인 성장 여부가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운용이 중국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국경제는 총수요 중에서 대외수요가 대내수요를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⁴⁾ 2003년 중국의 대외수요와 대내수요는 각각 2조 7,730억 위안, 1조 9,992억 위안을 기록했다. 대내수요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요의 균형 측면(대외수요와 대내수요의 균형값이 0에 수렴하는 경우)을 고려할 때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경제의 수요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10 참고).

4) $Y = C + I + G + Ex - Im \Rightarrow Y - (C + I + G - Im) = Ex$, (Y: 실질 GDP, C: 가계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Ex: 수출, Im: 수입)
(대내수요) (대외수요)

〈그림 10〉 중국의 대내수요와 대외수요 추이

(단위: 10억 위안)



자료: Global Insight, 필자 정리(2004년은 추정치).

금번 경기진정책은 대내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경제는 투자와 정부지출이 대내수요를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림 2 참고). 따라서 금번 경기진정책으로 인해 대내수요가 타격을 입게 됨으로써 대외수요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수요와 대내수요의 격차가 확대될 경우 양자간의 균형과 총수요의 안정성장을 유도할 요인은 소비에 있다. 중국의 경우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되지 못한다.⁵⁾

80%대를 유지하는 선진국은 물론 65%를 보이고 있는 인도와 비교해도 소비비중이 매우 낮다. 따라서 소비를 진작시켜 대내수요 증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소비진작은 중국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인바, 여타 거시정책 운용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가령 대폭적인 금리인상의 경우 투자억제보다 더욱 강력하게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5) 중국의 GDP 지출항목 중 민간소비 지출은 47.1%임.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참고문헌

- Global Insight.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CHINA.
 _____. 2004. 6. *Monthly Outlook*. CHINA.
- Lee, Todd C. 2004. *China's Overheated Growth Continues*. Global Insight. (June 7)
- Oxford Analytica, 2004. *China: Strong underpinning mitigate overheating fears*. (April 19)
- _____. 2004. *China: Inflation raises questions over interest rates*. (June 18)
- 國家信息中心 _ <http://www.cei.gov.cn/>
 _____. 2004. 5. 8 『二季度我國宏觀經濟仍高位運行』.
 _____. 2004. 5. 11 『當前宏觀經濟分析』.
 _____. 2004. 5. 19 『宏觀調控效果顯現, 1-4月彬投資增幅再回落』.
 _____. 2004. 5. 24 『宏觀經濟調控始見成效, 中國經濟初現“軟著陸”迹象』.
 _____. 2004. 5. 24 『中國下半年經濟運行將趨向平穩』.
 _____. 2004. 5. 25 『國家統計局長李德水談當前經濟形勢和宏觀調控』.
 _____. 2004. 5. 28 『馬凱: 中國經濟運行正朝着宏觀調控預期目標發展』.
 _____. 2004. 6. 2 『當前宏觀經濟調控的基本取向』.
 _____. 2004. 6. 3 『經濟形勢積極向好, 宏觀調控成效初現』.
 _____. 2004. 6. 4 『國家信息中心預測, 二季度經濟增長將達11.4%』.
 _____. 2004. 6. 4 『中國經濟將軟著陸』.

일본 “지적재산권 전략”의 최근 동향

鄭成春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부연구위원
jung@kiep.go.kr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시정방침연설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지적재산입국’을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부정책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중요한 수익원천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 및 민간기업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대전환과 더불어 최근 한국, 중국, 대만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소송이 다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동향과 그 배경에 있는 일본 지적재산권 전략의 변화를 소개한다.

1.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정보화, 글로벌화의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간의 경제통합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간의 장벽이 크게 완화되고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 세계화 경향은 각국의 산업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각국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 및 고도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저비용 경제의 급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노동비용이 높은 국가의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기존의 자본 및 노동투입을 중

심으로 하는 대량생산방식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선진 각국은 지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창조와 보호강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특허권 등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1982년 특허 재판소로서 연방순회항소재판소(CAFC)를 설치, 특허 관련 소송을 일원화하여 지적재산 관련 소송의 효율화 및 판례의 통일성 확보를 달성하려 하였다.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도적 기초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도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구조개혁정책 핵심 축의 하나로서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개혁의 방향과 그 효과가 주목

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지적재산권 정책 변화와 연관이되어 최근에는 일본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략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즉 지적재산권을 기업의 중요 자산 중 하나로 인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 SDI와 후지츠의 특허권 분쟁이다. 이러한 특허권 분쟁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기업에 대해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샤프의 액정 텔레비전을 둘러싼 대만기업과의 분쟁이다.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경향은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본정부 및 기업의 전략이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전략변화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 지적재산권 전략 추진의 배경

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전략

일본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으

로 선회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놓여 있다. 첫째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낙후성 극복’과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이라는 일본의 국내적인 요구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세계의 선진경제는 단순한 제조기술에 바탕을 둔 대량생산체제에서 고도의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경제체제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려는 사회적인 유인제도, 창조된 지식의 법적 권리로의 전환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나아가 창조된 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일본사회에서는 ‘지적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발명되었을 때 먼저 이것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인식이 서구사회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또한 창출된 지적재산이 누구의 ‘소유’ 인지가 불분명한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창출된 지적재산의 활용도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적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였다.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재산전략

둘째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한국,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기술추격에 의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특히 저임금을 바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은 고도의 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산업을 끊임없이 창출해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예를 들면 반도체산업의 경우, 1980년대 일본기업은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할 정도로 우세하였으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공세를 가한 한국기업에 의해 그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1990년대에는 IT붐과 함께 PC,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DVD, 플라즈마 텔레비전, 액정 텔레비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였다. 일본기업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한국, 대만, 중국 대기업의 맹추격에 시달렸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둔 신제품의 개발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일본기업을 중심으

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제품이 표준화되고 제조기술 습득이 용이해져 후발자에 의한 기술추격 및 제품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상황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이 선택한 최후의 전략이 바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이다.

다. 해외시장에서 일본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전략

한편 최근 들어 일본기업의 상표, 의장 및 특허권 침해사태가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일본제품의 모방품 및 해적판이 범람하고 있어 일본제품의 잠재적인 시장의 상실과 브랜드 이미지의 저하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모방품의 제조 및 유통실태를 살펴보면, 중국, 대만, 한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제품의 모방품 제조지역 중 중국, 대

만,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고 유통지역에서도 이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해외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지적재산권 전략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다.

3. 지적재산권 전략 추진의 경위 및 주요 내용

가. 경위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2월 시정방침연설에서 '지적재산입국'을 국정 주요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동년 2월에는 지적재산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심의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적재산전략회의'가 총리주도로 설치되었고 이 회의를 통하여 일본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제도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동 회의는 2002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

〈표 1〉 일본제품의 모방품 제조 및 유통의 국가별 비율

(단위: %)

	중국	한국	대만	홍콩	기타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
모방품 제조	33	18	17	5	14	5	3	5
모방품 유통	19	12	14	8	26	8	7	6

자료: 특허청, 「2001년도 모방피해조사보고서」

지 약 8회에 걸친 집중적인 심의를 실시하였고 2002년 7월에 「지적재산전략 대강」을 발표하였다. 이 대강에는 일본의 지적재산권 전략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행동계획이 망라되어 있다.

한편 지적재산전략회의를 통해 분출된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2년 12월 「지적재산 기본법」이 공포되었고 동 법은 2003년 3월에 시행되었다. 2003년 3월에는 지적재산권 전략의 체계적인 수행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내각부 산하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고 2003년 7월에는 「지적재산전략 추진계획」이 발표되었

다. 동 계획은 2004년 5월 「지적재산전략 추진계획 2004」로 수정 보완되었다.

나. 개혁의 주요 내용

지적재산전략은 지적재산의 창조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일본정부는 지적재산전략을 창조, 보호, 활용, 인재육성의 네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전략 추진계획 2004」는 네 분야에서의 실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개관한다.

〈표 2〉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의 추진경위		
일 시	주요 내용	비 고
2002년 2월	고이즈미 총리의 시정방침연설	연구개발성과의 지적재산화와 이의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을 역설
2002년 3월	지적재산전략회의 개최	총리주도로 내각의 주요 대신 및 산업계, 학계의 유식자들로 구성. 8회에 걸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하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인재육성 네 분야에서 개혁내용을 정리
2002년 7월	「지적재산전략 대강」의 결정	일본의 지적재산권 전략의 기본방향과 행동계획을 정리
2003년 3월	「지적재산기본법」 시행	지적재산제도의 기본적 틀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
2003년 3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	지적재산제도 개혁의 추진주체로서 내각부 산하에 설치. 지적재산전략 추진계획의 작성 및 추진상황의 검토와 추가적인 개혁의 방향을 검토하는 종합적인 정책추진기구
2003년 7월	「지적재산전략 추진계획」 발표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계획,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의 설정 및 추진을 위한 계획
2004년 5월	「지적재산전략 추진계획 2004」 발표	「지적재산전략 추진계획」의 개정판

자료: 지적재산전략본부 및 각종 보도자료

1) 지적재산의 창조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은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조를 촉진하는 제도개혁을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생산활동을 보다 왕성하게 함과 동시에 얻어진 성과의 지적재산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적재산의 축적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지적재산의 창조에서 대학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대대적인 대학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의 연구자원을 보면, 연구비의 20%, 연구자 수의 35%가 대학에 존재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특허권 취득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분야의 경우, 미국에서는 반수 이상의 특허출원이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것이 겨우 13%에 머무르고 있으며 76%가 대기업에 의하여 출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에 의한 지적재산권 취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2003년도에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가 단행되었다.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를 통하여 대학의 자체적인 권한(즉 학장의 관리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성의 예산배정이 대학의 실적에

따라 차별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에 의한 특허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지적재산본부를 설치하여 지적재산의 취득, 활용을 일원화하는 조직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의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원칙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대학 연구자의 발명에 대한 권리 중 80% 이상이 연구자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나 연구자와 지적재산본부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이 지적재산본부로 귀속되게 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자에 의한 지적재산 취득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평가시스템도 개혁하고 있다. 기존의 평가시스템은 논문 중심이었으나 특허 등의 취득도 연구자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되어 가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조정비 등 공모형 연구개발비의 배분과정에서도 연구자의 특허 취득 실적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특허출원으로부터 취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특허 심사원의 대폭적인 확충, 법과대학원에서 기술관계 법조인의 육성, 특허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요원의 배치, 특허 취득비용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기업에서의 지적재산창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무상의 발명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룰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행상 기업에 귀속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발명에 참여한 종업원과 기업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상의 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법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종업원에 대한 보상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룰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허심사의 신속화를 위하여 「특

허심사 신속화법」이 2004년의 통상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이며 이 법률에 의해서도 직무발명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지적재산의 보호

한편 일본정부는 일본의 기업,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의 보호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현재 약 110만 건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약 3분의 1에 해당되며 70만 건 이상의 특허는 사실상 수익을 발생시키는 지적재산으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특허 출원부터 취득까지의 과정을

〈표 3〉 지적재산의 창조전략

분 야	정 책	비 고
대학 개혁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	대학 경영자의 권한 강화와 예산의 차별화
	연구기관 평가제도의 개혁	연구기관 평가에 지적재산권 취득을 반영
	연구자에의 인센티브 부여	연구자의 평가에 지적재산권 취득을 반영
	지적재산권 관리의 일원화	대학 등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지적재산관리본부를 설치. 또한 기업에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TLO)의 설립 및 활용을 강화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비용 지원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산지원.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
기업 개혁	대학출 벤처기업의 육성	벤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기업 개혁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특허법, 특허심사 신속화법 등을 통하여 기업의 종업원과 기업 사이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룰 도입

자료: 지적재산전략본부 및 각종 보도자료

살펴보면, 출원, 심사, 등록, 특허권 발생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출원된 특허는 자동적으로 심사되지 않으며 심사청구를 할 때 비로소 심사가 시작된다. 일본의 경우, 출원된 특허 중 심사청구를 실시하는 특허는 약 50% 정도이다.¹⁾ 나머지는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잠들어 있다. 또한 심사과정을 거친 특허 중 50%만이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출원된 특허 중 4분의 1만이 특허권을 부여받고 있다.

특허권을 인정받고 등록을 완료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특허 심사과정에 있는 안건은 현재 약 50만 건 정도이며 심사청구로부터 심사결과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6개월이 소요된다. 1건의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약 반일 정도임을 고려하면 얼마나 심사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심사기간은 16.7개월(2002년), 유럽은 23개월(2002년)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심사관의 대량 채용, 종래 기술조사의 외주선 확충, 출원인에 의한 종래 기술조사에의 인센티브 부여, 실용신안 제도의 매력 향상 등을 규정한 「특허심사

신속화법」을 2004년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특허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특허권 침해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제도를 2004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즉 도쿄고등재판소에 기술재판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한 부문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는 미국의 연방순회항소재판소(CAFC)를 모방한 것으로 특허소송이 각 지역의 고등재판소에서 실시되던 제도를 대폭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의 획기적인 강화이다. 그 중에서도 특허권 침해상품이 일본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2004년도부터 도입되었다. 특허권 침해는 외관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전에는 특허권자의 권리침해 주장에 근거하여 일본으로의 통관을 정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정률법」의 개정을 통하여 통관을 정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세관장은 특허청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소송과 관련된 사안의 경

1) 이처럼 심사청구율이 낮은 이유는 특허를 출원하는 것만으로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독특한 제도이며 미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우 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통관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다자간 및 2국간 협상을 통하여 특허제도의 조화, 특허권 침해가 심각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특허제도 개선 및 당해 국/지역에서의 특허권 보호 요구 강화 등 국제적인 특허권 보호강화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3) 지적재산권의 활용

지적재산권의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혁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기업경영의 중핵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경영전략상 지적재산권을 기업수익 원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일본기업은 지적재산의 유효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기업의 위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지적재산의 취득 및 관리지침」, 「영업비밀관리지침」, 「기술유출방지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업에 이의 숙지와 준수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표 4〉 지적재산의 보호전략

분 야	정 책	비 고
특허심사의 신속화	임기부 특허심사관의 채용 확대	향후 5년간 대폭 확충(2004년도 98명 증원)
	종래 기술조사를 위한 외부기관의 확충	특허심사시 종래 기술조사기관의 이용을 장려
	출원자에 의한 종래 기술조사의 촉진	출원자가 스스로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양보다 질을 중시한 특허 출원	특허 취득의 필요성이 저하된 경우에는 출원자제를 요청
사법제도 개혁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설립	특허소송을 도쿄 및 오사카 지방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집중
	세계특허시스템의 구축	특허법, 특허심사기준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하여 각국의 특허청간의 상호 인증 등 협력의 추진
국제적인 지적재산보호협력	국제적인 저작권제도의 조화	방송, 음악, 영화,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WIPO가 추진하는 각종의 조약의 조기 체결을 추진
	외국에서의 모방품, 해적판 대책을 강화	외국에서 일본제품의 모방품, 해적판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무성에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실(가칭)을 설치하고 각국에 대책 수립을 촉구
	다양한 국경조치의 강화	특허권, 상표권 등을 침해한 상품의 일본내 생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통관금지 등을 실시

자료: 지적재산전략본부 및 각종 보도자료

일본기업의 기술보호,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술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정부는 보호된 지적재산의 평가수법 개발, 지적재산의 유통시장 활성화, 지적재산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의 강화, 기업의 지적재산 공개(지적재산 보고서의 발행)를 통한 증권시장과의 연계 강화, 지적재산의 신탁제도

개선 등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이 주는 시사점

일본정부가 지적재산권의 창조와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적재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서두르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이

〈표 5〉 지적재산의 활용전략

분 야	정 책	비 고
기업 경영 전략	지적재산 중시의 경영전략 추진	지적재산을 기업수익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지적재산의 취득 및 관리, 영업비밀관리, 기술유출관리 등 지적재산의 관리체제를 정비, 특허소송 등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하여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고자 하는 미국식 지적재산전략을 채택
	지적재산 공개의 강화	각 기업이 보유하는 지적재산의 내용을 공개하고 주식시장과 지적재산의 연계를 촉진함. 이를 위하여 지적재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를 추진 (2004년도에는 공개기업 100사를 목표로 함)
	지적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지적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이를 위해 정책투자은행의 지적재산 담보 대출, 지적재산의 이전,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목적회사에 대한 정책투자은행의 대출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짐.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수법 개발	지적재산의 유통화를 촉진하고 기업가치의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적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수법 및 정성적 수법을 개발
국제 표준화	연구개발, 지적재산 취득, 국제표준화 전략의 일체화	국가의 중요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가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
	국내표준화 심사의 신속화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의 전 단계로 삼고 이의 실현을 조기화하기 위하여 국내표준의 심사를 신속하게 실시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정보수집, 대응 등의 체제를 정비

자료: 지적재산전략본부 및 각종 보도자료

유가 있다. 첫째는 약화된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지적재산의 보호를 통해 유지하려는 방어적 관점이며, 둘째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제조업 강국의 경제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식창조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발전의 신모델을 구축하려는 공세적 관점이다.

우리나라도 지식기반경제를 외쳐 왔고 대학, 공적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체제를 가동시켜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신산업의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되는 지식과 기술의 재산적 가치 보호,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 귀속의 명확화, 이를 수익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적재산의 시장 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창출은 이러한 제도의 틀 위에서 비로소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미 후지츠와 삼성 SDI의 특허권 분쟁에서도 명백해졌듯이 일본기업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전략으로 완전히 돌아서 있다. 액정 텔레비전의 생산업체인 샤프도 대만의 생산업체 및 일본의 판매업체(이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IT산업의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일본기업과의 특허권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다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의 기술, 부품, 소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일본기업과의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삼성 SDI의 경우, 결국은 후지츠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특허사용료의 지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특허사용료가 통관정지에 따른 손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본시장에서의 판매를 재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과의 특허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일간 지적재산권제도의 조화와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특히 한·일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인 교섭단계에 들어섬에 따라서 양국간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상호인정과 제도의 조화가 요청된다. 과학기술협력의 중요한 의제로서 양국의 분쟁해결제도 정비, 양국의 특허 상호인정, 특허정보의 상호교환, 특허 등 지적재산권 유통시장의 정비 및 통합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조를 촉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상품의 모방제조, 유통, 판매·소비에서 중국, 대만에 이어 세 번째 국가에 속하고 있다. 아직도 지적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지적재산의 창조를 위한 경제주체의 인센티브도 미약한 실정이다. 지적재산을 부가가치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이에 기반한 기업경영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도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의 사이클(창조, 보호, 활용) 전체를 망라하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진정한 지식기반경제의 육성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文部科學省. 2003. 『科學技術白書』.

日本經濟新聞. 2004. 5. 「『ゼミナール』知財立國への道(1回-13回)」.

知的財産戰略會議. 2003. 「議事録'1回-8回」.

知的財産戰略會議. 2002. 『知的財産?略大綱』.

知的財産戰略本部. 2004. 5. 『知的財産推進計2004』.

經濟産業省. 2002. 『産業競?力のための知的財産戰略』.

知的財産國家戰略フォーラム. 2002. 「2010年には世界の知財立國になろう!」. 知的財産戰略會議第1回會議提出資料.

제13차 EU · 러시아 정상회의의 결과와 향후 과제

朴映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ygpark@kiep.go.kr

5월 2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EU · 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EU의 조건에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가격 인상, 서비스시장 개방 촉진, 평균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EU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경제, 자유 · 안보 · 사법, 안보, 문화 · 연구 · 교육 등 공동영역에서의 협력 강화와 기존 공동협력협정(PCA)을 EU 신규회원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정상회의에서의 양자간 합의에 따라 러시아의 WTO 가입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양자간 경제관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EU와 러시아의 관계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자간 상호 이해의 증대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EU내 대국과 소국 그리고 신규회원국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序

이전 사회주의 체제 당시 舊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8개 중 · 동구 국가가 5월 1일 EU에 가입함에 따라 EU와 러시아는 이전보

다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1일 제13차 EU · 러시아 정상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WTO 가입문제에서부터 교토의정서 비준 그리고 양

자간 경제, 정치, 그리고 안보문제 등에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상회의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EU의 조건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러시아의 WTO 가입 일정이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이를 통해 양자간 경제관계가 더욱 확대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상회의에서 양자간 합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양자관계가 확대 및 발전하기 위한 과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주요 합의내용

가. 러시아의 WTO 가입 조건

러시아는 1993년에 이미 WTO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지만, EU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과의 양자간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경우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장과 여타 서비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러시아가 국내산업에 제공하는 에너지 공급가격이 세계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WTO의 공정거래원칙에 어긋나며, 서비스시장 개방 정도도 WTO에 가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양자간 협상이 30여 차례 이루어져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국내산업에 대한 에너지 공급가격을 비용과 수익 그리고 에너지 탐색활동에 필요한 신규투자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2010년까지 두 배 정도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세계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에 수렴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이는 현재 1천 입방미터(cubic metres)당 27~28 달러수준인 러시아내 에너지 공급가격을 2006년에는 37~42달러 수준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49~57달러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내 외국기업들도 러시아 국내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동등한 조건으로 러시아의 거대 에너지기업인 Gazprom社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러시아의 국내 에너지 공급가격 인상에 대한 대가로 EU는 Gazprom社의 수출 독점력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에너지 공급가격 인상 외 러시아는 통신, 운송, 금융, 우편, 건설, 유통, 여행 등 주요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현재 18%인 평균관세율을 7.6% 이하로 축소하고, 수산물은 11%, 그리고 농산물은 13% 이하로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¹⁾ 이외에도 러시아는 EU 항공기의 시베

리아 횡단에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부과금체계를 최소한 2013년 이전까지 실제 비용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공동영역 협력 강화

EU와 러시아는 2003년 5월 EU·러시아 정상회의에서 합의하였던 경제, 자유·안보·사법, 대외안보, 그리고 문화·연구·교육 등 공동영역(common space)에서의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공동영역에서의 협력이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EU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자세를 요구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2003년 공동영역에서의 협력에 합의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이미 마련한 상황으로²⁾ 푸틴 대통령은 EU의 협력 실행을 위한 조직체계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버티 아헌 EU 의장은 공동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11월 네덜란드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차기 EU·러시아 정

상회의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공동협력협정」(PCA) 적용 확대

EU와 러시아는 지난 4월 27일 룩셈부르크에서 기존 EU·러시아의 「공동협력협정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PCA)」³⁾을 5월 1일에 EU에 가입한 10개 신규 가입국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공동협력협정(PCA) 확대 적용에 따른 향후 실행계획과 러시아 의회(Duma)의 비준일정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EU와 러시아는 Kaliningrad 지역에서의 에너지를 포함한 상품이동의 자유화에 대해 논의하고 통관절차 및 관세부과에 대해서 향후 협력해 나가고 이에 대한 특정협약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교토의정서 비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교토의

- 1) 중국의 경우 WTO 가입을 위해 평균관세율을 8.9% 이하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2) 공동영역과 관련한 EU와의 일반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전 EU 대사인 Mikhail Fradkov가 전담하고, 경제분야는 Viktor Khristenko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자유·안보·사법분야는 Viktor Ivanov 대통령 자문관이, 대외안보분야는 Sergei Lavrov 외무장관이, 그리고 연구·교육·문화분야는 Sergei Yastrzhembsky 대통령 자문관이 전담하고 있다.
- 3) 「공동협력협정」(PCA)은 EU와 러시아간의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으로 1994년에 체결되어 1997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PCA에 따라 러시아는 EU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적용받고 있다.

정서(Kyoto Protocol)에 대한 러시아 의회(Duma)의 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의회의 공식적인 비준일정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현재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CO₂ 배출량이 높은 러시아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도 러시아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위축을 우려하여 비준을 꺼리고 있으며, EU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EU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한 현대화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득해 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U는 러시아로부터 교토의정서의 비준에 대한 확실한 합의는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동 문제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 인권문제

EU와 러시아는 정상회의에서 체첸지역에서의 테러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동 지역에서의 테러방지와 복구지원에 대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U는 지

난 5년 동안 체첸지역의 안정과 복구사업을 위해 이미 1억 2천만 유로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4. 평가 및 향후과제

EU가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그동안 일반적인 합의수준에만 그쳤던 이전 정상회의와 달리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EU측에서는 러시아의 교토의정서에 대한 공식적인 비준일정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의 WTO 가입조건으로 제시하였던 에너지 공급가격 인상과 서비스시장 개방, 그리고 관세율 인하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러시아도 에너지 공급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Gazpron社의 독점력을 유지하고 그동안 누려온 에너지부문의 비교우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EU측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WTO 가입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의 WTO 가입에 대한 양자간 협상과 다자간 차원에서 러시아의 WTO

4) 교토의정서는 온실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EU·러시아 양자간 교역 및 투자관계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EU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며(러시아 전체 교역의 50% 이상), 러시아도 미국, 스위스, 중국, 일본에 이어 EU의 5대 교역대상국이다(EU 전체 교역의 5.0%). 양자간 교역규모는 2003년 1,035억 유로 상당으로, 러시아는 주로 연료와 1차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EU는 자본재, 산업재, 소비재 등을 수출하고 있어 양자간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이다. 러시아는 對EU 수출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을 받아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편 EU는 러시아의 주요 투자국이지만, 투자규모는 2002년 약 22억 유로 상당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EU의 對러시아 교역추이〉

(단위: 십억 유로, %)

	1999	2001	2003
수출	16.6 (2.5)	31.4 (3.6)	36.9 (4.4)
수입	34.3 (4.8)	63.0 (6.8)	66.6 (7.6)
무역수지	-17.6	-31.6	-29.7

주: ()안은 전체 교역중 비중

자료: Eurostat; IMF(DOTS).

〈품목별 EU의 對러시아 교역(2003년 기준)〉

(단위: 십억 유로)

	수출	수입	무역수지
농산물	4.1	2.2	1.9
에너지	0.2	40.4	-40.21
기계	12.1	0.7	11.5
운송기자재	4.3	0.4	3.9
화학품	5.1	2.6	2.5
섬유 및 의류	1.87	0.3	1.60

자료: Eurostat; IMF(DOTS).

〈EU의 對러시아 투자추이〉

(단위: 십억 유로)

	2000	2001	2002
	2.0	2.1	2.2

자료: Eurostat; IMF(DOTS).

가입에 대한 실무반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내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던 EU의 반대를 해결함으로써 가입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측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는 EU 확대 이후 더욱 가까워진 국경과 함께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해와 희생이 같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EU가 6월 23일 발표한 EU의 새로운 'Neighbours Policy'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EU가 중·동구지역에서 나아가 발틱지역과 독립국가연합(CIS)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범유럽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WTO 가입조건에 대한 양자간 협상 타결은 향후 EU와 러시아간의 교역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서비스시장 개방은 EU 회원국 뿐 아니라 여타 선진국의 투자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비준이나 인권문제 등 경제, 정치, 안보적인 문제들에서 향후 협력해야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EU는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에 따른 러시아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러시아는 주요 교역대상국이던 8개 중·동구 국가가 EU의 공동통상정책을 따름으로써 교역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내 소수 러시아인에 대한 인권보호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⁵⁾

한편 EU내에서도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EU내 대국들은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나 인권문제 등에서 보다 관용적인 입장을 통해 양자간 관계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 소국이나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공동 외교안보정책의 합의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즉 러시아에 대해서도 여타 대외국에 대한 정책과 동일한 기준·원칙의 적용을 원하고 있다. 중·동구 신규회원국 대다수는 기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국들의 입장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등 러시아와 국경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신규 회원국들은 인접지역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5) EU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EU 가입시 소수민족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가입기준을 이미 충족시켰기 때문에 EU 가입 이후에도 소수 러시아인에 대해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도 얻을 수 있으며 시민권 신청자격도 주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전략적인 협력과 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대국들보다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신규회원국들도 EU의 對러시아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대국들 중심의 정책 실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EU내 회원국간 이견들을 조정하여 러시아

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할 것이고, 또한 EU가 러시아의 이해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대국들과 직접적인 협상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EU가 러시아를 진정한 협력파트너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자간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갈 뿐 아니라 회원국내 상호 이해관계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홍중·이철원·박영곤·박경석, 2004.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정책연구 03-02.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European Commission, 2002. *The European Union and the World*, pp. 8-9.
- _____. 2003.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Russia.
- _____. 2004 a. "EU-Russia deal brings Russia a step closer to WTO membership." IP/04/673.
- _____. 2004 b. "Council Conclusions On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ENP)." EUROMED REPORT issue No 79. (June 23)
- Europe Information Service, 2004. "EU-Russia Becoming Closer Neighbours?" No. 2871. (May 26)
- Oxford Analytica, 2004. "Russia/EU: WTO deal obscure foreign policy clashes." (May 24)
- _____. 2004 a. "Russia/EU: Summit agenda includes WTO accession deal." (May 21)
- _____. 2004 b. "Russia/EU: Moscow minimises economic impact of EU-25." (April 28)
- _____. 2004 c. "EU: Neighbourhood policy may offer little." (May 25)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전망

金眞梧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CAFTA는 NAFTA에 이어 미주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된 두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 시장개방 수준이나 내용이 어느 FTA보다도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를 통해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을 진단할 수 있는바, 특히 CAFTA에는 미국과 브라질의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FTAA협상을 우회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CAFTA 비준에는 참여국들의 국내 정치·경제일정은 물론, 각국의 미진한 협상 목표달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미는 CAFTA 취약부문들로부터의 저항을 감안하여 미국 의회의 비준 가능성이 확실해질 때 비준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공동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2004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CAFTA를 비준할 가능성이 높아 비준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금년 이내 CAFTA 비준과 2005년 1월 1일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체결된 미국·도미니카공화국 FTA를 CAFTA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중미 국가들과 도미니카공화국 사이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비준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1. 머리말

미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그리고 온두라스 등 중미 5개국은
2004년 5월 28일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
(U.S.·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CAFTA)에 서명하였다. CAFTA 공식협상은 2003년 1월 시작되어 12월 9차 회의를 끝으로 타결되었지만, 실질적인 타결일지는 통신 및 보험시장 개방 등에 대한 미국과 코스타리카 사이의 추가협상이 마무리된 2004년 1월 25일이다. 조만간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간에 타결될 FTA가 CAFTA에 첨부되고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2005년 1월 발효될 경우 미주지역에서는 NAFTA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규모 지역협정이 탄생될 예정이다.

CAFTA 서명 직후 美 상공회의소와 경영단체들은 同 협정이 미국의 농산물과 제조업 제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향상시킬 것으로 환영하면서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노동단체와 환경단체들은 협상목표에 미달한 노동과 환경규정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미 의회는 정당과 관계없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 및 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별 이해가 관련되어 있어 협정비준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중미 국가내에서도 의회에 대한 비준거부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CAFTA 출범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국과 브라질의 갈등으로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주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소지역주의가 활성화되는 상황을 이해하려 하였다. 또한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에서 나

타나는 주요 특징 분석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CAFTA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주요 쟁점별 협상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향후 CAFTA 진로를 전망하는 방안으로서 최근 갈등의 중심에 놓인 노동 및 환경이슈, 비준을 앞둔 회원국들의 상황을 살펴본다.

2. CAFTA 경과 및 주요 협상결과

가. 경과

CAFTA협상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16일 워싱턴 소재 미주기구(OAS)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기존의 경제관계 강화, 중미지역 정치·경제·사회개혁 촉진, FTAA 완성을 향한 방편을 목적으로 미국이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2년 3월 24일 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된 미국·중미 정상회의에서 FTA를 구체화시키려는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적 차원에서의 CAFTA 논의는 USTR을 통하여 추진되었는데, 2001년 4월 졸릭(Robert Zoellick) USTR 대표와 중미 대표들이 CAFTA 체결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다.

중미지역에서 CAFTA 필요성은 NAFTA가 논의되면서 제기되었다. 1984년 카리브경제

동반자법(CBI) 제정으로 중미를 비롯한 카리브 연안국들의 미국시장 진입이 용이해졌지만, NAFTA가 무역 및 투자 전환효과를 유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 이에 1994년 NAFTA가 출범하면서 미국시장에서 멕시코가 획득한 수준의 특혜(NAFTA-parity)를 획득하기 위한 CBI 수혜국들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시작되었다. 중미 국가들은 1997년까지 NAFTA-parity 획득을 위한 노력이 실패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특혜의 한계성이 노정되며 FTAA협상이 진척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즉 1997년 5월 클린턴 대통령의 코스타리카 방문을 계기

로 중미는 단기적으로는 CBI 확대와 NAFTA-parity를, 장기적으로는 CAFTA의 협상 개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CAFTA는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신속처리협상권(fast track authority)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한 이후 유보되어 왔다.

나. 주요 내용 및 이슈

1) 시장접근

CAFTA의 주요 내용은 미국·칠레 FTA와 유사하면서도 이미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어

CAFTA 참여국들의 동기 및 목적

- 미국
 - 무역정책 측면: FTAA 촉진, 자유무역 의지 표명, 경제 소국과의 FTA 성공사례
 - 국가안보 측면: 마약거래 통제 강화, 돈세탁 및 테러 예방, 이민 유입 감소
 - 정치적, 전략적 측면: 중미지역 정치·경제·사회개혁 촉진, 정치안정 및 민주주의 촉진, 중남미 지역과의 유대관계 표현
 - 경제적 측면: 수출증대, 주요 경제부문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중미
 - 무역정책 측면: 미국시장 접근 불확실성 완화, FTAA협상 지연에 따른 위협요소 제거
 - 경제적 및 개발적 측면: 수출촉진, 투자유치, 소비자·생산자 공동이익을 위한 수입 다각화, 제도 및 시장경제 기초 개선, 정책개혁 촉진, 쌍무 및 다자원조 유입 증대
 - 정치적 측면: 사회적 여건 및 민주주의 개선, 경제·정치개혁을 위한 국내적 저항 극복

자료: Jeffrey J. Schott, ed.(2004), p. 230, p. 234.

며한 FTA보다도 진일보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주요 논쟁은 상품별 관세철폐프로그램보다는 수출특혜제도와 할당 관세 등의 비관세조치 및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에 집중되었다. 관세철폐프로그램에서는, 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FTA협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개발도상국인 중미의 높은 부담과 10여 년간의 차별적인 대외공동관세 운용으로 나타난 단일협상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상호 적용하고 있는 관세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타협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2개에 달하는 관세목록을 감안하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¹⁾ 미국의 對중미 수입관세는 GSP, CBI를 비롯한 각종 특혜조치로 인하여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중미 수출품의 61% 이상이 무관세로 진입하고 있었다.²⁾ 중미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개방 및 개혁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면서 상호이해가 충돌하는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시장보호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결과로 공산품의 경우, 미국의 對중미 수출품의 약 80%에는 출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20%는 5년 및 10년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되며, 중미의 對美 수출품은 거의 완전히 무관세화되고 섬유 및 의류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³⁾ 농산물의 경우에도 미국의 對중미 수출품(쇠고기, 면화, 밀, 콩, 포도주, 과일, 야채, 가공품 등)의 약 50%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15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개방되며, 중미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무관세로 수출되는 가운데 다른 FTA에서 미국의 시장개방 유예품목이던 설탕조차도 무관세화될 예정이다.⁴⁾

수출가공지대(EPZ)를 포함한 개도국의 특별관세제도는 재정 및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무역을 왜곡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미국은 NAFTA에서처럼 CAFTA에서도 FTA 발효 즉

1) Chapter Three/Annex 3.3(Tariff Elimination)에 따르면, 관세철폐목록은 8개(A-H)로 분류되었음. A(발효 즉시 무관세, 섬유의류도 역내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협정 출범 이전인 2004년 1월 1일부터 즉시 무관세 및 무쿼터 적용, 관세차액 환급); B(5년간 매년 동등 인하 후 자유화); C(10년간 동등 인하 후 자유화); D(15년간 동등 인하 후 자유화); E(6년간 기본율 적용, 7~10년간 매년 8.25% 인하, 11~15년간 매년 13.4% 인하 후 자유화); F(10년간 기본율 적용, 11~20년간 매년 동등 인하 후 자유화); G(무관세 대우 품목); H(최혜국 대우 품목). 이외에 국가별로 독특한 특별 목록 14개(I, J, K, L, M, N, O, P, Q, R, S, T, U, V)가 국별 관세철폐프로그램(General Notes and Appendix I)에 규정되었음.

2) USTR(2001)은 미국의 對중미 국가별 무관세 수입 수준이 코스타리카 84%, 온두라스 67%, 엘살바도르 58%, 과테말라 50%, 니카라과 47%로 산정하였음.

3) Chapter Three/Section G(Textiles and Apparel) 참고.

4) 설탕제품은 무관세화되면서 TRQ 적용을 받는데, Chapter Three/Section F/Article 3.16(Sugar Compensation Mechanism)에 의거하여 미국은 중미 수출국에 무관세 수입량과 TRQ 규모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옵션을 획득하였음.

시 혹은 발효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EPZ 특혜제도 철폐를 주장하였다. 비록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출보조금 금지조치가 2008년까지 유보되어 있을지라도 수출의 상당 부분을 EPZ에 의존하고 있는 중미로서는⁵⁾ 수용하기 어려운 쟁점이었다.⁶⁾

CAFTA에서는 Chapter Three/Annex 3.2 (National Treatment and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국별 조치, Annex 3.11(코스타리카의 수출세 허용), 수입면허, 행정수수료 및 양식, 기타 조치(미국산을 제외한 버번 및 테네시 위스키 판매 허용 금지) 등 기존 조치를 제외하고는 비관세조치로서 어떠한 새로운 수출입 규제 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할당관세의 경우 GATT 1994 XIII과 수입면허협정(Import Licensing Agreement)에 의거하여 농산물에 한하여 허용되었다. 同 부문 협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중미가 미국의 TRQ를 줄이는데 집중하였다. 이는 중미의 경우 UR 농산물협정에서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유보받은 할당관세를 제외한 어떠한 수량제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⁷⁾ 미국은 국내 압력단

체의 로비를 바탕으로 섬유, 의류, 낙농제품, 설탕, 쇠고기, 땅콩, 담배, 면화 등 중미 주요 수출품을 비롯하여 관세품목 24%에 달하는 농산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CAFTA에서 각 국가가 인정받은 TRQ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기타 낙농제품, 설탕, 땅콩, 땅콩버터, 에틸알코올, 벼, 쌀, Yellow Corn, White Corn, 수수, 신선토마토, 신선양파, 냉동 프렌치프라이 등이다.

멕시코 및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중미는 NAFTA 유형의 원산지규정에 익숙해 미국의 접근방법에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미는 원산지규정에 역내산 원·부자재 조달 비중은 물론 부가가치 수준도 매우 낮은 특수성이 고려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곧 중미국가들의 교역 증진을 위해서는 섬유, 의류 등 많은 수출산업부문에 유연하면서도 연성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CAFTA 원산지규정은 NAFTA 규정과 유사하게 생산공정보다는 생산결과를 중시한 세번변경방식을 채택하고, 원산지판

5) 미주경제특구위원회(Zonas Francas of the Americas Committee)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온두라스는 총수출의 55%를, 코스타리카는 51.1%를, 엘살바도르는 48.8%를, 니카라과는 21.8%를, 과테말라는 6.5%를 EPZ에 의존하였음.

6)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UR협상에서 2003년으로 결정된 EPZ 유형의 수출인센티브 허용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Chapter Three/Section C/Article 3.4(Special Regime)을 통하여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SCM Agreement(보조금상계조치협정) 27.4조에 의거하여 2010년까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SCM협정 Annex II 대상국 자격으로 특별관세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7) CAFTA의 관세철폐프로그램(General Notes and Appendix I)에 국별 TRQs가 규정되어 있음. 한편 Chapter Three/Annex 3.22 (Elimination of Existing Quantitative Restrictions)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의 섬유 및 의류와 관련한 기존 수량제한 철폐가 규정되어 있음.

정보다는 적정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HTS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지조달 비율(RVC)과 Annex 4.1(Specific Rules of Origin)로 보완하였다.⁸⁾ RVC 산정방법으로는 비원산지 원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Build-down 방식과 원산지 원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Build-up 방식 등 거래가격방법을 혼용하고, 자동차제품(완성차, 엔진, 새시, 부품 등 포함)과 관련한 RVC 산정방법은 순비용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NAFTA의 7%보다 높은 10%로 설정한 최소한도(De Minimis)조항을 통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⁹⁾

한편 중미는 미국과의 경제적 불균형을 감안하여 부문별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CAFTA에 적절한 세이프가드 규정 도입을 원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Chapter Eight(Trade Remedies)/Section A(Safeguard)는 이행기 동안 CAFTA 관세인하 혹은 철폐의 결과로 원산지 제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대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증가하여 동종 혹은 직접적인 경

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으로 작용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¹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일반 세이프가드 규정 외에 CAFTA는 Chapter Three(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에서 농산물(Section F/ Article 3.15) 및 섬유(Section G/ Article 3.23)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을 두었다.

2) 농업

미국과 중미간의 농업 불균형과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농업부문 협상은 중미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다.¹¹⁾ 이는 무역협상으로 인하여 중미의 농업 생산 및 고용구조가 받을 영향이 미국 농업의 그것보다 지대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으로 이중화된 중미 농업구조에서 자유무역은 소규모 생계농인 내수부문에 급격한 취약성을 노정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을 확대하면서도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있

8) RVC 기준은 Annex 4.1(Specific Rules of Origin)의 상품 코드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Build-up은 25~35% 사이, Build-down은 30~50% 사이, 순비용은 35%임.

9)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규정 최소한도 조항은 Chapter Three/Section G(Textiles and Apparel)의 Article 3.25(Rules of Origin and Related Matters) 7항(De Minimis)으로 대체함.

10) 적용방법은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4년간 CAFTA 규정에 따른 관세인하를 중단하거나 적용시점의 MFN 관세 이하 혹은 협정 발효 직후 MFN 관세를 적용함. 1개 협정상대국 수출품이 총수입시장의 3% 이하이거나 3% 이하인 협정 상대국들의 총수출이 수입시장의 9% 이하일 때 세이프가드는 적용할 수 없음.

11) CEPAL(2002)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중미 농업인구는 446만 명으로 노동력의 38%를, 미국은 346만 명으로 2%를 차지했음. 1990년과 1995년에 비하여 중미는 증가하고 미국은 1995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음.

는 최대한의 이행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미국은 농업협상의 경우 무역법의 특별적용을 받아 USTR과 의회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그치게 됨으로써 FTA협상에서는 WTO/DDA 개방안을 넘어선 양허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CAFTA는 물론 2004년 발효한 칠레와의 FTA에서도 나타났다.

전술한 양측간 입장차이에 의하여 CAFTA 농업협상은 농산품 관세철폐프로그램과 TRQ로 나타나고, 농업수출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규정으로 정착되었다. 최장기 시장 개방 유예품목과 할당관세 적용품목 대부분이 농산물이었고, Chapter Three/Annex3.15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를 통해 이 대부분의 품목이 보호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Farm Bill of 2002" 등이 무역을 왜곡시키는 생산지원 및 수출보조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지만, FTA가 아닌 WTO에서 철폐해 나갈 문제라는 데 동의하였다.

3) 서비스

중미 서비스산업은 2001년 기준으로 GDP의 56%를 차지하여 73%를 차지한 미국에서 만큼이나 중요한 산업이다. 통신, 금융, 운송, 전문서비스 등의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지만 관광,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텔레마케팅, 콜센터, 통역 등 특정 서비스부문에서는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CAFTA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의 전문서비스 및 해상운송서비스, 코스타리카의 통신 및 보험서비스, 중미 대부분 국가의 전문서비스 등 민감부문의 보호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CAFTA협상의 쟁점은 GATS Article V에 일치하여 각국의 민감부문을 비롯한 전체 서비스산업을 개방할 것인지 여부였다.

CAFTA 국경간 서비스교역(Chapter Eleven)의 경우 "negative list" 하에서 거의 전 서비스산업이 개방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딜러보호체제"로 이루어진 중미지역의 유통장벽이 제거되고 미국의 사적 유통망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미의 민감산업인 금융서비스(Chapter Twelve), 통신(Chapter Thirteen), 전자상거래(Chapter Fourteen) 등은 별도의 장에서 규정되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자회사, 공동회사, 지점의 설치와 각종 영업활동(재보험, 재보험 중개, 해상항공교통보험 등) 등이 자유화된다. 통신 및 보험서비스의 경우 코스타리카의 협상 거부로 CAFTA 체결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코스타리카가 국가독점산업인 同 부문들의 개방을 약속함으로써

CAFTA 서비스산업 개방수준은 한층 제고되었다. 즉 코스타리카는 무선서비스, 개인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등 주요 3대 통신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약속하고, 2011년까지는 보험시장도 완전개방하기로 약속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미국과 중미 국가들은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수단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 환경을 반영하여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적인 대우를 약속하고,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과 관련 정책분야에서의 협력에 동의하였다.

4) 노동 및 환경

CAFTA의 노동권 및 환경 관련 조항은 미국의 「무역촉진법(TPA) 2002」에 설정된 목표를 따르고 있는데, 노동 관련 규정은 종합적인 3자 협력적 접근법(기존 노동법의 효율적인 강화, 기존 노동법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ILO와의 협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국내적 능력 배양)을 따르기로 합의되었다.

한편 환경 관련 조항의 특징은 시민사회 견해수용장치, 국제적인 협력활동 연계, 다자환경협정과 FTA의 상호 지원 강화 등의 규정과 국내법 강화, 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국내법 강화의무 이행, 회원국의 환경보호능력 배양 등이다.

3. 비준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가.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한 미국내 정치적 갈등

노동 및 환경문제를 무역에 연계시켜 FTA와 같은 협정에 포함시킬지의 문제는 이미 극복된 가운데 現 수준에서의 논쟁의 초점은 개발 및 세계화 등과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동 및 환경기준이 어떠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21세기 들어 노동 및 환경기준은 미국 FTA정책에서 일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무역협정에 노동 및 환경기준을 포함할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8년간에 걸친 논쟁이 무역촉진권한(TPA)을 포함한 「2002년 무역법」으로 정착된 결과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와 체결한 FTA에 노동 및 환경기준을 포함시켰는데, 소규모 경제,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등 이 국가들이 지닌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없이 의회의 비준을 통과하였다.

전술한 관점에서 볼 때 CAFTA의 의회 비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중미지역의 열악한 노동 및 환경수준을 감안할 경우 칠레 및 싱가포르 FTA 수준인 노동 및 환경규정도 불구하고 비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집약산업의 개방으로 인

한 미국의 고용 악화 전망은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당에 관계없이 지역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상이한 이해관계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

“무역협상 및 무역정책에 관한 노동자문위원회”(LAC)가 USTR에 제출한 보고서는 CAFTA 비준과정에서의 난항을 이미 예견한 바 있다. LAC 보고서에 따르면, CAFTA는 2002년 무역법에서 의회가 제시한 협상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적 이해 제고에도 실패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노동기준의 경우 향후 참여국들의 핵심적인 노동권¹²⁾을 보호하지 못함은 물론, CAFTA 강화절차에서 정부가 국제 노동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의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을 예로 들어 요르단과 체결한 FTA 노동기준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무역환경정책자문위원회”(TEPAC)의 보고서에서는 일부 위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위원이 CAFTA가 美 의회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위임한 협상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중의 참여 규정과 국무부의 환경협력 부속협정(ECA)을 새로운 특징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사탕수수 과잉생산에 따른 환경파괴,

CAFTA 환경협상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 부족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유보하였다. 한편 CAFTA에 대한 종합평가서라고 할 수 있는 통상정책협상자문위원회(ACTPN)의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와 같은 위원회 대표의 소수의견으로 채택한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두었다.

CAFTA 서명을 전후하여 정계에서는 우려한 바와 같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Charles Rangel(민주당, N. Y.)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선임위원, Sander Levin(민주당, Mich.) 미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Trade Subcommittee) 선임위원 등 5명의 민주당 의원이 2003년 5월 14일 USTR에 보낸 서한에서 CAFTA협상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노동기준이 불충분하다고 비난하고, CAFTA의 노동기준이 노동자들의 좋지 않은 환경에 대한 경제적, 개인적 충격에 대해서 적절히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케리(John Kerry)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도 서명 직후인 5월 28일 성명에서 CAFTA가 노동자 권익과 환경보

12)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경제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170개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노동권: ▼노조결성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폐지, ▼아동노동 폐지, ▼고용 차별.

호에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될 경우 재협상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¹³⁾ 공화당내에서도 CAFTA 비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CAFTA에 대한 정책적 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미 각국을 방문 중인 Richard Shelby 상원의원은 지난 7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비준 준비가 지연되어 2004년 이내 비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¹⁴⁾

나. 협정 비준에 대한 중미사회의 반응

서명 직후부터 중미지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유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CAFTA 비준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중미 각국의 정치권을 비롯한 노조,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의회의 비준 시도에 맞추어 저항운동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서 폭력으로 비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CAFTA 비준에 대한 책임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과 회동하기 위하여 워싱턴을 방문한 중미 가톨릭 주교단은 6월 5일 비서국(SEDAC) 성명을 통해 CAFTA 규정의 25%가 폭력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비준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교단이 제시한 재검토 규정은 지적재산권, 특허권, 식품 및 의약품 제조 일반적 공정 사용, 농업보조금, 노동자 및 환경보호문제 등이다.¹⁵⁾

코스타리카에서는 지난 5월 31일 병원노조, 교사, 전력노조, 사회보장기구, 환경주의자, 등으로 구성된 수천 명의 근로자와 대학생들이 수도 산호세와 10여 개 지방도시에서 국제공항 진입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특히 민영화에 따른 실업등을 우려하면서 CAFTA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통신 및 보험 등 국가 독점산업과 농산물 개방에 반대하였다. 이번 시위는 CAFTA 추진에 대한 최초의 실력행사인데, 전국공공민간근로자협회(ANEP)는 의회가 국가에 부정적인 협정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비준을 강행할 경우 반대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경고하였다.¹⁶⁾

엘살바도르에서는 6월 25일 최대 야당인 파라분도마르띠민족해방전선(FMLN)과 사회단체들이 CAFTA협상과정의 반민주성, 각 부문별 의견수렴 부족, 국가의 사회적 의무 제한기도, 미국과 중미 국가들간의 경제적 불균형

13) Inside US Trade(28 May 2004)

14) AP Spanish Worldstream(6 July 2004)

15) AP Spanish Worldstream(25 June 2004)

16) Reuters-Noticias Latinoamericans(1 June 2004)

미수용, 미국의 농업보조금제도 폐지 거부 등을 이유로 비준거부운동을 개시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비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었는데, 일부 의원이 CAFTA와 같은 FTA 시행법을 의회가 비준하기 이전에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베르헤(Oscar Berge) 과테말라 대통령이 5월 30일 CAFTA 비준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에 반대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CAFTA에 대한 과테말라 국민들의 여론은 찬성, 반대, 중립 등 다양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과테말라 상품의 86%가 이미 GSP, CBI, MFN 등을 통하여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고 있어 CAFTA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CAFTA 발효 즉시 미국제품의 급격한 시장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 혹은 중립입장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중미 국가들처럼 GSP와 CBI 특혜제도의 효력이 2006년과 2008년에 만료될 경우 수출품의 40% 이상이 미국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어서 CAFTA 비준은 국가경제에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4. 향후 전망

미주지역에서 NAFTA에 이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체결된 두 번째 자유무역협정인

CAFTA는 그 시장개방수준이나 내용 측면에서 어느 FTA보다도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통을 비롯한 전체 서비스 시장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고, 미·요르단, 미·싱가포르 및 미·칠레 FTA에서처럼 노동 및 환경규정이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며,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를 협상 과제로 포함시킨 점 등은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무역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CAFTA의 주요 협상결과는 미국과 브라질의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FTAA협상을 우회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AFTA 비준과정에서는 참여국들의 국내 정치·경제적 일정은 물론, 각국의 미진한 협상 목표달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진통이 예정되어 있다. 중미지역에서 비준을 앞두고 발생하고 있는 갈등은 주로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문인 농산물 시장개방, 농업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중미 국가들의 주종 수출품 및 생산품이 농산물이고, 미국의 국내 농업보조 및 수출지원정책이 교역을 왜곡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비준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주로 대선과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앞둔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노동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반발과 정당에 관계없이 지역구 산업

특성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중미 정부들은 코스타리카의 통신 및 보험 등과 같이 CAFTA 취약부문으로¹⁷⁾ 분류되는 부문들로부터의 저항을 감안하여 미국 의회의 CFATA 비준 가능성이 확실시될 때 비준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공동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2004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CAFTA를 비준할

가능성이 높아 비준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CAFTA의 금년 이내 비준과 2005년 1월 1일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체결된 미국·도미니카공화국 FTA를 CAFTA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중미 국가들과 도미니카공화국 사이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비준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ACTPN). 2004. "Report to the President, the Congress and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n the U.S.-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March 12)

AP Spanish Worldstream. 2004 a. "Encuentran difícil que CAFTA sea firmado este año." (July 6)

_____. 2004 b. "Obispos dicen cuarta parte del CAFTA es negativo." (June 25)

CEPAL. 2002. *Informacion Basica del Sector Agropecuario, Subregion Norte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1990-2001. LC/MEX/L.549.

Inside US Trade. 2004. "Kerry Statement on CAFTA." (May 28)

Labor Advisory Committee on Trade Negotiations and Trade Policy(LAC). 2004. "Report to the President, the Congress and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n the U.S.-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March 12)

Reuters-Noticias Latinoamericans. 2004. "Miles marchan en Costa Rica en protesta contra acuerdo con EEUU." (Jun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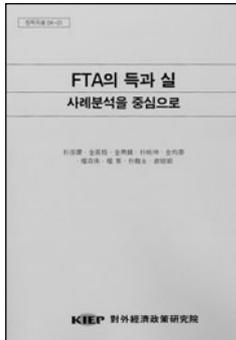
17) ▼전통적 농업부문, ▼전통적인 수입대체산업,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생계농 및 미숙련 노동자, ▼민영화 및 개방대상인 특정 국영기업 노조(Jeffrey J. Schott 2004, p. 258 참고).

Schott, Jeffrey J. ed. 2004.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United Book Press, Inc.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Advisory Committee (TEPAC). 2004. "Advosary Committee Report to the President, the Congress and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n the U.S.-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March 12)

USTR. 2001. Forth Report the Congress on the Operation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www.ustr.gov/reports/2002/cbifinal.pdf.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朴淳讚 外 KIEP 무역투자정책실 FTA 연구팀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 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FTA는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 NAFTA, EU 등 FTA 사례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역내 교역비중은 1993년 각각 27.8% 및 74.6%였으나, 2002년 32.1% 및 78.0%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Mercosur의 경우 경제통합 이전인 90년대 초 FDI 유입은 20억 달러에 불과했

으나,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함에 따라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9년에는 529억 달러에 달하였다. FTA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FTA 체결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함께 수반하는데, 그 예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감소 및 구조조정비용, 계층간 소득불균형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FTA는 개별 국가 전체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어 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은 보호장벽이 높을수록 더 클 것이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면서 비숙련 단순노동의 수요가 감소하여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술수준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시장접근의 제약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력이 약하고 보호장벽이 높은 산업에 대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여 연착륙(soft landing)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FTA의 이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의 수준향상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방안 모색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자원조달문제인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5월 19일 신라호텔에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 전경련 · 머니투데이의 후원 하에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방안 모색(Financing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안충영 KIEP 원장,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 신동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조이제 동북아경제포럼 의장, 이천표 서울대 교수 등을 비롯하여 동북아 관련 금융 전문가, 학계, 업계 등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북아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북아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다. 다음에서는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1세션: 동북아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사회자: 조이제(동북아경제포럼 의장,
미국 하와이대 동서센터 고문)

〈발표 1〉 동북아 인프라 구축과 소요재원 추정: 순이치 히라키(일본 니가타대 교수)

- 동북아 개도국 및 지역(Northeast Asian Development Countries & Areas: NADCA)는 북한, 중국 동북지역, 극동 러시아, 몽고를 의미함.
- 2005~14년간 동북아 지역의 개발비용은 1,6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으로는 매년 160억 달러 정도의 개발자금이 필요함.
- 여기에 소요되는 개발자금(160억 달러)은 동북아 각국(일본, 한국 제외) 자체적으로 10%, 일본, 미국,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자금 40%, 세계은행, ADB 등의 국제개발금융기관에서 20~30%, 민간상업은행, 투자은행 등의 민간금융기관에서 20~30% 등으로 조달될 수 있음.
-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전체 ODA 규모는 약

500억 달러로 점점 감소되고 있는 반면, 개도국에 대한 민간투자(직접 및 포트폴리오 투자와 대부 등)는 ODA의 3배 규모인 1,500억 달러 정도임.

- 따라서 NADCA 역내 국가 및 지역이 개방경제 및 자유무역을 추진할 경우, 민간자본이 유입의 확대될 수 있음. 국제개발금융기관에서도 NADCA 개발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기구들의 자금 지원은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조달에 제한을 받게 마련임.
- 그러므로 NADCA에 대한 자금지원이 예상보다 풍부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발표 2〉 동북아 에너지 인프라 개발: 히사코츠지(일본 ERINA 주임 연구원)

- 동북아 지역에는 4대 에너지발전계획이 있음: 사할린 프로젝트, 중국의 가스프로젝트(West gas to East), 러시아 동부의 가스파이프라인 네트워크, 동부 시베리아의 석유파이프라인 정책
-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Sakhalin Project): 프로젝트 1에서는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이 요구되며, 1995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정부는 최종

적으로 2003년에 전체 프로젝트에 서명을 함. 참여 투자자로는 ExxonMobil, SODECO, ONGC 등이 있음. 프로젝트 2 에서는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이 요구되며 JBIC, EBRD, OPIC 등이 투자하고 있음.

- 중국의 West gas to East 프로젝트(신장 타림→ 상하이):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의 가스공급사업으로 현재 투자자들이 결정되었으며 공식 서명만 남겨둔 상태임.
- 러시아 동부지역 Gas Pipeline Network 구축사업: 2020년까지 약 255억 달러의 투자가 요구됨.
- 동부 시베리아 Oil Pipeline 구축사업: 현재 파이프라인 건설라인에 두 가지 옵션(양가 르스크-대경유전 라인, 바이칼-나호드카 라인)을 가지고 협상 중임.

- 에너지 인프라 개발 사업의 현황 및 특징: 현재 많은 국제기구가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지만, 장기간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됨. 또한 정치적, 지정학적 변수들이 이 지역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발표 3〉 지역개발과 금융지원: 성운기 (AIDEC 인프라융용사 CEO, 전 World

Bank IFC 구조조정 본부장)

- 그동안 동북아시아 북부에서 다자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 북한이 ADB·세계은행·IFC·MIGA와 같은 다자간 금융기관의 회원이 아니라는 점, ▲ 다자간 기관들의 재정 및 인적 자원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점, ▲ 지역 시장, 지역별 정치/규제에 관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 기관들의 운영기준이 매우 높다는 점, ▲ 다자간의 촉매역할 없이는 하위 지역(sub-regional)에서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이 있음.
- 새로운 기관의 형태로는 IFC와 MIGA가 IBRD나 ADB보다 더 효과적이며, 이 기관은 ▲ 인프라사업 개발, ▲ 민간부문의 투자참여에 연계하여 주식발행과 장기대부로 자금조달, ▲ 정치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 제공, ▲ 민간 개발업자와 기술파트너, 자금조달기관, 투자자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등의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발표 4〉 동북아 개발사업의 평가: UNDP의 경험: 초그차이칸 고편(UNDP 두만강개발 계획 사무국 부주임)

- 두만강 지역 개발프로그램(TRADP)은 5개국(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한국)이 참가하는 지역프로그램으로, UNDP가 1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다자간 메커니즘임.
- TRADP의 성과로는 ▲ 두만강 지역의 개방, ▲ 법/제도적 체계에 대한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생성, ▲ 개발 우선순위의 규명, ▲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의 10억 달러 무역 달성, ▲ FDI 15억 달러 돌파,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관광산업 발전, ▲ 교통수송경로의 부활, ▲ 환경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동북아시아 지역의 과제로서는 ▲ 각국의 다양한 발전수준과 상이한 성장잠재력, ▲ 경제협력과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상이한 법제적 체계, ▲ 지역내 특정 국가들의 낙후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수요 발생, ▲ 생물 멸종, 사막화, 공해 등 초국경적인 환경 문제 대두, ▲ 여러 안보 및 정치적 난제, ▲ 미결된 영토 분쟁 존재, ▲ 세계 강대국들과 관련된 복잡한 세력균형 문제, ▲ 비효율적인 높은 문화의 다양성 등이 지적되고 있음.

〈제1세션 토론내용〉

- 동북아시아 지역은 정치적 리더십이 많이 요구되는데, 한·중·일이 3자 대표 회담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각국의 인센티브를 고려함과 동시에 각국간 효과적인 조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만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모든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야 함. 또한 동북아시아 경제발전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각국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타모츠 시노즈카, 일본 NIRA 주임연구원).
- 동북아시아 지역은 먼저 다자개발은행을 설립하기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은 상호 협력적인 통합체제 구축에 있음. 즉 국가 및 기업간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남아 있는 혹은 잠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것임. 따라서 이 지역에 개발은행을 설립하기 전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결해야 함.
- 러시아는 대체로 지금까지 유럽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치중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아시아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려 함. 즉 항공우주산업, 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등을 통해 러시아는 아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콘스탄틴 로스라코프, 러시아 개발은행 국제부장).

- 2003년 9월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정책에 버금가는 “東北三省老工業基地振興” 계획을 발표하고, 동 계획과 관련한 10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610億元(약 73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러나 동북3성은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써 여타 중국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수송,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 수준을 갖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인프라 개발이 동 프로젝트의 중점과제는 아님. 나아가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의 동북3성을 북한, 몽고, 극동 러시아와 함께 비교해서는 곤란함.
- 동북아 역내간에는 상이한 점도 많고,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점이 있으므로 큰 청사진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역내 지역협력과 인프라 개선에 각국 중앙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용딩 위, 중국 세계경제정책연구소 소장).
- 동북아 개발협력에 관련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분명하게 알아야 할 점은 북한이 동북아시아 개발과 통합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임.

- 한편 현재 지구상에는 많은 국제기구가 있으며 충분히 이 지역 개발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봄. 오히려 새로운 국제기구가 생기면 자금경쟁이 심화되어 국제적인 경쟁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윌리엄 뉴컴, 미국 국무성 선임 이코노미스트).

- ADB는 설립 당시 많은 외적·내적 어려움을 지니고 시작했지만, 결국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ADB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EU 역시 같은 경험을 갖고 있음.
- World Bank의 부총재도 동북아시아에는 독자적인 ‘동북아시아개발은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음. 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하면서 경제구조를 비롯해 모든 것이 변했고, 이런 의지의 반영이 첫 번째는 ADB 설립에 있었으며 현재는 NEADB 설립에 있다고 봄 (조이제, 동북아경제포럼 의장/ 미국 하와이대 동서센터 고문).

제2세션: 동북아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방안
(Financing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사회자: 이천표(서울대 교수)

〈발표 5〉 동북아개발은행- 지역개발을 위한

대안: 스탠리 캐츠(전 ADB 부총재, 미국 하와이대 동북아경제포럼 연구위원)

- 동북아 역내 인프라는 현재 불충분한 상태로 확대 및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치가 불가피하므로,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을 제안함.
- 역내외 국가들이 250억~400억 달러 규모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인구 및 GDP 등을 기준으로 40~50개국의 주주에게 지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자본금으로는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과 최고자본금(callable capital)을 각각 25%와 75%로 배정함.
- 비교적 소규모의 납입자본금(paid-in)으로도 큰 해외자본을 역내로 끌어들이 동북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임. NEADB를 통한 조달규모는 연간 10억~20억 달러에 달하며, IBRD와 ADB의 자본 운영과 더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임.

〈발표 6〉 인프라 건설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동북아기금의 신설: 토니 미셸(코리아 어소시에이츠 경영자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 IBRD, ADB, EBRD 등의 개발은행은 1940~50년대 정부 주도형 모델임.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민간부문의 자본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투자기회를 찾고 있음.

-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공적 장치(public model)는 납세자들이 300억 달러의 리스크를 부담하나, 이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정부의 보증하에서 민간펀드의 컨소시엄 모델(public-private model)에서는 납세자들이 20억 달러 정도만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민간부문이 400억 달러의 자본을 지원하면서 리스크와 비용을 관리·조정할 수 있음.

〈발표 7〉 동북아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문우식(서울대 교수), 윤덕룡(KIEP 연구위원)

- NEADB의 설립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이며, 그 대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민간 인프라 펀드 설립과 같은 민간자본의 이니셔티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민간 및 공공부문의 합작법인 형태의 동북아투자공사(NEAIC) 설립은 한국을 금융 허브로 성장시키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정부의 기본전략에 잘 부합할 것임. 또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북한 등의 지역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임.

〈제2세션 토론내용〉

- 지난 2002년 Toyko Foundation에서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FTA와 같은 양자간·다자간 협정에 대한 노력 부족, 동북아 지역의 정체성(identity)과 리더십 부재, 역내 상호간 확산의 부족, 북한 핵문제와 같은 외부적 장애요인이라는 네 가지로 정리함.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전략과 Action 프로그램이 긴요한바, 이는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 단계는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2004년까지 합의 형성(consensus-building)을 이룩하는 것임. 두 번째 단계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임. 이때는 북한을 포함한 6개국 모두 참여할 것임. 마지막 단계로, 실현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며 Action Plan이 가동되는 단계임.
 -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 기구의 설치 여부는 중국, 일본, 한국의 리더십 여하에 달려 있음(조안 추, 일본 INAS 원장).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제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음. 첫째, 한·중·일 3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둘째, 한·중·일 3국의 수출입은행간에 긴밀한 상호 협조가 요구됨. 이는 기능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임. 셋째, 특별기금(Special Fund)을 조성해야 함. 넷째, 저개발국가들은 서둘러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 민간투자자들을 유인해야 함(이재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
 - 동북아의 지역개발에서 가장 걸림돌은 분명 북한임. 북한이 어떤 상태로 개발계획에 동의하는지 너무도 분명하지 않음. 개발기금과 동북아개발은행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봄.
 -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통합은 매우 조심스럽게 조정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대북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분명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임(커트 텅,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담당 공사).
 - 민간자본은 동북아 인프라 개발을 위해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를 유도할 것으로 봄. 민간투자는 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불안요소를 민간차원으로 이양시키는 데 매우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해 낼 수 있음.
 - 따라서 1993년 호주의 골든브리지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정부의 강력한 보호정책 하에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동북아 지역도 민간투자가 안정화될 때까지 각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봄 (닉 반 켈더, 매쿼리신한 인프라스트럭처 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전 세계적으로 지역발전은행은 약 22~28 개 정도가 있음. 이 개발은행들의 역할은 이 지역의 사정을 알고, 이 지역의 개발을 담당하는 것임.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조 이제, 동북아경제포럼 의장/미국 하와이대 동서센터 고문).
- 지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NEADB 설립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ADB는 Mr. Katz가 언급한 것처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유도할 수 있음(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ADB의 설립 당시를 회고해 보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때 무수한 마찰과 복잡한 문제가 산적하게 됨을 알 수 있음.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통한 승수효과의 향유는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스탠리 케츠, 전 ADB 부총재, 미국 하와이대 동북아경제포럼 연구위원).
- 북한의 경우를 볼 때, 북한의 법적·제도적 장치 문제를 거론한다면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민간기업들이 들어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을 쌓아가면서(track record) 점차적으로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고 봄(토니 미셸, 코리아 어소시에이츠 경영자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오늘 동북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 가운데 선택적으로 가장 최상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것임. 한편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잃고 싶어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동북아개발은행이 설립되면 지원자금에 대한 비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문우식, 서울대 교수).

제3세션: 종합토론(General Discussion)

사회자: 안충영(KIEP 원장)

- 동북아시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오늘 세미나 중 많이 있었는데, 특히 중국대륙 중 어디를 동북아 지역이라고 칭할지는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 동북3성(헤이룽성, 지린성, 랴오닝성, 요녕성)이 동북아 지역에 포함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베이징, 상하이, 심지어 대만 사람들도 자신의 지역이 동북아라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경계를 규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동북아 개발재원에 있어서 공적자금이나, 민간자본이나에 대한 논의에서는 둘다 형성되어야 한다고 봄. 북한의 경우, 에너지 기반산업시설 건설을 위해선 ODA나 새로운 국제기구들이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봄(히사코 츠지, 일본 ERINA 주임 연구원).
- 현재 중국정부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식적인 찬반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 반면 텐진과 같은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찬성의 뜻을 계속 표명하고 있음(조이제, 동북아경제포럼 의장/미국 하와이대 동서센터 고문).
- 동북아개발은행은 중국, 일본,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봄. 또한 현재 동북아 지역 구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역은 국가단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님. 동북아는 지역(region)단위이며 경제협력체, 즉 경제공동체의 의미가 더 큼.
- 동북아개발은행은 다른 개발은행들과는 전형적인 차이가 있음. 즉 다른 개발은행들은 빈곤, 가난, 여성차별, 교육문제 등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지만 동북아개발은행은 인프라 건설이라는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스탠리 캐츠, 전 ADB 부총재, 미국 하와이대 동북아경제포럼 연구위원).
- 동북아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조성이 절대적이며, 이를 위해선 금융중심도시(Financial center)가 필요함. 서울은 중국 텐진이나 일본 니가타보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로 인해 금융국제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봄.
- 금융국제도시에는 NEADB나 다른 국제기구들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금융중심도시의 건립을 위해 서울은 국제적 수준으로 많이 변해야 함. 다수의 규제와 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국제적 은행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매우 신경써야 함(토니 미셀, 코리아 어소시에이츠 경영자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동북아시아의 통합 논의는 분명히 국가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또한 먼저 통합의 목표(Target)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함.

- 개발은행을 설립하기 전에 정부간 조직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을 설치해야 할 것임. 이 기구는 각국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게 되며, 동북아에 필요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그 다음 단계로 이 기구는 자금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정부 자금으로 할 것인지, 정부 및 민간의 혼합 형태로 할 것인지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러시아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며, 막대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콘스탄틴 로스랴코프, 러시아 개발은행 국제부장).
- 동북아개발은행의 자금 출처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의 양쪽 모두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기업은 항상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루어 역내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봄.
- 동북아개발은행 모델은 IFC 형태를 벤치마킹하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성운기, AIDEC 인프라운용사 CEO, 전 World Bank IFC 구조조정 본부장).
-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제개발은행의 설립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길 원하고 있으나, 현재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없음. 또한 북한의 동북아개발은행 참여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금융기관들이 먼저 북한경제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봄. 북한은 IMF와 같은 기구에 먼저 가입해야 함.
-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발은행들이 간과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임. 북한이 얼마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러시아의 경우도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상환 이행을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윌리엄 뉴컴, 미국 국무성 선임 이코노미스트).
-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왜 인프라 시장을 자유화하지 않는지 궁금함. 이 시장을 개방한다면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인프라 개발에 민간자본 투자가 부족한 것은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보안장치가 허술하거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문우식, 서울대 교수).
-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제개발은행의 설립에

[정리: 李炯根 KIEP 국제거시금융실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은 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 지난 5월 25일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한·중동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차원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동지역의 언론인, 학자, 외교관들을 두루 초청하여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Age of Globalization(세계화 시대 한·중동 관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하는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정치 세션: 이라크 재건과 국제사회의 역할

-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동기는 이라크인을 위한 평화와 재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결속력 강화,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 한·미 관계의 특수성이라고 설명하였음.
- 한국군의 파병은 이라크내 분쟁과 석유생산 및 공급 불안 해소에 기여하여 걸프 지역과 중동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임.
- 한국은 전투병이 아닌 의료·기술병력을 중심으로 이라크에 인도주의적 원조, 지역 치안병력 지원, 일자리 창출, 구호조물자와 교육장비 지원 등은 물론 2007년까지 2억 6천만 달러를 제공할 것임.
- 알파들리(Riyadh A. Al-Fadhly) 이라크 외무부 국장은 이라크 재건에서 제1과제를 정권이양문제와 치안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하고, 안정적인 재건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법질서를 완전히 확립할 때까지는 다국적인 군사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이라크가 성공적으로 재건되면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 줄 것

이고, 특히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상호 이해와 원조의 성공적 전례로 남을 것임.

-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국제사회 질서 와해, 구금된 이라크인에 대한 가혹행위, 이라크내 대량살상무기 미발견 등을 통해서 볼 때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주둔은 정당성을 찾기 어려움.
- 이라크의 평화적 정권이양과 관련하여 UN의 역할 강화와 국제병력 통제, 미국의 이라크 주둔기한 엄수, 유럽의 지지 획득 노력 필요, 이라크내 소수민족 존중과 민족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
- 이라크의 재건사업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 아랍언론에 한국의 기술·의료지원 동기 홍보, UN과 세계은행을 통한 지원국간 의견조율, 인력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한국의 도움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2. 경제 세션: 세계화와 한·중동 경제관계

- 김박수 본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화에 대한 한국과 중동의 경험을 상호 비교하고, 향후 한국과 중동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음.

- 한국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상품교역의 세계화는 크게 진전되었지만 국제투자와 노동력 이동 측면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고, 세계화과정에서 자본시장 불안정, 시장개방을 둘러싼 계층간 갈등, 외국인근로자문제 등에 직면하였음.
- 중동 국가들은 1970년대에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석유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정부의 경제개입이 문제가 되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
- 세계화에 대응한 중동의 경제개혁 노력은 물가,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생산성 향상과 성장 동력 구축에서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음.
- 한·중동간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 현지화 노력 확대, 한·중동간 IT분야 협력 확대, 경제성장 경험의 공유를 통한 상호 학습, 국제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제안하였음.
- 왈리(Khaled Wali) 아랍리그 서비스무역 담당관은 중동의 서비스무역 동향과 서비스부문에서의 한·중동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
- 2001년 세계 서비스 교역량은 1조 4,60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특히 기술분야의 국제적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아랍권의 서비스 교역량은 세계 전체의 14%를 차지하며 GDP 대비 서비스 교역량의 비율은 20% 수준으로 아랍권에서는 서비스의 역내 교역비중이 상품의 역내 교역비중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임.
- 서비스부문에서의 한국과 아랍권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석유부문 서비스의 협력 가능성 검토, 관광 및 건설분야에서 한국기업의 합작투자 가능성 검토, 무역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서비스분야 진출 가능성 확대 등이 있음.
-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서방 주도의 세계화는 그들의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며 세계화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아시아와 중동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
- 세계화가 자국경제에 미칠 타격을 감안하여 개방의 속도 조절에 유념해야 하며 자유무역에 대비한 전략적인 투자와 대비책을 세워 양자간 이익을 꾀해야 함.
- 중동의 과도한 정부보조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경쟁·노동윤리 부족으로 경제개혁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중동 국가들은 동북아로의 경제적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걸프지역

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강화해야 함.

- 한국은 EU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EU시장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사회문화 세션: 한·중동 문화의 상호이해

- 이희수 한양대 교수는 한국과 중동간 교류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향후 두 지역간 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슬람의 출현 이후, 한·중동간의 문화적 교류는 고대 중국과 중동간에 해상무역을 통해 매우 활발하였으나 동아시아에서 이슬람 역사 연구는 부진한 실정임.
 - 9.11 사건 이후 한국에서 고조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이슬람교와 중동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함.
 - 한·중동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중동 국가에 한국 문화센터 개설 및 한국 주간 축제 개최, 중동 국가에 한국문화 웹사이트 구축, 한국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을 제시하였음.
 - 알칸지(Rajai Al-Khanji) 요르단대학 교수는 요르단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학 연구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한·중동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교육 프로그램과 기구 설립을 통해 문화적,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의 경제적 성과와 근면성, 경제발전전략 등에 매료된 아랍학계는 한국학 연구를 확대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요르단대학에서 아랍과 아시아의 관계를 조명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음.
 - 요르단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중동 내 한국학 연구의 거점 형성, 한·아랍관계 연구, 한국 관련 연구 및 출판 사업, 한국 관련 학술행사 지원, 한국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양 지역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학술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 공유는 물론 불평등한 정보습득의 제약을 없앨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함.
 - 사적 연구기관들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과 중동 학자간 공동 연구 및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시아와 이슬람세계간의 편견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 등이 논의되었음.

[정리: 金惠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인턴
bong1321@hotmail.com]

ChinaInfoBank(中國資訊行)

1. 개요

중국 서지 정보자원의 대부분은 1995년부터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 ChinaInfoBank(中國資訊行)는 인터넷상에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중문 정보제공 회사를 설립하였다. ChinaInfoBank(中國資訊行)는 초기에 중국

에 관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였지만 널리 정보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 범위를 넓혀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비즈니스 경제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확보됨에 따라 전문 인력을 보완하여 감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분야의 다양한 정보 이외에도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정보서비스를 포함, 완전한 정보

〈표 1〉 분야별 주요 내용

분 야	내 용
의료보건	암 예방, 쌍생아 건강, 전문의와 Q&A, 여성의학, 성지식과 성병 방지, 노년건강, 심혈관계 질환 방지, 중의학 지식에 관한 Q&A 등
교육	언어와 성어사전, 유학정보, 영중·중영사전, 백과사전, 중국 및 국외대학정보, 아동과 청소년교육 등
비즈니스	광고검색, 구직정보, 최신금융정보, 최신 주가정보, 통계 데이터베이스 검색, 전시회정보, 보험·사회보장제도 Q&A, 주식&상장회사 정보검색, 부동산, 투자금융지식, 기업관리 백과, 기업상품 정보검색, 중국상표 검색, 공업 및 농업생산자료 가격정보, 세무정보 등
시사정보	지난기사 정보검색, 정기간행물검색, 최신 뉴스, 전화번호부 일람, 군사소식, 인물자료검색 및 인사변동 등
여행	비자, 이민, 여행정보, 종교지식, 지도정보, 지역정보, 전 세계 호텔정보 검색, 전 세계 항공정보검색, 교통정보, 외국문화풍속정보, 중국소수민족풍속습관 등
가정생활	영양정보, 애정과 혼인, 맛집소식, 가정상식, 가구수리 및 장식, 식물영양성분조사, 풍수지리, 미용유행, 자동차수리 및 보존, 정신건강학 등
과학기술	컴퓨터백과, 농업과학지식, 최신 컴퓨터바이러스 정보, 최신 과학기술정보, 소프트웨어세계, 특허지식과 특허검색, 상품지식, 가전상식 등
법률서비스	최신 정보 법규 규정, 상업법률고문, 가정법률고문, 정부번호사 선임순서, 중국 법률 법규검색
문화·예술 스포츠·오락	애완동물, TV정보, 전자오락, 바둑, 최신 도서 및 도서검색, 유머, 음악과 풍류, 골동품, 중국역사와 사전, 중국고대시사 등

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문분야 데이터베이스인 ChinaInfoBank(中國資訊行)를 정보제공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정보제공분야 및 특징

인터넷의 기술의 향상으로 신속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hinaInfoBank(中國資訊行)는 중문판을 중심으로 다음 9개의 전문분야 콘텐츠를 제공한다. 분야별 콘텐츠 내용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사, 정치, 군사, 사회문화, 스포츠 및 오락과 재무경제동향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정보자원은 2003년 현재 100억 자 분량의 데이터베이스와 1000만 편의 분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실시간으로 2000만 자의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다. ChinaInfoBank(中國資訊行)는 데이터베이스화된 모든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의 검색엔진을 통하여 업종별로 쉽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매일 중국내, 1천여 개와 국외 수십 개의 통신매체, 언론매체, 인터넷 매체와 더불어 국내외 국가기관 등의 신뢰도가 높은 업종별 정보제공기관을 총망라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공정보들은 각 분야별 이용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194개 업종의 통계 데이터와 전문(全文), 산업분야별 정보로 정보

제공을 의뢰한 의뢰사의 정보는 물론 경쟁사의 현황과 비즈니스 정보까지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ChinaInfoBank(中國資訊行)는 국내외 국제적인 기업과 전문기관 위주의 1천여 개 기관에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China InfoBank(中國資訊行)는 점차 많은 기업에 이용되고 있다. 이용자들간에 정보공유와 상호보완의 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정보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그 중 정부와 그 산하기관, 학술단체, 중국 및 국제학술지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3. 이용방법 및 요금체계

ChinaInfoBank(中國資訊行)는 웹사이트(<http://www.chinainfobank.com>)로 접속할 수 있다.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방식으로 상세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로그인하여야 한다. 정보이용료는 연간 1만 위안(1,288달러)이며 데이터베이스별 별도 구독은 불가능하다. 구독방법은 국내의 경우 국내에 대행기관 등이 없으므로 China InfoBank에 직접 연락하여 구독신청을 하여야 한다(주소: ChinaInfoBank No. 21, Andeli North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11. 전화: (8610)

〈그림 1〉 ChinalInfoBank(中國資訊行) 메인화면



〈그림 2〉 데이터베이스 검색화면



64264404-09, FAX: (8610) 64261720, 전자우편: bdbj@chinainfobank.com).

본 사이트의 정보검색은 브라우징과 키워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브라우징 검색으로는 <그림 1>과 같이 16개의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기타 관련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메뉴로 접근하여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 검색으로는 <그림 2>의 검색화면에서와 같이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제별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며, 주요 핵심 주제별 최신정보 위주의 브라우징도 가능하다(표 2 참고).

4. 평가

ChinaInfoBank(中國資訊行)는 중국 학문의 전 분야 정보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콘텐츠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중국 정보원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그 장점으로서는 첫째, 중국 자체의 정보자원으로 오리지널 정보를 사용하고 있어서 신뢰성이 높다는 점, 둘째, 접근하기 어려운 중국의 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셋째, 특히 업종별,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별, 정보원별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표 2>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명칭	문서 수(단위: 건)
1. 중국경제신문데이터베이스(中國經濟新聞庫)	2,376,210
2. 중국비즈니스리포트데이터베이스(中國商業報告庫)	159,982
3. 중국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中國法律法規庫)	111,667
4. 중국통계데이터베이스(中國統計數據庫)	201,155
5. 중문미디어데이터베이스(1)(中文媒體庫)	10,187,223
6. 중문미디어데이터베이스(2)(中文媒體庫)	5,254,947
7. 중국상장사데이터베이스(中國上市公司文獻庫)	141,320
8. 홍콩상장사데이터베이스(중문)(香港上市公司資料庫)	10,432
9. 중국의료건강데이터베이스(中國醫療健康庫)	20,228
10. INFOBANK월드비즈니스데이터베이스(環球商訊庫)	284,191
11. English Publications	193,426
12. 중국기업상품데이터베이스(中國企業產品庫)	294,182
13. 중국인물데이터베이스(中國人物庫)	17,552
14. 중국중앙 및 지방정보기구데이터베이스(中國中央及地方政府機構庫)	164
15. 중국건설분야프로젝트데이터베이스(中國建設項目數據庫)	7,980
16. 명사해석데이터베이스(名詞解釋庫)	1,550

점, 넷째, 중국의 각 성별 통계 등도 시계열로 검색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이러한 장점에 반하여 단점으로는 첫째, 16종의 데이터베이스 중 한 가지만 영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영어권 연구자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중문으로만 제공되고 기사 또한 중국 중심의 분석을 주로 담고 있어 정보 자체가 중화권의 시각으로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셋째, 주요 데이터베이스별로 브라우징할 수 있는 콘텐츠 게시판이

없이 검색기능만을 갖추고 있어, 그 분야의 전반적인 이슈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충분하지 않은 점, 넷째, 기타 콘텐츠들은 다른 신문사나 정부기관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시켜 놓은 자료들로 가격 대비 효율성이 낮고, 콘텐츠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 등이다.

【鄭다송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dschong@kiep.go.kr】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구 분		2003~04년						전월대비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금	단 기	미국	1,1300	1,1200	1,1100	1,1800	1,3150	1,6100	0.2950	0.4938
		유로	2,0929	2,0484	1,9600	2,0716	2,0874	2,1200	0.0326	-0.0227
		일본	0.0525	0.0513	0.0488	0.0459	0.0488	0.0525	0.0038	-0.0038
		홍콩	0.09	0.11	0.10	0.245	0.345	0.455	0.11	-0.61
		한국	4.19	4.00	3.90	3.90	3.89	3.93	0.04	-0.365
리	장 기	미국	4,132	3,971	3,835	4,505	4,647	4,581	-0.066	1.068
		독일	4,242	4,044	3,918	4,191	4,333	4,319	-0.014	0.519
		일본	1,322	1,235	1,450	1,540	1,529	1,786	0.257	0.94
		중국	55	55	62	61	59	72	13	20
		한국	82	85	86	90	88	82	-6	-4
환 율	일본 엔/달러		105.68	109.00	103.9	110.24	109.1	108.9	-0.2	-9.3
	달러/유로		1,2462	1,2480	1,2294	1,1976	1,2189	1,2169	-0.2	6.0
	한국 원/달러		1173.7	1176.2	1146.6	1173.3	1160.1	1155.5	-0.4	-3.1
주 가	미 국	Dow J.	10488.1	10583.9	10357.7	10225.6	10188.5	10435.5	2.4	16.1
		NASDAQ	2066.15	2029.82	1994.22	1920.15	1986.74	2047.79	3.1	26.2
	독일(DAX)		4058.60	4018.16	3856.7	3985.21	3921.41	4052.73	3.3	25.8
	일본(NIKKEI)		10783.61	11041.92	11715.39	11761.79	11236.37	11858.87	5.5	30.6
	홍콩(항셍)		13289.37	13907.03	12681.67	11942.96	12198.24	12285.75	0.7	28.3
	싱가포르(ST)		1848.36	1888.63	1858.92	1842.03	1788.66	1838.0	2.8	26.9
	말레이시아		818.94	879.24	901.85	838.21	810.67	819.86	1.1	18.5
한 국	종합	848.50	883.42	880.50	862.84	803.84	785.79	-2.2	17.3	
	코스닥	441.45	428.68	434.16	453.47	400.92	385.18	-3.9	-22.6	

주: 각 데이터는 월말 기준임.

1) 미국·유로(독일)·일본의 단기금리는 3개월 Libor 금리, 장기금리는 각각 10년물 국제 수익률임.

2) 홍콩은 90일 은행간 예금금리이며, 중국은 국제 10년물 가산금리(basis point)임.

3) 한국의 단기금리는 90일 CD 이자율이며, 장기금리는 외평채 10년물 가산금리(basis point)임.

자료: Bloomberg

[담당: 이형근]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최근 유가 동향 (5~6월)

(단위: 달러/배럴)

	WTI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전주대비 (브렌트유 기준)	주요 사건
5. 1주	39.24	36.74	33.57	2.20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및 테러 확산
5. 2주	40.42	38.15	34.51	1.41	OPEC의 잉여생산 능력에 대한 의구심 대두
5. 3주	40.84	38.60	35.52	0.45	중동의 정정불안, 미국의 휘발유 공급부족 우려
5. 4주	40.60	37.90	34.96	-0.70	OPEC의 생산쿼터 확대 가능성 고조
6. 1주	39.97	37.29	34.96	-0.61	OPEC의 생산쿼터 상향조정
6. 2주	30.38	35.27	33.57	-2.02	OPEC회원국의 증산발표, 미국의 재고예상
6. 3주	37.82	34.90	33.59	-0.37	OPEC의 실질증산, 미국의 석유재고 증가
6. 4주	37.73	34.64	33.49	-0.26	이라크 송유관 복구로 석유수출 정상화
6. 5주	37.21	33.86	32.48	-0.78	이라크 정권이양 후 치안상황 개선 기대감
5월 평균	38.25	37.85	34.07	7월 전망:	원유시장 내 투기적 요소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이라크의 정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테러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이 국제유가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6월 평균	36.62	35.19	33.62	원유시장 내 투기적 요소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이라크의 정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테러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이 국제유가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전월 대비	-1.63	-2.66	-0.45	원유시장 내 투기적 요소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이라크의 정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테러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이 국제유가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증가율(%)	-4.26	-7.03	-1.32		

주: 주 평균 유가로서 현물가 기준. 전월대비는 4월 대비 5월 증가분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최근 상품시장 동향 (5~6월)

	로이터지수	동	알루미늄	옥수수	소맥	대두	전주대비 (로이터)	주요 사건
5. 7	1704.80	2692.00	1634.30	307.00	393.50	1050.50	3.24	미국의 대두 수확량 감소 우려
5. 14	1677.99	2698.00	1608.50	286.50	354.00	969.00	-26.81	경작지 해갈 및 곡물 수확량 증가
5. 21	1661.49	2744.00	1633.50	290.00	368.30	872.50	-16.50	중국의 수입감소, 기상호조로 대두가 하락
5. 28	1690.45	2832.80	1679.80	304.00	362.00	814.00	28.96	중국의 동, 알루미늄 수입 증가
6. 4	1678.36	2748.00	1646.30	308.30	370.00	838.50	-12.09	미국과 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6. 11	1671.27	2600.80	1629.00	285.80	350.50	847.00	-7.09	USDA의 옥수수 재고 예상치 상향
6. 18	1626.04	2647.50	1715.50	274.50	352.80	872.00	-45.23	투기자금 매도로 원면가 하락
6. 25	1605.97	2705.50	1722.80	276.30	341.30	920.50	-20.07	이집트의 미국산 소맥수입 계획 철회
7. 2	1588.40	2732.50	1709.80	255.25	335.00	939.50	-17.57	옥수수의 경작면적 및 재고 증가
5월 평균	1656.09	2711.23	1664.39	296.88	358.60	902.61	7월 전망:	중국의 비철금속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특히 동과 알루미늄은 재고 감소로 월말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6월 평균	1634.01	2686.86	1684.68	280.03	349.92	883.50	중국의 비철금속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특히 동과 알루미늄은 재고 감소로 월말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월대비	-22.08	-24.43	20.29	-16.85	-8.68	-19.11	중국의 비철금속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특히 동과 알루미늄은 재고 감소로 월말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증가율(%)	-1.33	-0.90	1.22	-5.68	-2.42	-2.12		

주: 단위는 로이터상품지수(1931.9.18=100), 동(달러/톤), 알루미늄(달러/톤), 옥수수(센트/부셸), 소맥(센트/부셸), 대두(센트/부셸)

자료: Financial Times, LME, CBT

【담당: 김혜자】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표 1〉 東北亞

구 분		2001	2002	2003	2003			200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질 GDP 증가율 (%)	한 국	3.0	6.3	3.1	←	3.9	→	←	5.3	→			
	중 국	7.3	8.0	9.1	←	9.9	→	←	9.7	→			
	일 본	-1.2	1.1	3.2	←	1.6	→	←	1.4	→			
	대 만	-2.2	3.5	3.2	←	5.2	→	←	6.3	→			
	홍 콩	-1.4	-0.8	3.2	←	5.0	→	←	6.8	→			
공업 생산 증가율 (%)	한 국 ¹⁾	0.2	8.2	5.2	8.1	5.3	11.4	5.2	17.5	12.0	11.7	14.1	
	중 국	8.9	12.6	17.0	17.2	17.9	18.1	7.2	23.2	19.4	19.1	17.5	
	일 본 ²⁾	-9.1	2.8	3.4	3.9	2.8	5.8	5.3	6.7	8.3	8.7	4.2	
	대 만	-7.8	7.8	7.2	11.1	9.7	17.0	1.0	30.0	15.9	13.5	16.6	
	홍 콩 ³⁾	-4.4	-9.8	-9.2	←	-6.1	→	←	1.8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한 국	4.1	2.7	3.6	3.7	3.4	3.4	3.4	3.3	3.1	3.3	3.3	
	중 국	0.7	-0.8	1.2	1.8	3.0	3.2	3.2	2.1	3.0	3.8	4.4	
	일 본	-0.8	-0.8	-0.2	0.1	-0.1	0.0	-0.1	0.0	-0.1	-0.2	-0.3	
	대 만	0.0	-0.2	-0.3	-0.1	-0.5	-0.1	0.0	0.7	0.9	0.9	0.9	
	홍 콩	-1.6	-3.1	-2.6	-2.7	-2.4	-1.9	-1.5	-2.0	-2.1	-1.5	-0.9	
수출 (십억 달러)	한 국	150.4	162.5	194.3	156.1	174.6	194.3	19.1	38.5	59.8	80.9	101.7	
	중 국	266.2	325.6	438.4	348.6	390.4	438.4	35.7	69.9	115.7	162.9	207.7	
	일 본	388.8	416.5	471.6	384.1	425.7	471.6	40.1	84.8	134.9	182.5	222.5	
	대 만	122.9	130.6	144.2	116.4	130.2	144.2	11.8	25.1	39.8	53.9	69.5	
	홍 콩 ⁴⁾	1,481	1,561	1,742	1,434	1,588	1,745	135	270	433	593	758	
수입 (십억 달러)	한 국	141.1	152.1	178.8	145.3	161.1	177.8	16.1	33.5	52.6	71.4	89.3	
	중 국	243.6	295.2	412.8	333.9	370.8	412.8	35.7	77.8	124.1	173.5	216.3	
	일 본	331.9	337.2	382.6	314.5	347.1	382.6	35.4	67.0	106.8	144.3	178.0	
	대 만	107.2	112.5	127.3	101.7	114.1	127.3	10.6	23.7	37.8	50.9	65.4	
	홍 콩 ⁴⁾	1,568	1,619	1,806	1,480	1,642	1,810	134	289	467	643	818	
경상 수지 (십억 달러)	한 국	8.0	5.39	12.32	7.32	10.27	12.32	2.34	5.23	6.15	7.29	11.05	
	중 국	17.4	35.4										
	일 본	95.6	113.1	135.7	110.9	124.6	135.7	9.9	30.1	46.9	61.7		
	대 만	17.9	25.7	29.2	←	29.2	→	←	5.8	→			
	홍 콩 ⁴⁾	77.5	98.2	125.7	←	125.7	→	←	15.2	→			
환 율 (자국 화폐/ US\$)	한 국	1,290	1,200	1,198	1,177	1,203	1,198	1,174	1,175	1,147	1,168	1,166	
	중 국	8.28	8.28	8.28	8.28	8.28	8.28	8.28	8.28	8.28	8.28	8.28	
	일 본	124.9	122.0	116.5	109.6	109.2	107.9	106.5	106.6	108.6	107.3	112.4	
	대 만	34.69	34.75	33.98	33.98	34.21	33.98	33.39	33.37	33.02	33.4	33.4	
	홍 콩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주: 1) 제조업생산지수증가율, 2) 광공업생산증가율, 3) 제조업생산지수증가율, 4) 홍콩달러 기준

【담당: 한국 · 중국 · 홍콩 · 대만(임홍수), 일본(김은지)】

〈표 2〉 東南亞

구 분		2001	2002	2003	2004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질GDP 증가율 (%)	인도네시아	3.3	3.5	4.1					
	태국	1.0	4.9	6.7		6.5			
	말레이시아	-0.4	4.0	5.2	←	7.6	→		
	필리핀	3.4	4.6	4.5	←	6.4	→		
	싱가포르	-1.9	2.2	1.1	←	7.5	→		
소비자 물가상승률 (%)	인도네시아	11.4	11.9	5.1	4.8	4.6	4.6	4.7	2.4
	태국	1.8	0.7	1.6	1.2	2.2	2.3	2.5	
	말레이시아	2.7	1.8	1.2	1.0	0.9	1.0	1.0	
	필리핀	6.1	3.1	3.1	3.4	3.4	3.8	4.1	
	싱가포르	1.0	-0.4	0.8	1.3	1.5	1.3		
수출 (십억 달러)	인도네시아	59.6	57.0	61.1					37.8
	태국	65.3	68.9	80.2	7.1	14.4	22.4	29.7	
	말레이시아	88.2	93.3	93.3	8.9	17.2			
	필리핀	31.9	35.1	35.8	2.8	5.0	8.3		
	싱가포르	124.5	128.5	143.9	←	40.2	→		
수입 (십억 달러)	인도네시아	33.5	31.2	32.3					37.4
	태국	56.2	64.3	75.2	6.9	13.7	21.9	29.4	
	말레이시아	73.9	75.5	91.0	7.2	14.2			
	필리핀	29.5	33.5	37.4	3.1	6.1	9.7		
	싱가포르	109.7	109.9	129.2	←	36.9	→		
경상수지 (십억 달러)	인도네시아	6.9	7.8	7.8					2.3
	태국	6.2	7.6	8.0	0.8	1.9	2.1	2.1	
	말레이시아	7.2	6.3	8.0					
	필리핀	4.5	4.4	3.4					
	싱가포르	21.2	15.5	23.0	←	6.5	→		
외환 보유고 (십억 달러)	인도네시아	27.2	31.6	36.2					42.8
	태국	33.0	38.9	42.1	42.2	42.9	43.0	42.7	
	말레이시아	29.9	34.3	44.9	47.7	49.2	51.3	53.4	
	필리핀	13.4	16.1	16.9	16.1	15.7	16.3	16.4	
	싱가포르	75.4	80.2	96.3	98.6	101.1	102.7	99.1	
환율 (자국화폐/ US\$)	인도네시아	10,266	9,318	8,555	8,458	8,455	8,459	8,468	40.6
	태국	44.6	43.0	41.5	39.1	39.1	39.5	39.4	
	말레이시아	3.80	3.80	3.80	3.80	3.80	3.80	3.80	
	필리핀	51.0	51.6	54.2	55.5	56.1	56.3	55.9	
	싱가포르	1.79	1.79	1.74	1.69	1.70	1.70	1.68	

【담당: 권경덕】

〈표 3〉 美洲

구 분	2002	2003	2003			200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질 GDP 증가율 (%)	미 카 나 국	2.2	3.1	←	4.1	→	←	3.9	→		
	아 르헨티나	3.4	2.0	←	3.3	→	←	2.4	→		
	브 라 질	-10.9	8.4	←	11.3	→	←	11.2	→		
	칠 레	1.9	-0.2	←	-0.1	→	←	2.7	→		
	멕시코	2.1	3.2	←	3.3	→	←	4.8	→		
		0.7	1.3	←	2.0	→	←	3.7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미 카 나 국	2.4	1.9	0.0	-0.2	0.2	0.5	0.3	0.5	0.2	0.6
	아 르헨티나	2.2	2.8	-0.2	0.2	0.1	0.1	0.2	0.3	0.2	0.9
	브 라 질	41.0	3.7	0.6	0.2	0.2	0.4	0.1	0.6	0.9	0.7
	칠 레	14.7	10.4	0.4	0.4	0.5	0.8	0.4	0.6	0.4	0.4
	멕시코	2.8	1.1	-0.2	-0.3	-0.3	-0.2	0.0	0.4	0.4	0.5
		5.7	4.0	0.4	0.8	0.4	0.6	0.6	0.3	0.1	-0.3
수출 (십억 달러)	미 카 나 국	681.9	713.8	586.7	650.8	713.8	61.9	126.9	194.0	259.7	
	아 르헨티나	263.8	286.3	254.1	280.1	286.3	23.9	49.6	76.1	103.0	
	브 라 질	25.3	29.4	24.5	27.0	29.4	2.3	4.7	7.3	10.3	13.7
	칠 레	60.4	73.1	60.4	66.3	73.1	5.8	11.5	19.4	26.0	34.0
	멕시코	18.3	21.0	17.3	19.0	21.0	2.1	4.3	7.3	10.1	12.9
		160.7	165.3	136.5	150.4	165.3	12.6	26.7	43.3	58.2	74.3
수입 (십억 달러)	미 카 나 국	1,164.7	1,263.2	1,044.6	1,151.9	1,263.2	110.3	222.7	341.2	463.6	
	아 르헨티나	227.0	243.6	215.7	238.7	243.6	20.0	41.5	63.2	84.6	
	브 라 질	9.0	13.8	11.0	12.3	13.8	1.6	3.0	4.6	6.3	8.0
	칠 레	47.2	48.3	40.0	44.3	48.3	4.2	7.9	13.3	17.9	22.7
	멕시코	15.8	18.0	14.9	16.4	18.0	1.7	3.1	5.0	6.7	8.5
		168.7	171.0	140.2	154.9	171.0	12.9	26.9	43.7	59.1	75.2
경상수지 (십억 달러)	미 카 나 국	-473.9	-530.7	←	-127.0	→	←	144.9	→		
	아 르헨티나	14.9	18.4	←	5.1	→	←	7.1	→		
	브 라 질	9.6	7.9	←	1.0	→	←	0.4	→		
	칠 레	-7.8	4.1	←	0.3	→	←	1.6	→		
	멕시코	-0.9	-0.6	←	-0.3	→	←	-0.3	→		
		-14.1	-9.2	←	-3.3	→	←	-3.3	→		
외환 보유고 (십억 달러)	미 카 나 국	79.0	86.1	83.9	85.2	86.1	85.4	84.9	85.0	82.2	83.1
	아 르헨티나	37.2	36.3	35.9	36.1	36.3	36.4	36.0	36.4	35.1	36.0
	브 라 질	10.5	14.1	12.9	13.5	14.1	14.9	15.0	15.0	15.8	16.7
	칠 레	37.8	49.3	54.1	54.4	49.3	53.3	53.0	51.6	50.5	50.5
	멕시코	15.4	15.9	15.6	15.8	15.9	16.0	16.1	16.0	16.0	16.1
		48.0	57.4	53.6	55.4	57.4	58.7	59.2	59.0	58.4	58.4
환 율 (자국 화폐/US\$)	미 카 나 국 ²⁾	0.9454	1.1315	1.1714	1.1710	1.2298	1.2958	1.2640	1.2261	1.1989	1.2000
	아 르헨티나 ³⁾	1.5704	1.4013	1.3221	1.3130	1.3128	1.2638	1.3299	1.3286	1.3420	1.3789
	브 라 질 ³⁾	3.37	2.93	2.88	2.98	2.93	2.93	2.92	2.85	2.85	2.96
	칠 레 ⁴⁾	3.53	2.88	2.85	2.94	2.88	2.94	2.91	2.90	2.94	3.13
	멕시코 ⁵⁾	688.93	691.39	646.07	625.47	602.90	573.64	584.31	603.91	608.19	635.76
		10,312	11,236	11,107	11,352	11,236	10,914	11,093	11,154	11,338	11,451

주: 1) 브라질 통계청(IBGE) 소비자물가지수(INPC), 2) 유로당 美달러 환율, 3) 기말기준, 4) observado기준 기간평균,

5) 1999년 이전 은행간매도기준(1999년부터 외채지불 · 기말기준).

【담당: 미국 · 캐나다(나수엽), 멕시코 · 칠레(김진오), 아르헨티나 · 브라질(권기수)】

〈표 4〉 西유럽

구 분	2001	2002	2003	2003			200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질 GDP 증가율 (%)	E U	1.7	1.1	0.9	←	1.0	→	←	1.5	→		
	유로지역 ¹⁾	1.7	0.9	0.5	←	0.6	→	←	1.3	→		
	독일	1.0	0.2	-0.1	←	0.1	→	←	0.7	→		
	이탈리아	1.7	0.4	0.4	←	0.1	→	←	0.8	→		
	영국	2.1	1.6	2.2	←	2.7	→	←	3.0	→		
프랑스	2.1	1.1	0.5	←	1.1	→	←	1.7	→			
실업률 (%)	E U	7.8	7.8	8.0	8.1	8.1	8.1	8.1	8.1	8.1	8.1	8.1
	유로지역 ¹⁾	8.0	8.2	8.3	8.9	8.9	8.9	8.9	8.9	9.0	9.0	9.0
	독일	7.9	8.7	9.7	9.3	9.2	9.2	9.2	9.3	9.3	9.7	9.8
	이탈리아	9.6	9.0	8.6	8.5	8.5	8.5	8.5				
	영국	5.0	5.1	5.0	4.9	4.9	4.8	4.7	4.7	4.7		
프랑스	8.5	8.8	9.4	9.5	9.5	9.5	9.5	9.4	9.4	9.4	9.4	
소비자 물가 상승률 (%)	E U	2.4	2.1	1.8	1.9	2.0	1.8	1.8	1.5	1.5	1.8	2.3
	유로지역 ¹⁾	2.6	2.1	2.0	2.0	2.2	2.0	1.9	1.6	1.7	2.0	2.5
	독일	2.0	1.3	1.2	1.1	1.3	1.1	1.2	0.8	1.1	1.7	2.1
	이탈리아	2.8	2.5	2.6	2.8	2.8	2.5	2.2	2.4	2.3	2.3	2.3
	영국	1.2	1.3	1.4	1.4	1.3	1.3	1.4	1.3	1.1	1.2	1.5
프랑스	1.8	1.9	2.2	2.3	2.5	2.4	2.2	1.9	1.9	2.4	2.8	
수출 (십억 유로)	E U	988.1	995.0	977.9	815.0	896.0	977.9	73.6	152.1			
	유로지역 ¹⁾	767.4	776.9	1,056.5	879.3	967.4	1,056.5	81.2	167.1			
	독일	638.3	648.3	661.7	548.6	607.2	661.7	55.7	112.3	177.2	238.9	
	이탈리아	269.2	269.1	258.1	214.4	235.5	258.1	16.5	37.5			
	영국	304.5	296.3	269.2	225.2	247.1	269.2	19.4	40.4	64.0		
프랑스	361.1	350.8	341.9	282.9	311.7	341.9	26.9	54.7				
수입 (십억 유로)	E U	1,029.2	989.5	989.6	821.7	906.2	989.6	82.3	162.6			
	유로지역 ¹⁾	802.2	781.6	983.1	817.2	900.4	983.1	79.4	159.9			
	독일	542.8	522.0	531.9	439.7	487.9	531.9	43.2	87.7	136.0	183.5	
	이탈리아	260.1	261.2	257.1	212.3	233.2	257.1	18.9	40.6			
	영국	371.8	366.2	345.5	288.1	317.5	345.5	28.8	56.6	87.2		
프랑스	366.9	348.2	345.2	287.0	316.4	345.2	27.8	56.0				
경상수지 (십억 유로)	E U	-15.6	52.0	53.6	←	49.7	→	←	7.0	→		
	유로지역 ¹⁾	-19.3	60.0	26.0	18.1	22.5	27.5	-4.4	1.4	13.8		
	독일	2.7	51.4	50.9	38.7	45.0	50.7	4.4	9.5	20.8	31.0	
	이탈리아	-0.4	-7.2									
	영국 ²⁾	-23.5	-17.8	-18.8	←	-18.8	→					
프랑스	23.7	28.8	14.7	10.1	11.8	14.7	1.5	2.0				
현물(자국 화폐/US\$)	유로지역 ¹⁾	0.890	1.050	1.256	1.159	1.199	1.256	1.246	1.248	1.229	1.197	1.219
	영국	1.4403	1.5037	1.6337	1.6778	1.6897	1.7530	1.8205	1.8677	1.8273	1.8050	1.7891

주 : EU와 유로지역의 수출입 및 경상수지는 역외기준임.

1) 유로지역(EMU)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등 12개국임. EU 회원국인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EMU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2) 십억 파운드

[단위: EU · 유로지역 · 독일 · 이탈리아(박영권), 영국 · 프랑스(김군태)]

〈표 5〉 CIS

구 분		2001	2002	2003	2003			200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질 GDP 증가율 (%)	러 시 아	5.0	4.3	7.3	←	8.8	→	←	8.0	→		
	우크라이나	9.1	4.8	9.3	←	13.7	→	←	10.8	→		
	카자흐스탄	13.2	9.5	9.2	←	9.3	→					
	우즈베키스탄	4.5	4.2	4.4	←	5.6	→	←	4.8	→		
기업생산 증가율 (%)	러 시 아	4.9	3.7	7.0	7.2	7.1	7.9	7.5	8.7	6.6	6.7	
	우크라이나	14.0	7.0	15.8	18.6	15.5	18.4	16.1	19.4	19.6	14.1	
	카자흐스탄	14.0	9.8	8.8	9.6	10.7	13.6	8.7	9.0	10.2	9.0	
	우즈베키스탄	8.1	7.8	6.2				←	8.8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러 시 아	18.6	15.1	12.0	13.3	12.7	12.0	11.3	10.7	10.3	10.3	10.1
	우크라이나	12.0	0.8	5.2	6.9	8.1	8.2	8.1	7.4	6.6	6.6	7.4
	카자흐스탄	8.4	6.0	6.6	6.9	5.8	6.8	6.4	6.4	6.5	6.5	6.6
	우즈베키스탄	26.2	27.2	3.8				←	1.1	→		
수출 (십억 달러)	러 시 아	103.1	108.2	134.4	108.9	120.6	134.4	9.5	19.9	35.8		
	우크라이나	16.3	18.0	23.1	18.5	20.7	23.1	1.7	3.5	6.2		
	카자흐스탄	10.8	9.1	14.2	10.8	12.9	14.2	1.4	2.6	4.0		
	우즈베키스탄	3.3	2.8	3.1								
수입 (십억 달러)	러 시 아	53.4	60.7	74.8	58.7	65.3	74.8	6.0	12.6	18.8		
	우크라이나	15.8	17.0	23.0	18.2	20.3	23.0	1.5	3.2	5.7		
	카자흐스탄	8.0	7.6	9.7	6.7	8.8	9.7	0.8	1.5	2.4		
	우즈베키스탄	3.14	2.45	2.1								
경상수지 (십억 달러)	러 시 아	35.1	32.8	39.1	←	39.1	→	←	11.0	→		
	우크라이나	1.40	3.17	2.89								
	카자흐스탄	-0.80	-0.60	-0.2	←	-0.2	→					
	우즈베키스탄	-0.29	0.02									
환 율 ¹⁾ (자국화폐/US\$)	러 시 아	30.1	31.8	30.7	30.2	29.8	29.4	28.9	28.5	28.5	28.7	29.0
	우크라이나	5.37	5.33	5.33	5.33	5.33	5.33	5.34	5.33	5.33	5.33	5.33
	카자흐스탄	147	156	144	148	147	144	140	139	139	139	137
	우즈베키스탄	424	771	971								

주: 1)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기말기준임.

【담당: 현하정】

〈표 6〉 中·東歐

구 분	2001	2002	2003	2003			200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실질 GDP 증가율 (%)	폴란드	1.0	1.4	3.7	←	4.7	→	←	6.0	→	
	헝가리	3.8	3.5	2.8	←	3.6	→	←	4.2	→	
	체코공화국	3.1	2.0	2.8	←	3.1	→	←	3.1	→	
	루마니아	5.3	4.9	4.9	←	5.0	→				
	슬로바키아	3.8	4.4	4.0	←	4.0	→				
불가리아	4.1	4.7	4.4	←	5.0	→					
공업생산 증가율 (%)	폴란드	-0.2	1.4	8.7	12.1	9.2	14.0	14.4	18.2	23.6	21.9
	헝가리	3.5	2.7	6.4	10.9	7.1	12.0	7.1	12.4	12.8	
	체코공화국	6.5	4.8	5.5	5.2	4.8	8.9	3.8	7.1	15.3	
	루마니아	8.2	6.0	3.8	1.5	-1.4	2.6	0.8	6.9	9.4	
	슬로바키아	6.2	4.0	11.3	5.1	3.2	4.3	0.4	8.1	11.1	
불가리아	0.7	2.6	17.0	17.6	11.0	23.0	12.7	20.6	15.5		
소비자 물가 상승률 (%)	폴란드	5.5	1.9	0.8	1.3	1.6	1.7	1.6	1.6	1.7	2.2
	헝가리	9.2	5.3	4.7	4.9	5.6	5.7	6.6	7.1	6.7	6.9
	체코공화국	4.7	1.8	0.1	0.4	1.0	1.0	2.3	2.3	2.5	2.3
	루마니아	34.5	22.5	15.3	15.8	14.5	14.1	13.9	13.7	13.1	12.6
	슬로바키아	7.3	3.3	8.5	9.6	9.8	9.3	8.3	8.5	8.2	8.0
불가리아	7.4	5.8	2.3	3.3	5.1	5.6	6.4	6.6	6.2	6.1	
수출 (십억 달러)	폴란드	30.28	32.9	58.40	44.78	50.01	58.40	4.66	8.85	13.79	
	헝가리	30.50	34.3	46.12	35.65	40.19	46.12	3.62	7.71	12.18	
	체코공화국	33.40	38.5	52.89	41.86	46.41	52.89	4.15	8.97	13.96	19.02
	루마니아	11.39	13.9	19.19	15.21	16.81	19.19	1.53	3.43	5.31	
	슬로바키아	12.70	14.5	23.68	18.66	20.81	23.68	1.87	3.96	6.12	8.41
불가리아	5.11	5.58	8.18	6.55	7.19	8.18	0.63	1.37	2.11		
수입 (십억 달러)	폴란드	41.95	43.3	74.11	57.24	63.69	74.11	5.71	11.08	18.14	
	헝가리	33.68	37.6	51.61	40.44	44.99	51.61	3.91	8.46	13.26	
	체코공화국	36.47	40.7	55.64	43.45	48.30	55.64	4.16	8.84	14.01	19.45
	루마니아	15.55	17.9	26.06	20.24	22.54	26.06	1.94	4.18	6.56	
	슬로바키아	14.69	16.6	24.37	18.99	21.11	24.37	1.82	3.92	6.13	8.46
불가리아	6.69	7.20	11.79	9.14	10.18	11.79	0.89	1.89	2.96		
경상수지 (십억 달러)	폴란드	-7.2	-6.7	-4.0	-2.72	-3.06	-3.95	0.24	-0.02	-0.53	
	헝가리	-1.8	-2.7	-5.2	-4.51	-4.67	-5.20	-0.56	-1.48	-2.15	
	체코공화국	-3.3	-4.5	-6.2	-4.45	-5.10	-6.23	-0.18	-0.25	-0.58	
	루마니아	-2.2	-1.6	-3.3	-2.36	-2.81	-3.30	-0.14	-0.17	-0.33	
	슬로바키아	-1.8	-1.9	-0.3	-0.02	-0.19	-0.28	0.07	0.13	0.13	
불가리아	-0.9	-0.7	-1.9	-1.04	-1.45	-1.85	-0.29	-0.45	-0.59		
환율 (자국 화폐/US\$)	폴란드	4.09	4.08	3.89	3.92	3.95	3.79	3.74	3.85	3.89	3.96
	헝가리	285.7	257.9	224.3	218.5	221.7	215.8	209.8	207.9	206.6	208.6
	체코공화국	38.0	32.7	28.2	27.4	27.3	26.3	25.9	26.0	26.9	27.1
	루마니아	29,061	33,055	33,200	33,157	34,109	33,013	32,572	32,073	32,646	33,923
	슬로바키아	48.4	45.3	36.8	35.3	35.2	33.6	32.3	32.1	32.9	33.4
불가리아	2.19	2.08	1.73	1.67	1.67	1.59	1.55	1.55	1.59	1.63	

【담당: 이철원】

〈표 7〉 中東·아프리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질GDP 증가율 (%)	사 우 디	2.8	-0.8	4.9	1.3	1.0	6.4				
	이 스 라	2.7	2.6	7.5	-0.9	-0.8	1.3	0.8	-0.3	0.7	0.6
	이 란	3.8	2.0	5.3	5.8	7.6	6.1				
	이 집 트 남 아 공	4.9	6.3	5.1	3.5	3.0	1.8	1.8			
소비자물가 상승률 (%)	사 우 디	-0.4	-1.3	-1.2	-1.1	0.3	0.5	0.4	0.6	0.9	
	이 스 라	5.4	5.2	1.1	1.1	5.7	0.7	5.2	1.5	-1.5	
	이 란	17.8	20.1	14.5	11.3	14.3	16.5	17.5	16.8	16.1	
	이 집 트 남 아 공	4.1	3.1	2.7	2.3	2.7	4.3	3.3	4.0		0.7
수출 (십억 달러)	사 우 디	38.8	50.8	77.6	68.1	72.6	86.9	19.6	39.6		
	이 스 라	20.6	25.8	31.2	28.0	27.5	29.4	7.0	13.5	20.3	27.6
	이 란	13.1	21.0	28.3	23.9	28.2	35.1	7.6	16.6	25.1	
	이 집 트 남 아 공	4.4	5.1	7.1	7.2	7.3	8.8	2.2	4.5		
수입 (십억 달러)	사 우 디	27.5	25.7	27.7	28.6	29.7	30.4	12.5	26.7		
	이 스 라	26.9	30.0	34.0	31.0	31.2	32.3	8.0	16.2	24.8	33.8
	이 란	14.3	13.4	15.2	18.1	23.8	29.1	7.1	15.1	21.8	
	이 집 트 남 아 공	16.8	17.3	17.6	15.8	14.7	14.6	3.4	7.0		
경상수지 (십억 달러)	사 우 디	-13.1	0.4	14.3	9.4	11.9	24.9				
	이 스 라	-1.1	-1.5	-0.7	-1.8	-1.4	-0.1	0.4	0.3	-0.5	-0.1
	이 란	-2.1	6.6	12.6	6.0	3.7	4.7	0.2	0.3		
	이 집 트 남 아 공	-2.4	-1.6	-0.8	0.3	0.8	3.6	0.5	1.7		
외환 보유고 (십억 달러)	사 우 디	12.7	17.0	19.6	17.6	20.6	22.6	22.8	21.3	22.5	22.6
	이 스 라	22.7	22.6	23.1	23.2	23.7	25.8	23.5	24.1	24.8	25.8
	이 란	3.4	5.3	12.5	17.5	22.3	24.9				
	이 집 트 남 아 공	18.1	14.5	13.1	12.9	13.2	13.4	13.0	13.6		
환 율 (자국화폐/ US\$)	사 우 디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이 스 라	3.8	4.1	4.1	4.2	4.7	4.6	4.8	4.5	4.5	4.5
	이 란	5,395	7,907	8,078	7,922	7,958	8,217	8,011	8,148	8,281	8,335
	이 집 트 남 아 공	3.4	3.4	3.5	4.0	4.5	5.8	5.6	5.8	5.9	6.7

〈담당: 김혜자〉

〈표 8〉 남아시아·대양주

구 분	2001	2002	2003	2003			200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질 GDP 증가율 ¹⁾ (%)	인 도	5.7	4.3	8.2	←	10.4	→	←	8.2	→		
	파키스탄	2.2	3.4	5.1								
	스리랑카	-1.5	4.0	5.9	→	6.9	→					
	호 주	2.4	3.0	3.1	←	3.9	→	←	3.2	→		
	뉴질랜드	2.7	4.1	3.5	←	3.2	→	←	3.5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인 도	3.7	4.3	4.4	3.3	3.1	3.7	4.4	4.1	3.5	2.2	2.2
	파키스탄	4.4	3.5	3.1	2.2	2.6	3.1	3.4	3.5	3.7	3.9	4.2
	스리랑카	14.2	9.6	6.3	7.2	6.8	6.3	5.2	4.4	3.9	3.7	5.9
	호 주	4.4	3.0	2.8	←	2.4	→	←	2.0	→		
	뉴질랜드	1.8	2.7	1.8	←	1.6	→	←	1.5	→		
수출 (억달러)	인 도	434	507	552	452	497	552	51	107	180	230	288
	파키스탄	86	100	115	96	105	115	11	20	30	41	52
	스리랑카	48	47	51	42	46	51	5	9	14	17	
	호 주	783	824	919	748	833	919	90	181	272	362	454
	뉴질랜드	140	145	169	139	154	169	14	31	49	66	87
수입 (억달러)	인 도	494	628	704	568	632	704	66	133	202	270	347
	파키스탄	103	111	130	108	117	130	13	24	38	53	70
	스리랑카	59	61	67	54	59	67	6	11	18	25	
	호 주	774	878	1,088	884	982	1,088	106	212	318	421	526
	뉴질랜드	131	150	186	150	168	186	18	34	51	69	86
경상 수지 ¹⁾ (억달러)	인 도	8	41	87	←	87	→	←	34	→		
	파키스탄	27	32	33	←	33	→	←	1.8	→		
	스리랑카	-3.7	-11									
	호 주	-86	-174	-317	←	-317	→	←	-86	→		
	뉴질랜드	-11	-21	-35	←	-35	→	←	1.1	→		
외 환 ²⁾ 보유고 (금, SDR 포함, 억달러)	인 도	481	704	1,018	938	974	1,032	1,064	1,096	1,127	1,185	1,198
	파키스탄	49.2	94	122	115	119	122	120	126	126	123	125
	스리랑카	22.4	23.0	32.2	31.2	30.3	32.2	31.8	33.7	33.1	33.2	
	호 주	181	214	333	321	331	333	303	321	364	358	380
	뉴질랜드	30	49	61	57	68	61	57	63	67	58	50
환 율 ²⁾ (자국 화폐/US\$)	인 도	48.25	47.98	45.63	45.32	45.70	45.63	45.27	45.24	43.60	44.50	45.47
	파키스탄	59.90	58.25	57.25	57.35	57.25	57.25	57.18	57.46	57.39	57.37	57.70
	스리랑카	93.00	96.74	96.95	94.76	96.35	96.95	97.28	98.60	97.60	98.33	99.27
	호 주	1.96	1.78	1.33	1.41	1.37	1.33	1.31	1.29	1.30	1.39	1.40
	뉴질랜드	2.40	1.91	1.53	1.63	1.55	1.53	1.48	1.46	1.50	1.60	1.58

주: 1) 실질GDP증가율과 경상수지는 각국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함(호주 제외). 인도와 뉴질랜드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이고, 호주와 파키스탄의 회계년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임. 2) 기간말 기준(뉴질랜드의 외환보유고는 가용외환보유고로 금 제외).

【담당: 최윤정】

일러두기

〈대상경제지표〉

- 실질GDP증가율 : 별도표기가 없는 한, 전년동기대비.
- 공업생산증가율 : 별도표기가 없는 한, 전년동기대비.
- 소비자물가상승율 : 별도표기가 없는 한, 전년동기대비 기간평균.
- 수출 · 수입 · 경상수지 · 별도표기가 없는 한, 월별자료는 누적치.
- 환율 : 별도표기가 없는 한, 기간평균.

〈참고자료〉

1. 東南亞

- 한국은행 경제통계정보(<http://www.bok.or.kr>).
- 일본은행 『경제통보월보』 각월호
- 중국통계적요(2000)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종합
- Census and Statistics Development of Hong Kong, (<http://www.info.gov.hk/censtatd/hkstat>).
- 臺灣 行政院主計處(<http://dgbaseey.gov.tw>) 및 經濟部 (<http://www.moea.gov.tw>)

2. 東北亞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 Bank Indonesia, Indonesian Financial Statistics, (<http://www.singstat.gov.sg>)
- Bank of Thailand(<http://www.bot.or.th>)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of Thailand.
- Sentral Banko ng Pilipnas(<http://www.bsp.gov.ph>)
- Bloomberg.

3. 美 洲

- 미국 상무부
- 캐나다 : Department of Finance, *Economy in Brief*.
- 아르헨티나 : 통계청(INDEC).
- 멕시코 : 국립지리정보통계청(INEGI)
- Banco Central do Brasil(각월호)
- Banco Central do Chile, *Boletin Mensual*(각월호)

4. 西유럽

-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 Eurostat(<http://europa.eu.int/comm/eurostat>).

- ECB, *Monthly Bulletin*.
-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 Bank of England(<http://www.bankofengland.co.uk>)
-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5. CIS

- CIS 통계위원회(<http://cisstat.com>)
- Global Insight(<http://www.globalinsight.com>)
- EIU(<http://www.eiu.com>)
- RECEP, Russian Economic Trends(various issues)
- UEPLAC, Ukrainian Economic Trends(various issues)
- Bank of Finland, Russian Economy: The month in review (various issues)
-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6. 中 · 東歐

-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 PlanEcon, PlanEcon Report(various issues).
- WIW, Monthly Report(various issues).

7. 中東 · 아프리카

- Egyptian Center for Economic Studie(internet).
- IMF, IFS&DOTS
- OECD(intement)
- Bank of Israel
- Oxford Analytica(Consensus Economics), South African Reserve Bank.
- State Statistical Institute of Turkey(internet).
- South African Reserve Bank.
- Global Insight(www.globalinsight.com)

8. 西南亞 · 대양주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각년호.
- Reserve Bank of India(<http://www.rbi.org.in>) Monthly and Weekly Statistical Supplement.
- State Bank of Pakistan, Economic Data.
- 뉴질랜드 국립통계청(<http://www.stats.govt.nz>).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http://abs.gov.au>).
- Factiva(Dow Jones & Reuters) Business Briefing.

한국의 국가별 · 지역별 수출입 추이

〈표 1〉 한국의 국가별 · 지역별 수출 실적(연간)

(단위 : 백만 달러, 경상가격,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5월
합계	129,715 (3.7)	136,164 (5.0)	132,313 (-2.8)	143,685 (8.6)	172,268 (19.9)	150,439 (-12.7)	162,471 (8.0)	193,817 (19.6)	101,630 (38.4)
미국	21,670 (-10.2)	21,625 (-0.2)	22,805 (5.5)	29,475 (29.2)	37,611 (27.6)	31,211 (-17.0)	32,780 (5.0)	34,219 (4.4)	16,396 (24.3)
EU	15,325 (-6.0)	16,864 (10.0)	18,171 (7.7)	20,241 (11.4)	23,424 (15.7)	19,627 (-16.2)	21,694 (10.5)	24,887 (14.7)	14,910 (39.8)
일본	15,767 (-7.5)	14,771 (-6.3)	12,238 (-17.2)	15,862 (29.6)	20,466 (29.0)	16,506 (-19.4)	15,143 (-8.3)	17,276 (14.1)	8,897 (31.8)
캐나다	1,203 (-32.8)	1,514 (25.8)	1,551 (2.4)	1,638 (5.6)	2,427 (48.1)	2,036 (-16.1)	2,341 (15.0)	2,682 (14.6)	1,305 (24.3)
중국	11,377 (24.4)	13,572 (19.3)	11,944 (-12.0)	13,685 (14.6)	18,455 (34.9)	18,190 (-1.4)	23,754 (30.6)	35,110 (47.8)	19,434 (57.2)
홍콩	11,131 (4.2)	11,725 (5.3)	9,261 (-21.0)	9,048 (-2.3)	10,708 (18.3)	9,452 (-11.7)	10,146 (7.3)	14,654 (44.4)	8,974 (75.8)
ASEAN	20,311 (13.0)	20,313 (0.0)	15,266 (-24.8)	17,708 (15.5)	20,134 (13.7)	16,459 (-18.3)	18,400 (11.8)	20,253 (10.1)	9,674 (20.6)
대만	4,005 (3.2)	4,613 (15.2)	5,140 (11.4)	6,345 (23.5)	8,027 (26.5)	5,835 (-27.3)	6,632 (13.7)	7,045 (6.2)	3,798 (47.2)
중남미	8,961 (21.6)	8,668 (-3.3)	8,867 (2.3)	8,645 (-2.5)	9,369 (8.4)	9,730 (3.8)	8,864 (-8.9)	8,802 (-0.7)	4,215 (14.2)
대양주	2,433 (28.3)	2,685 (10.4)	3,222 (20.0)	3,061 (-5.0)	3,522 (15.0)	3,297 (-6.4)	3,643 (10.5)	4,906 (34.7)	1,790 (6.6)

주 : ()안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임.
자료: KOTIS

〈표 2〉 한국의 국가별 · 지역별 수입 실적(연간)

(단위 : 백만 달러, 경상가격,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5월
합계	150,339 (11.3)	144,616 (-3.8)	93,282 (-35.5)	119,752 (28.4)	160,481 (34.0)	141,098 (-12.1)	152,126 (7.8)	178,827 (17.6)	89,363 (23.2)
미국	33,305 (9.5)	29,981 (-10.0)	20,403 (-32.3)	24,922 (22.1)	29,242 (17.3)	22,376 (-23.5)	23,009 (2.8)	24,814 (7.8)	11,231 (8.1)
EU	21,204 (16.6)	18,934 (-10.7)	10,928 (-42.4)	12,629 (15.6)	15,788 (25.0)	14,921 (-5.5)	17,107 (14.6)	19,383 (13.3)	10,226 (30.8)
일본	31,449 (-3.5)	27,836 (-11.5)	16,840 (-39.7)	24,142 (43.4)	31,828 (31.8)	26,633 (-16.3)	29,856 (12.1)	36,313 (21.6)	18,831 (33.2)
캐나다	2,724 (4.6)	2,604 (-4.4)	1,975 (-24.2)	1,793 (-9.2)	2,108 (17.6)	1,821 (-13.6)	1,846 (1.3)	1,860 (0.8)	917 (14.1)
중국	8,539 (15.4)	9,975 (16.8)	6,484 (-35.9)	8,667 (36.7)	12,799 (44.3)	13,303 (3.9)	17,400 (30.8)	21,909 (25.9)	11,078 (32.4)
홍콩	143 (36.3)	903 (-20.9)	540 (-40.2)	883 (63.4)	1,261 (42.8)	1,228 (-2.6)	1,695 (38.1)	2,735 (61.4)	1,882 (91.1)
ASEAN	12,074 (19.1)	12,482 (3.4)	9,134 (-27.2)	12,249 (34.1)	18,173 (48.4)	15,916 (-12.4)	16,757 (5.3)	18,458 (10.2)	9,119 (17.8)
대만	2,725 (6.3)	2,421 (-11.2)	1,670 (-31.0)	2,972 (77.9)	4,701 (58.2)	4,301 (-8.5)	4,832 (12.3)	5,880 (21.7)	2,923 (20.9)
중남미	4,392 (10.8)	3,954 (-10.0)	2,197 (-46.1)	2,865 (30.4)	3,263 (13.9)	3,445 (5.6)	3,743 (8.6)	4,594 (22.8)	2,748 (62.2)
대양주	7,404 (22.4)	6,846 (-7.5)	5,302 (-22.6)	5,486 (3.5)	6,898 (25.7)	6,410 (-7.1)	6,822 (6.4)	6,765 (-0.8)	3,327 (21.1)

주 : ()안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임.
자료: KOTIS

【담당: 김정곤】

한국의 외국인투자 · 해외투자 추이

□ 외국인투자 현황

〈표 1〉 외국인투자의 최근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신고기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4	2004.2/4	2004.1~6
금 액	15,542	15,217	11,292	9,101	6,468	3,049	1,998	5,046
(증가율)	(75.6)	(-2.1)	(-25.8)	(-19.4)	(-28.9)	(175.2)	(28.7)	(89.6)
건 수	2,104	4,141	3,340	2,402	2,561	651	752	1,404
도착기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4		
금 액	10,814	10,192	4,893	3,709	5,012	757		
(증가율)	(104.4)	(-5.8)	(-52.0)	(-24.2)	(35.1)	(-12.3)		

주: 건수는 증액투자를 제외한 신규투자건수이며 금액은 신규 및 증액투자의 합계금액임.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표 2〉 투자유형별 · 규모별 외국인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4	2004.2/4	2004.1~6
총투자	15,542	15,217	11,292	9,101	6,468	3,049	1,998	5,046
투자 유형별								
M&A	2,433 (15.7)	2,143 (14.1)	1,904 (16.9)	2,107 (23.2)	2,026 (31.3)	2,007 (65.8)	456 (22.8)	2,463 (48.8)
Greenfield	12,471 (80.2)	12,728 (83.6)	8,772 (77.7)	6,799 (74.7)	4,362 (67.4)	867 (28.4)	1,404 (70.3)	2,272 (45.0)
장기차관	637 (4.1)	346 (2.3)	616 (5.5)	196 (2.2)	80 (1.2)	174 (5.7)	137 (6.9)	311 (6.2)
투자 규모별								
1백만 달러 미만	230 (1.5)	433 (2.8)	341 (3.0)	253 (2.8)	289 (4.5)	78 (2.6)	75 (3.8)	153 (3.0)
1백만~1천만 달러	1,031 (6.6)	1,371 (9.0)	1,050 (9.3)	945 (10.4)	862 (13.3)	260 (8.5)	374 (18.7)	633 (12.5)
1천만~1억 달러	4,278 (27.5)	3,897 (25.6)	2,850 (25.2)	1,960 (21.5)	2,160 (33.4)	705 (23.1)	767 (38.4)	1,471 (29.2)
1억달러이상	10,002 (64.4)	9,515 (62.5)	7,050 (62.4)	5,942 (65.3)	3,157 (48.8)	2,007 (65.8)	782 (39.1)	2,789 (55.3)

주: 1) 신고기준.

2) 2004년 7월부터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를 M&A, Greenfield, 장기차관 등 유형별로 발표하고 있음.

3) () 안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표 3〉 업종별 ·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6
총투자	15,542	15,217	11,292	9,101	6,468	5,046
〈업종별〉						
농축수산 · 광업	8 (0.1)	4 (0.0)	7 (0.1)	16 (0.2)	6 (0.1)	0 (0.0)
제조업	8,356 (53.8)	6,848 (45.0)	2,911 (25.8)	2,336 (25.7)	1,697 (26.2)	1,641 (32.5)
식품	304 (2.0)	84 (0.6)	624 (5.5)	48 (0.5)	42 (0.6)	46 (0.9)
화학	137 (0.9)	778 (5.1)	515 (4.6)	141 (1.5)	689 (10.7)	118 (2.3)
전기및전자	3,831 (24.7)	2,574 (16.9)	896 (7.9)	517 (5.7)	298 (4.6)	1,194 (23.7)
운송기기	780 (5.0)	840 (5.5)	145 (1.3)	588 (6.5)	121 (1.9)	130 (2.6)
기타 제조업	3,304 (21.3)	2,572 (16.9)	731 (6.5)	1,042 (11.4)	547 (8.5)	153 (3.0)
서비스업	6,782 (43.6)	8,110 (53.3)	7,235 (64.1)	5,131 (56.4)	4,132 (63.9)	3,195 (63.3)
숙박업	490 (3.2)	467 (3.1)	429 (3.8)	815 (8.9)	211 (3.3)	28 (0.6)
도소매 · 무역업	1,759 (11.3)	2,031 (13.3)	1,495 (13.2)	587 (6.5)	947 (14.6)	378 (7.5)
통신업	247 (1.6)	191 (1.3)	156 (1.4)	68 (0.8)	505 (7.8)	10 (0.2)
금융, 보험업	2,533 (16.3)	1,916 (12.6)	1,769 (15.7)	1,023 (11.2)	1,650 (25.5)	2,061 (40.8)
기타서비스	1,753 (11.3)	3,505 (23.0)	3,386 (30.0)	2,637 (29.0)	819 (12.7)	718 (14.2)
전기가스수도건설	395 (2.5)	255 (1.7)	1,139 (10.1)	1,618 (17.8)	633 (9.8)	210 (4.2)
〈투자국별〉						
일본	1,750 (11.3)	2,448 (15.6)	772 (6.8)	1,403 (15.4)	541 (8.4)	1,144 (22.7)
말레이시아	1,794 (11.5)	1,408 (9.0)	785 (7.0)	210 (2.3)	417 (6.4)	49 (1.0)
미국	3,739 (24.1)	2,922 (18.6)	3,889 (34.4)	4,500 (49.4)	1,240 (19.2)	2,446 (48.5)
네덜란드	3,322 (21.4)	1,768 (11.3)	1,245 (11.0)	451 (5.0)	161 (2.5)	369 (7.3)
독일	960 (6.2)	1,599 (10.2)	459 (4.1)	284 (3.1)	370 (5.7)	108 (2.1)
영국	479 (3.1)	84 (0.5)	432 (3.8)	115 (1.3)	871 (13.5)	51 (1.0)
프랑스	750 (4.8)	607 (3.9)	426 (3.8)	111 (1.2)	150 (2.3)	89 (1.8)
아일랜드	20 (0.1)	49 (0.3)	174 (1.5)	23 (0.3)	15 (0.2)	20 (0.4)

주: 1) 서비스업은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제외.
 2) 신고기준, () 안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3) 자료의 제약상 1999~2000년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기타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 해외투자 현황

〈표 1〉 해외투자의 최근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1/4	2004.4	2004.5	2004.1~5
투자기준금액	4,979	5,043	3,430	3,583	1,058	343	254	1,655
(증감률)	(51.7)	(1.3)	(-32.0)	(4.5)	(26.7)	(84.6)	(24.5)	(35.1)
건 수	2,062	2,121	2,429	2,735	877	321	223	1,421

주: 1) 건수는 증액투자를 제외한 신규투자건수이며 금액은 신규 및 증액투자의 합계금액임.

2) ()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누계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표 2〉 업종별 해외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1~5
총투자	4,979	5,043	3,430	3,583	1,655
농림어업, 광업	104 (2.1)	65 (1.3)	182 (5.3)	297 (8.3)	123 (7.4)
제조업	1,491 (29.9)	3,756 (74.5)	1,633 (47.6)	1,850 (51.6)	910 (55.0)
섬유·의복 · 신발가죽	173 (3.5)	320 (6.4)	232 (6.8)	246 (6.9)	138 (8.3)
석유화학	253 (5.1)	186 (3.7)	204 (5.9)	218 (6.1)	101 (6.1)
금속 · 1차금속	102 (2.1)	86 (1.7)	186 (5.4)	263 (7.3)	107 (6.4)
기계 · 수송기계	111 (2.2)	162 (3.2)	286 (8.3)	318 (8.9)	216 (13.1)
전기전자	470 (9.4)	2,817 (55.9)	540 (15.7)	532 (14.9)	154 (9.3)
기타제조업	381 (7.7)	186 (3.7)	185 (5.4)	274 (7.6)	195 (11.8)
서비스업	3,384 (68.0)	1,222 (24.2)	1,616 (47.1)	1,435 (40.1)	623 (37.6)
건설업	97 (2.0)	44 (0.9)	60 (1.8)	42 (1.2)	20 (1.2)
도소매업	805 (16.2)	868 (17.2)	1,100 (32.1)	902 (25.2)	397 (24.0)
운수·창고업	30 (0.6)	9 (0.2)	18 (0.5)	15 (0.4)	10 (0.6)
통신업	167 (3.4)	46 (0.9)	38 (1.1)	63 (1.8)	7 (0.4)
금융보험업	9 (0.2)	2 (0.0)	3 (0.1)	2 (0.1)	0 (0.0)
숙박음식점업	246 (4.9)	27 (0.5)	37 (1.1)	72 (2.0)	34 (2.0)
부동산 및 서비스업	2,027 (40.7)	227 (4.5)	359 (10.5)	339 (9.5)	154 (9.3)
기타서비스업	2 (0.0)	0 (0.0)	0 (0.0)	0 (0.0)	0 (0.0)

주: 1) 실제투자(총투자기준).

2) () 안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비중임.

3) 서비스업은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등을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표 3〉 지역별 해외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1~5
총투자	4,979	5,043	3,430	3,583	1,655
아시아	1,518 (30.5)	1,306 (25.9)	1,557 (45.4)	2,060 (57.5)	1,100 (66.5)
중동	27 (0.5)	19 (0.4)	30 (0.9)	10 (0.3)	10 (0.6)
북미	1,400 (28.1)	1,457 (28.9)	551 (16.1)	1,027 (28.7)	273 (16.5)
중남미	1,499 (30.1)	98 (1.9)	247 (7.2)	163 (4.5)	67 (4.0)
유럽	289 (5.8)	2,128 (42.2)	957 (27.9)	210 (5.9)	169 (10.2)
아프리카	156 (3.1)	15 (0.3)	10 (0.3)	23 (0.7)	17 (1.0)
대양주	90 (1.8)	20 (0.4)	78 (2.3)	89 (2.5)	20 (1.2)

주: 1) 실제투자(총투자) 기준.

2) () 안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국별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표 4〉 對中·對美 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1~5
총투자	계	4,979	5,043	3,430	3,583	1,655
	농림어업광업	104 (2.1)	65 (1.3)	182 (5.9)	297 (8.3)	90 (6.5)
	제조업	1,434 (29.5)	3,757 (74.5)	1,555 (50.9)	1,841 (51.6)	775 (55.6)
	서비스업	3,322 (68.4)	1,221 (24.2)	1,321 (43.2)	1,433 (40.1)	528 (37.9)
對中 투자	계	671	582	939	1,365	718
	對中투자/총투자	13.5	11.5	27.4	38.1	43.4
	농림어업광업	2 (0.3)	2 (0.4)	4 (0.4)	13 (0.9)	6 (0.9)
	제조업	520 (77.4)	540 (92.7)	829 (88.3)	1,194 (87.5)	625 (87.0)
서비스업	150 (22.3)	40 (6.9)	106 (11.3)	158 (11.6)	87 (12.1)	
對美 투자	계	1,364	1,433	545	1,013	268
	對美투자/총투자	27.4	28.4	15.9	28.3	16.2
	농림어업광업	1 (0.1)	3 (0.2)	32 (5.8)	19 (1.9)	26 (9.7)
	제조업	526 (38.6)	963 (67.2)	165 (30.2)	360 (35.5)	98 (36.4)
서비스업	837 (61.3)	467 (32.6)	349 (64.0)	634 (62.6)	145 (53.9)	

주: 1) 실제투자(총투자) 기준.

2) () 안은 총 해외투자 및 국별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담당: 강준구】

KIEP 발간자료 목록(2001 ~ 2004. 7)

■ 정책연구

-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 南相烈
-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教
-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 黃祥仁 · 金寅培 · 辛仁錫
- 01-04 韓 · 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教
-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金尙謙 · 朴仁元
-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 曹琮和 · 金于珍
-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 梁俊哲 · 金鴻律
-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 尹德龍 · 朴淳讚
-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李鍾華 · 朴淳讚
-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서의
시사점 / 宋有哲 外
-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 · 환경 · 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 外
-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서의 시사점 / 崔洛均 外
- 01-13 신통상외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서의 시사점 / 尹昌仁 外
-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 旭 · 徐暢培
- 02-01 DDA 총점검-2002 / 崔洛均 外
-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林頌洙
-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
방향: 법무 · 시청각 ·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 · 高俊誠 · 具文謙 · 朴淳讚
-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 崔洛均 · 鄭在皓
-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 姜文盛 · 魯在峯 · 李鍾華
-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 尹美京 · 崔允僊
-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
방안 / 南相烈 · 權 栗
-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崔洛均 · 朴淳讚
-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 姜三模 · 王允鍾
-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文盛 · 羅秀燁
-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 尹德龍 · 鄭在植 · 曹琮和
-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李彰洙
-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金良姬 · 趙炳澤
-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 池晚洙
-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 · 교역구조 분석
/ 權 栗 · 金玗慶
- 02-16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 趙顯竣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02-17 1990년대 이후 韓·美간 무역구조의 변화
/ 梁俊哲·金鴻律
-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 尹德龍·鄭衡坤·南英淑
-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中東 통상확대 전략 / 金興鍾
-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李昌在
-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 洪裕洙
-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鴻律
-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 白權鎬 外
-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 朴大權·楊斗鏞·吳奎澤·金恩京
-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 李鴻培
- 02-26 북한경제백서 / 趙明哲 外
-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
경제학적 함의 / 申寬浩·王允鍾·李鍾和
-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 姜三模·朱尙榮
-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 洪裕洙·李彰洙·姜丁實
-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
연구와 시사점 / 安炯徒 外
-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 地晚洙·李榮
-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 洪裕洙·池晚洙·韓正和
-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 鄭仁教·吳東胤
-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權栗·鄭仁教·朴仁元
-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 李鴻培·金良姬·金恩志·程勳
-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曹琮和·李炯根
-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 姜文盛·金元鎬·朴淳讚
·全鍾奎·權奇洙·金眞梧·羅秀燁
-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 安炯徒·尹德龍
- 03-13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 趙明哲 外
-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 趙明哲 外
-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 趙明哲
- 03-16 DDA 중간점검 - 2003 / 崔洛均 外
-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宋有哲 外
-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 金準東·鄭永虎
·崔秉浩·安德宣
-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崔洛均·鄭在皓
-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李彰洙
-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 尹美京
-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金準東·金鍾一·姜俊求
-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鄭仁教 外
-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
·宋有哲·尹美京·李根
-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 楊斗鏞 外
-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 申寬浩·楊斗鏞·王允鍾·李鍾和
-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 鄭仁教 外

■ 지역연구

-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

- 코를 중심으로 / 金興鍾 · 金良姬 · 朴英鎬
-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 金興鍾 · 李哲元 · 朴映坤 · 朴慶錫
-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 李章揆 · 趙顯竣 · 吳東胤
-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鄭在完 · 權耿德

■ 조사분석

-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 鄭在完
- 01-02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 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 朴英鎬
-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 孫讚鉉 · 尹眞那
- 01-04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 宋有哲 · 朴芝賢
-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金良姬 · 金鍾杰
-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 鄭余泉
-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 權奇洙
-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 權 栗
-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 金眞梧
-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李哲元
-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 尹美京 · 李性美
- 01-12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 趙明哲
-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 洪翼杓
-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 姜文盛 · 羅秀燁
-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 朴英鎬
-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 분석 / 宋有哲
-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 李奎億 · 尹美京
- 02-05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 · 영국 · 스웨덴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 朴映坤 · 尹錫明

■ Policy Analyses

-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1 Currency Union in East Asia
/ Han Gwang Choo and Yunjong Wang
- 02-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 Inkyo Cheong
- 02-03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 Sammo Kang,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4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 Chan-Hyun Sohn
- 03-01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 Sung Yeung
Kwack, Choong Yong Ahn, and
Young-Sun Lee
- 03-02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 Nakgyoon Choi, Soon Chan Park,
and Changsoo Lee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 01-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 孫讚鉉 編
- 01-02 한 · 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 孫讚鉉 · 尹眞那
- 01-03 한 · 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孫讚鉉 編
-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 경제동향 / 姜文盛 · 羅秀燁
-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 李晟鳳 · 沈相烈 · 王重植
- 01-06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 李鍾華
- 03-01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과제
/ 李晟鳳 · 金寬濼 · 金仁夙
- 04-01 FTA의 득과 실-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朴淳讜 外

■ 행사결과보고/Conference Proceedings

-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eds.
- 01-02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 Hyungdo Ahn ed.
- 02-01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 Hyong-Kun Lee ed.
- 02-02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 / 朴月羅 · 崔義炫 編
- 02-03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 趙明哲 編
- 03-01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 Young-Rok Cheong, Doo Yong Yang, and Wang Tongsan eds.
- 03-02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 Choong Yong Ahn, Takatoshi Ito, Masahiro Kawai, and Yung Chul Park eds.
- 03-03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 Heungchong Kim ed.
- 03-04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 Chan-Hyun Sohn ed.
- 03-05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 Chang-Jae Lee ed.
- 03-06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 Yunjong Wang ed.

■ APEC Study Series

- 02-01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 Byung-il Choi
- 02-02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 Yongkyun Chung and Yongwhan Park
- 02-03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 02-04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 Hongyul Han
- 03-01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 Sang-yirl Nam

■ Discussion Papers

- 01-01 Korea'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 Chong Wha Lee
- 02-01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 02-02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 Inkyo Cheong
- 02-03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 Junsok Yang
- 02-04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Yunjong Wang
- 02-05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2-06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 Nakgyoon Choi

- 02-07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 Eui-Hyun Choi
- 02-08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02-10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 Chan-Hyun Sohn
- 02-11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Account Market Openings / Chan-Hyun Sohn, Junsok Yang and Seung Beom Kim
- 03-01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 June-Dong Kim
- 03-02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 Jonghwa Cho
- 03-03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 Haesik Park and Yunjong Wang
- 03-04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 03-05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mproved Financial Architecture for East Asia / Yunjong Wang and Wing Thye Woo
- 04-01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 Heungchong Kim, Woosik Moon, and Deok Ryoung Yoon
-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Wook Chae and Hongyul Han
- 01-03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Kyung Tae Lee and Inkyo Cheong
- 01-04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Mikyung Yun and Sungmi Lee
- 01-05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Se-Jik Kim and Ivailo Izvorski
- 02-01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Soyoun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2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and Yung Chul Park
- 02-03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ae-Shick Chung and Se-Jik Kim
- 02-04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Seong-Bong Lee
- 02-05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 Soon-chan Park
- 02-06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 Sammo Kang, Yunjong Wang, and Deok Ryoung Yoon
- 02-07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 Chang Soo Lee
- 02-08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Working Papers

- 01-01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 02-09 A Dynamic Analysis of a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 Warwick J. McKibbin, Jong-Wha Lee, and Inkyo Cheong
- 02-10 Bailout and Conglomeration / Se-Jik Kim
- 02-11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 Chang-Jin Kim and Jong-Wha Lee
- 02-12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 Heungchong Kim
- 02-13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 Chang-Soo Lee and Soon-Chan Park
- 02-14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 Chan-Hyun Sohn
- 02-15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6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 Chang-Soo Lee and Chang-Kyu Lee
- 02-17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Evidence from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8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 HongBae Lee
- 03-01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02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s Bond Market / Gyutaeg Oh, Daekeun Park, Jaeha Park, and Doo Yong Yang
- 03-03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3-04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 Hyungdo Ahn and Sunghyun H. Kim
- 03-05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The Case of East Asia / Sammo Kang
- 03-06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3-07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Zainal-Abidin Mahani,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08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y / Sang-yirl Nam and Junsok Yang
- 03-09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 Chang-Soo Lee
- 03-10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 03-11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12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 03-13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3-14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vity Structure Application of a Cournot-Ricardian Model / E. Young Song and Chan-Hyun Sohn
- 03-15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grams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 03-16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ndustry

- Characteristics / Soon-Chan Park
- 03-17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 04-01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 S. Brock Blomberg, Gregory D. Hess, and Athanasios Orphanides
- 04-02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4-03 Complementarity of Horizontal and Vertical Multinational Activities / Sungil Bae and Tae Hwan Yoo

■ OECD 연구시리즈

- 01-01 OECD 규제개혁 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 梁俊哲 · 金鴻律
- 01-02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 張勝和
- 01-03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계개편에 대한 평가 / 金裕燦
- 01-04 프로스포츠와 競爭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 金元俊

■ 경제개방바로알기시리즈

- ①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최낙균
- ②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최낙균
- ③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김준동 · 강준구
- ④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정인교
- ⑤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 송유철
- ⑥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성봉 · 김관호 · 원신희
- ⑦ 투자협정 바로알기 / 김관호 · 이성봉

■ 지역리포트

-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金恩志
-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 朴映坤

- 01-03 유럽경제통합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 정책 / 朴映坤
-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 河由貞
-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 吳東胤 · 林泓修
- 02-02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金恩志
-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 朴映坤
-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 河由貞
- 02-05 인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현황과 한 · 인도간 협력 방안 / 崔允澣
-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裴嬉娟
-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배경과 시사점 / 權耿德
- 02-08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 증가 추이와 시사점 / 朴在旭
-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 李哲元
-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 權耿德
-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 朴馥永 · 裴嬉娟
- 04-01 南亞共 淸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朴英鎬

■ 지역연구회시리즈

-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 · 李滿基

- | | |
|--|---|
|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 · 李光勛 |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 李忠彦 |
|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 程 勳 |
| 01-08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朴明浩 |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金鍊鐵 |
|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략 / 鮮于鍵 |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cent Development
/ Chang Woon Nam |
|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 · 극동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韓鍾萬 · 成源鏞 |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 吳明錫 |
| 01-1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 리켄 유럽
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 李奎榮 |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魏艾 · 范錦明 · 趙顯竣 |
| 01-12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 安錫教 · 許興鎬 |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연구자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 02)3460-1179 FAX : 02)3460-1144
 E-mail :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전문가풀 토의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 글)	(한 문)
	(영 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 편 번 호	
담당자 연락처	전 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 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대외경제연구』 2004년 제1호

※ 본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입니다.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Major Issues and Future Prospects
Jai-Won Ryou · Yunjong Wang

China's Political-Economic Approach toward FTAs with East Asian N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Hyun-jun Cho

Rural-urban Migration Decisions in China:
Evidence from Rural Household Panel Data
Kyeongwon Yoo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Trade among the Asia Pacific Countries
Saang Joon Baek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D Spillovers
Jaehwa Lee

Analysis of the Factor Endowments and Agricultural Trade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Myong Keun Eor

한·칠레 FTA협정의 평가와 교훈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
鄭仁教 · 鄭宰和

GATS Mode 4 협상과 대응과제
柳吉相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한·일간 무역과 환경-무역정책의 분석
-국내 산업 배출오염 이전을 중심으로
金基興



『대외경제연구』 원고모집

1. 응모자격

제한없음

2. 논문주제

국제경제 및 한국의 대외경제환경과
관련된 자유자재

3. 원고 분량 및 일정

· 원고 분량

- 국문: 원고지 200자 100~150매 내외
- 영문: A4 15~20매 내외
- 국문초록(800자내외)과 영문초록(A4용지 1매 내외)
첨부

· 제출방법: 논문원고 3부와 파일

- 논문원고는 우편으로, 파일은 E-mail로 제출요망

· 원고마감일: 수시모집

4. 문의 및 제출처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연구』 편집출판팀
- 전화: (02)3460-1080
- 팩스: (02)3460-1144
- E-mail: shbae@kiep.go.kr

5. 기타사항

- 응모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제출된 논문은 정해진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간 최우수논문 1편에 대해 500만원의 연구격려금을 포상합니다.

권두칼럼

왜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가

세계경제 Focus

FTA 규범적 측면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동향
DDA 협상의 본격적인 재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EU의 공동지역정책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지역문제 Close-up

北·日 관계정상화 논의와 北·日 경제협력 확대 전망
경기진정책 발표 이후 중국의 정책운용 방향
일본 “지적재산권 전략”의 최근 동향
제13차 EU·러시아 정상회의의 결과와 향후 과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전망

月刊 KIEP 세계경제

KIEP Global Economic Review

2004년 7월호 제7권 제7호 통권70호

- 인쇄 2004년 7월 15일 ■ 발행 2004년 7월 20일
-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인 安忠榮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 3460-1178 FAX : 3460-1144
- 등록 1998년 8월 20일 공보라 8212호
- 인쇄처 현대애드컴 전화 : 2275-8125

값 5,000원



對外經濟政策研究院